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옥 순

목 차

Ⅰ. 결산 개요 ····· 1

1. 결산 총괄 ····· 3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 3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 5

다. 예비비 결산 ····· 6

2. 재원별 결산 내역 ····· 7

가. 일반회계 ····· 7

1) 세 입 ····· 7

2) 세 출 ····· 8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0

1) 세 입 ····· 10

2) 세 출 ····· 11

다. 양성평등기금 ····· 12

1) 개 요 ····· 12

2) 주요 세부내역 ····· 13

라. 청소년육성기금 ····· 14

1) 개 요 ····· 14

2) 주요 세부내역 ····· 15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16

3. 재무제표 분석 ····· 18

가. 재정상태표 ····· 18

나. 재정운영표 ····· 20

다. 순자산변동표 ····· 22

Ⅱ. 총괄 검토 ····· 23

1. 세입・세출(수입・지출) 분석 ····· 25

가. 세입 및 기금수입 ····· 25

나. 세출 및 기금지출 ····· 32

2. 기금분석 ····· 38

3. 성과관리 검토 ····· 47

4. 성인지 결산 ····· 51

가. 개요 ····· 51

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64

1)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64

2) 부처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필요 ····· 68

3)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필요 ····· 73

다. 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 ····· 77

1)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80

2)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필요 ····· 83

Ⅲ. 사업별 검토 ····· 85

1. 기획조정실 ····· 87

가. 일반회계 ····· 87

1) 기획조정기본경비(7111-252),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지원서비스 개선사업(7133-331) ····· 87

2. 운영지원과 ····· 93

가.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 ····· 93

1) 세입 ····· 93

3. 여성정책국 ····· 102

가. 일반회계 ····· 102

1)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 102

2)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1231-321) ····· 114

3) 여성사전시관(1232-332) ····· 120

4. 권익증진국 ····· 128

가. 일반회계 ····· 128

1)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 128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 135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142

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2137-322) ····· 155

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64

1)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 164

5. 청소년정책관 ····· 169

가. 일반회계 ····· 169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 169
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175
3)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 186
4) 청소년활동 지원(2254-541) ····· 194
5)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2254-542) ····· 204
나. 청소년육성기금 ····· 218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254-432) ····· 218
6. 가족정책관 ····· 226
가. 일반회계 ····· 226
1)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226
2) 아이돌봄 지원(2334-341) ····· 241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 258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7
1) 가족센터 건립(2333-334) ····· 267
다. 양성평등기금 ····· 276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276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289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298

Ⅳ.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13

1. 개요 ····· 315

2. 예비비 지출 현황 ····· 317

Ⅴ.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19

1. 요약 ····· 321

2. 조치결과 ····· 322

[참고자료] ····· 331

1. 여성가족부 2023회계연도 성과관리목표 및 과제 현황 ····· 333
2. 2022 ~ 2023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결산 현황 ····· 33
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 338
4. 2023년도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결산 현황 ····· 340
5. 2023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성과목표 달성 현황 ····· 346
6. 2023년도 성인지 성과목표 10개 이상 부처의 달성률 ····· 347
7. 2023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 348
8.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세부현황 ···· 350
9. 「여성가족부 관서운영경비 집행지침」(2019. 7.) ····· 356
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 358
11. 최근 3년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360

문 의 처	
가족정책관	02)6788 - 5649
기획조정실· 성인지결산· 여성정책국	02)6788 - 5650
권익증진국	02)6788 - 5644
총괄· 청소년정책관	02)6788 - 5645

I 결산 개요

Ⅰ.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액 9,413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 1조 4,880억 8,800만원이며, 이 중 1조 4,395억 6,800만원이 수납되고 485억 2,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3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26,776	21,038	11,753	-	9,285	26,77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2,538	1,026	-	1,513	1,341
양성평등기금	737,209	1,178,781	1,155,444	-	23,336	820,868
청소년육성기금	177,365	285,731	271,345	-	14,386	170,707
계	941,350	1,488,088	1,439,568	-	48,520	1,019,692

주: 기금 예산액은 수정액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267억 7,600만원 보다 57억 3,800만원이 감소한 210억 3,800만원으로, 이 중 117억 5,300만원이 수납되었음.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및 이자발생액이 대부분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70억 8,400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33억 4,1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44억 4,5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1억 7,800만원 등이며, 그 중 아이돌봄지원사업 34억 1,400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 25억 7,5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21억 8,2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1억 9,000만원 등에서 수납되었음.

양성평등기금의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7,372억 900만원 보다 4,415억 7,200만원이 증가한 1조 1,787억 8,100만원으로, 이 중 1조 1,554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음.

청소년육성기금의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1,773억 6,500만원 보다 1,083억 6,600만원이 증가한 2,857억 3,100만원으로, 이 중 2,713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음.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총액은 1조 5,730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6,126억 6,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96억 600만원, 양성평등기금 6,902억 2,1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806억 200만원임.

【 2023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일반회계	599,121	13,452	15,177	±3,208	-	627,750	612,665	3,630	11,456	687,23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9,765	-	-	-	-	89,765	89,606	-	159	84,227
양성평등 기금	737,209	179	-	-	-	737,388	690,221	179	52,136	820,868
청소년 육성기금	177,365	-	-	-	-	177,365	180,602	-	1,052	170,707
계	1,603,460	13,631	15,177	-	-	1,632,268	1,573,094	3,809	64,803	1,763,041

주1: 여유자금 회수·운용 잔액 포함
2: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운용 순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277억 5,000만원으로, 이 중 6,12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6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4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97억 6,500만원으로, 이 중 896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900만원은 불용하였음.

양성평등기금은 지출 예산현액 7,373억 8,800만원 중 6,90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출 예산현액 1,773억 6,500만원 보다 32억 3,700만원이 증가한 1,806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음.

다. 예비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 배정액은 151억 7,700만원으로, 청소년국제교류 지원에 15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예비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배정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15,177	15,140	-	37

2. 재원별 결산 내역

가. 일반회계

1) 세 입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10억 3,800만원 중 117억 5,300만원이 수납되었고, 92억 8,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건물대여료	20	20	20	-	-
기타재산수입	2,245	1,810	1,036	-	774
기타경상이전수입	24,511	19,050	10,695	-	8,355
벌금 및 과료	-	6	-	-	6
과징금	-	152	1	-	150
기타잡수익	-	0.3	0.3	-	-
계	26,776	21,038	11,753	-	9,285

자료: 여성가족부

미수납액 92억 8,500만원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아이돌봄지원(34억 1,400만원) 및 여성생리용품지원사업(17억 3,200만원) 사업 등에서 발생함.

2) 세 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 예산현액은 6,277억 5,000만원으로, 이 중 6,12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14억 5,6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599,121	13,452	15,177	±3,208	-	627,750	612,665	97.6	3,630	11,456

자료: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277억 5,000만원은 당초 예산액 5,991억 2,100만원보다 286억 2,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이는 예비비 151억 7,700만원과 전년도 용역계약 이행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액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비비 151억 7,700만원은 청소년국제교육 지원 사업 중 2023 세계잼버리 지원경비 충당분이며,

전년도 이월액 134억 5,200만원은,

- 위기청소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방안 연구용역 등 53억 7,600만원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국립청소년진로직업수련원, 국립여성사전시관 공사 및 감리비 80억 7,600만원임.

전용액 32억 800만원은,

-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29억 5,800만원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억 7,900만원 등임.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6%인 6,126억 6,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6억 3,000만원은,

-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 플랫폼 계약 잔금 등 25억 500만원,

-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관련 10억 8,200만원 등임.

불용액 114억 5,600만원은,

- 인건비(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3억 1,600만원,

-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약의 낙찰차액 등 111억 4,000만원임.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 입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5억 3,800만원 중 10억 2,600만원이 수납되었고, 15억 1,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타경상이전수입	-	2,526	1,026	-	1,500
기타재산이자수입	-	13	-	-	13
계	-	2,538	1,026	-	1,513

자료: 여성가족부

2) 세 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897억 6,500만원으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154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에 741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9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역자율계정	14,660	-	-	-	14,660	14,660	-	-	9,050
제주계정	750	-	-	-	750	750	-	-	-
지역지원계정	74,355	-	-	-	74,355	74,196	-	159	75,177
계	89,765	-	-	-	89,765	89,606	-	159	84,227

자료: 여성가족부

다. 양성평등기금

1) 개 요

2023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 결산액은 6,902억 2,100만원으로, 수정계획액 7,372억 900만원 보다 469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정부내부수입(복권기금 전입금) 수납액 및 여유자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총 지출액 6,902억 2,100만 중 여유자금 운용 잔액(514억 6,3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6,387억 5,800만원임.

【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결산액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17,306	17,306	27,698	10,392	60.0
	정부내부수입	680,446	680,446	630,008	△50,438	△7.4
	여유자금회수	39,457	39,457	32,515	△6,942	△17.6
계		737,209	737,209	690,221	△46,988	△6.4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680,446	680,446	628,310	△52,136	△7.7
	기금운영비	2	2	2	0	-
	정부내부지출	10,446	10,446	10,446	0	-
	여유자금운용잔액	46,315	46,315	51,463	5,148	11.1
계		737,209	737,209	690,221	△46,988	△6.4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 주요 세부내역

수입액 6,902억 2,1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276억 9,800만원으로 이자수입 17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회수액 259억 3,800만원이고,

-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전입금으로 6,300억 800만원이며,

- 여유자금회수는 325억 1,5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전년도 이월금) 회수 42억 5,8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282억 5,700만원임.

지출액 6,902억 2,1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사업비가 6,283억 1,000만원, 기금운영비는 200만원이고,

- 정부내부지출은 104억 4,600만원으로 복권기금반납액이며,

- 여유자금운용잔액은 한국은행예치금(세계잉여금) 29억 5,4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85억 800만원임.

라. 청소년육성기금

1) 개 요

2023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결산액은 수정 계획액 1,773억 6,500만원 보다 32억 3,700만원이 증가한 1,806억 200만원임. 예산 대비 운용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여유자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이 계획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총 지출액 1,806억 200만원 중 여유자금 운용잔액(93억 1,9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1,712억 8,300만원임.

【 2023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결산액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4,852	4,902	5,784	882	15.2
	정부내부수입	158,317	158,317	157,973	△344	△0.2
	여유자금회수	14,146	14,146	16,845	2,699	16.0
합 계		177,315	177,365	180,602	3,237	1.8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160,857	160,857	159,827	△1,030	△0.6
	기금운영비	42	42	37	△5	△13.5
	정부내부지출	11,436	11,436	11,419	△17	△0.1
	여유자금운용잔액	4,980	5,030	9,319	4,289	46.0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 주요 세부내역

수입액 1,806억 2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57억 8,400만원으로 이자수입 7억 6,80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회수액 49억 6,600만원, 민간출연금 5,000만원이고,

- 정부내부수입은 1,579억 7,300만원으로 복권기금 전입금 1,494억 7,3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5억원이며,

- 여유자금 회수는 168억 4,5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전년도 이월금) 회수 8억 7,8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159억 6,700만원임.

지출액 1,806억 2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사업비가 1,598억 2,700만원, 기금운영비는 3,700만원이고,

- 정부내부지출은 114억 1,900만원으로 복권기금 반납액 110억 4,5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3억 7,400만원이며,

- 여유자금운용잔액은 93억 1,9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세계잉여금) 18억 3,7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74억 8,300만원임.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며[1], 사업으로는, 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② 성폭력 피해자 지원, ③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④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두고 있음.

이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2023년 예산현액은 375억 3,700만원으로, 이 중 367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97.9%), 8억 500만원은 불용하였음.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202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여성가족부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37	36,732	-	805	37,354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377	14,033	-	344	14,181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8,647	18,222	-	425	19,465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4,341	4,338	-	3	3,536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39	-	33	172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	-	-	-

주: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직전 조사시기 : 2022년)
자료: 여성가족부

3. 재무제표 분석

여성가족부의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2023년 기말 시점의 자산상태, 한 해 동안 발생한 재정운영 손익 및 순자산 변동상황을 나타내는 것임.

가. 재정상태표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여성가족부의 자산은 2,904억 9,900만원, 부채는 592억 1,800만원으로 순자산은 2,312억 8,000만원임.

자산은 유동자산 1,130억 4,700만원, 일반유형자산 1,652억 1,700만원, 무형자산 74억 4,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7억 9,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10억 8,000만원(16.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기금의 현금성 자산 및 미수채권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364억 3,300만원 증가, 일반유형자산 26억 9,400만원 증가 및 무형자산 17억 8,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함.

부채는 유동부채 55억 2,600만원, 장기차입부채 171억원, 기타비유동부채 365억 9,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1억 1,900만원(9.5%)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장기차입부채가 85억원, 유동부채가 19억 4,300만원 증가한 것과 기타비유동부채 53억 2,300만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A-B	비 율
자 산(a)	**290,499**	**249,419**	**41,080**	**16.5**
Ⅰ. 유동자산	113,047	76,614	36,433	47.6
Ⅱ. 일반유형자산	165,217	162,523	2,694	1.7
Ⅲ. 무형자산	7,440	5,651	1,789	31.7
Ⅳ. 기타비유동자산	4,794	4,631	163	3.5
부 채(b)	**59,218**	**54,099**	**5,119**	**9.5**
Ⅰ. 유동부채	5,526	3,583	1,943	54.2
Ⅱ. 장기차입부채	17,100	8,600	8,500	98.8
Ⅲ. 기타비유동부채	36,593	41,916	△5,323	△12.7
순 자 산(a-b)	**231,280**	**195,320**	**35,960**	**18.4**
Ⅰ. 기본순자산	452,125	452,125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287,975	△324,187	36,212	11.2
Ⅲ. 순자산 조정	67,130	67,382	△252	△0.4

자료: 여성가족부

나. 재정운영표

여성가족부는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558억원 발생하였는데[2],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4,481억 7,000만원, 관리운영비 313억 9,500만원, 비배분비용 36억 8,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70억 7,300만원[3], 비배분수익 204억 5,400만원, 비교환수익 등 7,599억 2,100만원으로 구성됨.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19억 9,800만원(6.1%) 증가한 1조 4,157억 2,100만원이며, 이는 보조비 및 출연비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747억 1,500만원 증가하였고 대손상각비 등 비배분비용이 35억 4,200만원 증가한 동시에 차감항목인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29억 8,200만원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함.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가족정책 및 돌봄지원 프로그램(9,359억원),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2,573억 7,600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42억 7,400만원과 경비 71억 2,100만원 등이며,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32억 4,800만원과 차입금 이자비용 4억 3,600만원으로 구성됨.

---

2)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순손실)과 달리 국가회계에서는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된 자원(비용)이 중요하므로 원가정보를 앞에 표시하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것으로서 손실을 의미하고, (−)이면 이익을 의미함. 정부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경우와는 그 의미가 다름.

3) 프로그램 총원가(1조 4,481억 7000만원) - 프로그램 순원가(1조 4,010억 9,700만원)

【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비 율
Ⅰ. 프로그램총원가	1,448,170	1,355,029	93,141	6.9
Ⅱ. 프로그램수익	47,073	28,647	18,426	64.3
Ⅲ. 프로그램순원가	1,401,097	1,326,382	74,715	5.6
Ⅳ. 관리운영비	31,395	30,636	759	2.5
Ⅴ. 비배분비용	3,684	142	3,542	2,494,4
Ⅵ. 비배분수익	20,454	23,436	△2,982	△12.7
Ⅶ. 재정운영순원가(Ⅲ+Ⅳ+Ⅴ-Ⅵ)	1,415,721	1,333,723	81,998	6.1
Ⅷ. 비교환수익 등	759,921	718,668	41,253	5.7
Ⅸ. 재정운영결과(Ⅶ-Ⅷ)	655,800	615,056	40,744	6.6

주: 재정운영결과는 원가(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손실, (-)이면 이익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 2023년 프로그램순원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프로그램순원가	비율
1.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20,207	1.4
2.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92,532	6.6
3. 여성·아동인권보호	95,082	6.8
4.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257,376	18.4
5. 가족정책 및 돌봄지원	935,900	66.8
계	1,401,097	100.0

자료: 여성가족부

다. 순자산변동표

여성가족부의 2023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953억 2,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312억 8,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59억 6,000만원(18.4%)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407억 4,400만원 증가한 반면,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600억 5,600만원 증가하고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23억 9,8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한편, 2023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 조달 7,061억 7,0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 이전 141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의 감소 2억 5,200만원으로 구성됨.

【 순자산변동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비 율
Ⅰ. 기초순자산	195,320	181,070	14,250	7.9
Ⅱ. 재정운영결과	655,800	615,056	40,744	6.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92,012	631,956	60,056	9.5
Ⅳ. 조정항목	△252	△2,650	2,398	90.5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231,280	195,320	35,960	18.4

자료: 여성가족부

Ⅱ 총괄 검토

Ⅱ. 총괄 검토

1. 세입 · 세출(수입 · 지출)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정산과 반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의 수요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불용 · 이월 및 전용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가. 세입 및 기금수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최근 5년간 세입결산 미수납액[4]은 2019년 54억 1,100만원으로 이후 2022년 39억 5,3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다시 107억 8,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최근 5년간 수입결산 미수납액은 2019년 53억 300만원 이후 2020년 81억 9,600만원, 2021년 120억 9,900만원, 2022년 167억 6,100만원, 2023년 377억 2,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5]

4) 미수납액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 정산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임.
5)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주요 소관 기금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기초지방단체별 반납예산 편성시기가 상이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최종 반납하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함.

【 최근 5년간 세입(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	미수납률 (B/A)
2023	소 계	26,776	23,576	12,779	-	10,798	45.8
	일 반 회 계	26,776	21,038	11,753	-	9,285	44.1
	특 별 회 계	-	2,538	1,026	-	1,513	59.6
	소 계	914,574	908,545	870,823	-	37,722	4.2
	양성평등기금	737,209	713,557	690,221	-	23,336	3.3
	청소년육성기금	177,365	194,988	180,602	-	14,386	7.4
2022	소 계	13,492	38,478	34,525	-	3,953	10.3
	일 반 회 계	13,492	35,810	32,883	-	2,927	8.2
	특 별 회 계	-	2,668	1,642	-	1,026	38.5
	소 계	843,260	820,698	803,937	-	16,761	2.0
	양성평등기금	668,169	647,900	637,085	-	10,815	1.7
	청소년육성기금	175,091	172,798	166,852	-	5,946	3.4
2021	소 계	10,717	57,281	46,268	-	11,013	19.2
	일 반 회 계	10,717	54,237	44,599	-	9,638	17.8
	특 별 회 계	-	3,044	1,669	-	1,375	45.2
	소 계	688,030	669,351	657,252	-	12,099	1.8
	양성평등기금	519,053	509,129	501,305	-	7,824	1.5
	청소년육성기금	168,977	160,222	155,947	-	4,275	2.7
2020	소 계	10,327	38,824	34,838	-	3,985	10.3
	일 반 회 계	10,327	35,424	31,873	-	3,551	10.0
	특 별 회 계	-	3,400	2,965	-	434	12.8
	소 계	614,324	601,489	593,293	-	8,196	1.4
	양성평등기금	453,790	444,891	439,782	-	5,109	1.1
	청소년육성기금	160,534	156,598	153,511	-	3,087	2.0
2019	소 계	8,094	9,836	4,425	-	5,411	55.0
	일 반 회 계	8,094	8,977	3,878	-	5,099	56.8
	특 별 회 계	-	859	547	-	312	36.3
	소 계	596,035	582,710	577,407	-	5,303	0.9
	양성평등기금	438,428	437,838	434,746	-	3,092	0.7
	청소년육성기금	157,607	144,872	142,661	-	2,211	1.5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5월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65억 1,200만원)에서는 서울특별시(15억 200만원), 경기도(14억 800만원), 전라남도(11억 9,600만원)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수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주요 미수납 발생 사유는 아이돌봄지원 집행잔액,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집행잔액 등임.

양성평등기금(103억 4,100만원)에서는 전라북도(25억 1,600만원), 전라남도(23억 8,600만원), 충청남도(19억 9,100만원), 서울특별시(12억 2,600만원)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수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주요 미수납 발생 사유는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집행잔액 등임.

청소년육성기금(38억 5,100만원)에서는 경기도(10억 6,600만원), 충청남도(8억 8,400만원), 전라남도(8억 3,000만원)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미수납액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등의 집행잔액이 주요 미수납 발생 사유로 파악됨.

향후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정산과 반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주요 사업 수행에 있어 각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액 현황 】

□ 일반회계

(20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6,512	
서울특별시	1,502	아이돌봄지원 10억 4.100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4억 6,000만원
		청소년활동지원 100만원
부산광역시	2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200만원
광주광역시	19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9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1,000만원
경기도	1,408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4억 4,600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9억 4,8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1,4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264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2억 5,900만원
		청소년활동지원 500만원
충청북도	169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1억 6,700만원 등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200만원
충청남도	738	가족서비스기반구축 9,200만원
		가족역량강화지원 7,700만원
		아이돌봄지원 3억 1,300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2억 5,000만원
		청소년활동지원 600만원

구 분	일반회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전라북도	80	가족역량강화지원 1,900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4,300만원
		청소년활동지원 1,800만원
전라남도	1,196	가족서비스기반구축 1억
		가족역량강화지원 8,700만원
		아이돌봄지원 3억 6,100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3억 8,500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2억 5,400만원 등
경상북도	443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7,000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9,100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2억 8,200만원
경상남도	668	가족역량강화지원 6,800만원
		아이돌봄지원 2억 9,300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2억 9,500만원
		청소년활동지원 1,200만원
대전광역시	23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2,30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2024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계	10,341		3,851	
서울특별시	1,226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911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198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96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21백만원	290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53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25백만원 청소년참여지원 12백만원
부산광역시	268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91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77백만원	12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2백만원 등
울산광역시	-		21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13백만원 등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재활치료 등 8백만원
인천광역시	-		6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6백만원
광주광역시	94	가정폭력피해자지원 94백만원 등	44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43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백만원
세종특별자치시	10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0백만원	-	
경기도	293	가정폭력피해자지원 203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50백만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39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1백만원	1,066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385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337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241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94백만원 청소년참여지원 9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459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245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98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97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11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8백만원	248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35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77백만원 청소년참여지원 21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13백만원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재활치료 2백만원
충청북도	96	가정폭력피해자지원 48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43백만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5백만원	195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38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50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7백만원

구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충청남도	1,991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849백만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703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325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95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16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3백만원	885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518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329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29백만원 청소년참여지원 8백만원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재활치료 1백만원
전라북도	2,516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1,358백만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548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287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232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60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9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2백만원	31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5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3백만원 청소년참여지원 3백만원
전라남도	2,386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1,173백만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811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123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106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64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58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8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13백만원	830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450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76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52백만원 청소년참여지원 22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9백만원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및피해자재활치료 11백만원
경상북도	153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84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35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34백만원	4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4백만원
경상남도	849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595백만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 215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26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13백만원	218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27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50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1백만원 청소년참여지원 20백만원
대구광역시	-		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나. 세출 및 기금지출

세출과 기금지출 결산 부분에서 불용액 규모는 2019년 205억 200만원 이후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2022년 212억 9,1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3년 불용액은 648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용액 규모도 2022년 31억 500만원, 2023년 32억 8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2년 연속 크게 증가하였음.

이월액 규모는 2019년 103억 1,600만원에서 2022년 136억 3,100만원으로 증가 추세였다가, 2023년에는 38억 9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7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결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	**합계**	**1,603,460**	**13,631**	**15,177**	**-**	**1,632,268**	**1,573,094**	**3,809**	**64,803**
	소계	688,886	13,452	15,177	-	717,515	702,271	3,630	11,615
	일반회계	599,121	13,452	15,177	±3,208	627,750	612,665	3,630	11,456
	특별회계	89,765	-	-	-	89,765	89,606	-	159
	소계	914,574	179	-	-	914,753	870,823	179	53,188
	양성평등기금	737,209	179	-	-	737,388	690,221	179	52,136
	청소년육성기금	177,365	-	-	-	177,365	180,602	-	1,052
2022	**합계**	**1,526,671**	**12,471**	**-**	**±3,105**	**1,539,142**	**1,469,568**	**13,631**	**21,291**
	소계	683,411	11,924	-	±3,105	695,335	665,631	13,452	16,252
	일반회계	634,108	6,233	-	±3,105	640,341	612,637	13,452	14,252
	특별회계	49,303	5,691	-	-	54,994	52,994	-	2,000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결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소계	843,260	547	-	-	843,807	803,937	179	5,039
	양성평등기금	668,169	461	-	-	668,630	637,085	179	2,515
	청소년육성기금	175,091	86	-	-	175,177	166,852	-	2,524
2021	**합계**	**1,288,077**	**9,789**	**4,905**	**±26**	**1,302,771**	**1,252,733**	**12,471**	**13,497**
	소계	600,047	9,379	4,905	±26	614,331	595,481	11,924	6,925
	일반회계	554,869	5,868	4,905	±26	565,642	553,083	6,233	6,325
	특별회계	45,178	3,511	-	-	48,689	42,398	5,691	600
	소계	688,030	411	-	-	688,440	657,252	547	6,572
	양성평등기금	519,053	334	-	-	519,387	501,305	461	3,222
	청소년육성기금	168,977	76	-	-	169,053	155,947	86	3,350
2020	**합계**	**1,165,995**	**10,316**	**11,407**	**±912**	**1,187,718**	**1,151,249**	**9,789**	**13,306**
	소계	551,671	10,235	11,407	±912	573,313	557,956	9,379	5,978
	일반회계	515,126	5,235	11,407	±912	531,768	520,922	5,868	4,978
	특별회계	36,545	5,000	-	-	41,545	37,034	3,511	1,000
	소계	614,324	81	-	-	614,405	593,293	411	7,328
	양성평등기금	453,790	-	-	-	453,790	439,782	334	4,660
	청소년육성기금	160,534	81	-	-	160,615	153,511	76	2,667
2019	**합계**	**1,161,937**	**2,088**	**47,233**	**±34**	**1,211,258**	**1,171,165**	**10,316**	**20,502**
	소계	565,902	1,872	47,233	±34	615,007	593,758	10,235	11,014
	일반회계	462,722	1,872	47,233	±34	511,827	503,098	5,235	3,494
	특별회계	103,180	-	-	-	103,180	90,660	5,000	7,520
	소계	596,035	216	-	-	596,251	577,407	81	9,488
	양성평등기금	438,428	216	-	-	438,644	434,746	-	6,617
	청소년육성기금	157,607	0	-	-	157,607	142,661	81	2,871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여성사전시관 사업

지연으로 인한 46억 4,300만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에서 양육비 신청 수요 부족으로 인한 18억 3,500만원 등 총 114억 5,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양성평등기금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서 양육비 신청 수요 부족으로 인한 506억 7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 사업에서 7억 4,100만원 등 총 521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에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등 9개 세부사업에서 집행잔액 10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3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 불용 사유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불용액	사유
일반회계	인건비	395	집행잔액
	여성사전시관	4,643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가족역량강화 지원	1,835	양육비 신청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274	지역권익보호기관 미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기타 44개 세부사업	4,309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계	11,456	
특별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59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0,607	양육비 신청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등	741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불용액 등 집행잔액
	기타 10개 세부사업	788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계	52,136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등 9개 세부사업	1,052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
	계	1,052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2023 세계잼버리 야영장 침수대책 긴급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등 3개 세부사업에서 20억 4,200만원 전용, 잼버리 참가자 폭염 대비 물품 긴급지원을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서 9억 1,600만원 전용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서 32억 8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8개 세부사업으로 전용 증액하였음.

【 2023년 일반회계 주요 전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전용 감		전용 증		사유
사업명 (사업코드)	전용액	사업명 (사업코드)	전용액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15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15	현장 종사자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설 및 교육자료 제작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2231-312)	-641	청소년 국제교류지원(2254-542)	2,042	2023 세계잼버리 야영장 침수대책 긴급지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1,100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301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7111-212)	-1.5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7111-212)	1.5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에 따라 일용임금에서 고용부담금으로 전용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2231-312)	-116	청소년 국제교류지원(2254-542)	916	2023 세계잼버리 참가자 폭염 대비 물품 긴급지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30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2237-371)	-4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2237-372)	-100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비총액)(7111-258)	-15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비총액)(7111-258)	15	국내여비 소요 금액 추가 발생으로 일반수용비를 국내여비로 전용
청소년활동지원 (2254-541)	-3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236-361)	182	임대형민자사업 (BTL) 정부지급금 예산부족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236-361)	-179			
인건비(7101-100)	-23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7111-211)	23	2023년도 공무직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등 고용부담금 부족
기관운영기본경비 (7111-251)	-7	기관운영기본경비 (7111-251)	7	국내여비 소요금액 추가 발생으로 일반수용비를 국내여비로 전용
권익증진기본경비 (7111-256)	-6	권익증진기본경비 (7111-256)	6	국내여비 소요금액 추가발생으로 일반수용비를 국내여비로 전용

자료: 여성가족부

주요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정보화추진 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25억 500만원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지연으로 인한 10억 8,200만원 등 총 36억 3,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에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연구용역 기간연장으로 인하여 1억 7,9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 2023년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 주요 이월 사유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일반회계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	2,505	사업기간 미도래 인한 계약 잔금 및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1,082	건설사업 일정 지연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43	위탁사업 계약기간 연장
	계	3,630	
양성평등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79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과도한 불용·이월 및 전용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기금분석

○ 청소년육성기금 고유재원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인 기금사업 수행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53조[6]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계획액(수정) 1,773억 6,500만원 중 1,806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6) **「청소년 기본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④ (생 략)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③ (생 략)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023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2022년 결산	2023년				2024년 계획
	계획액		결산액(B)	집행률 (B/A*100)	
	당초	수정(A)			
166,852	177,315	177,365	180,602	101.8	170,707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륜·경정 수익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및 운영수입 등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7]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규정에 따른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액은 1,670억 8,200만원이고, 사용액은 1,745억 6,900만원으로 순 조성액은 -74억 8,700만원인데, 이는 청소년육성기금 재원부족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5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하였기 때문임.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조 성 액 (A)							사 용 액 (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 부 출연금	민 간 출연금	경륜사업 수 익	복권기금 전입금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등	계	사업 비	기타 경비	복권기금 반납금	공자기금 이자상환	계		
1989	-	5,000	-	-	-	206	5,206	132	-	-	-	132	5,074	5,074
1990	-	5,000	-	-	-	1,363	6,363	847	3	-	-	850	5,513	10,587
1991	-	5,010	-	-	-	2,299	7,309	1,031	9	-	-	1,040	6,269	16,856
1992	-	8,150	-	-	-	3,415	11,565	1,507	12	-	-	1,519	10,046	26,902
1993	10,000	5,000	-	-	-	3,965	18,965	1,613	6	-	-	1,619	17,346	44,248
1994	-	11,000	-	-	-	5,285	16,285	9,034	13	-	-	9,047	7,238	51,486
1995	10,000	10,000	-	-	-	7,749	27,749	4,484	15	-	-	4,499	23,250	74,736
1996	10,000	10,000	-	-	-	8,739	28,739	5,415	8	-	-	5,423	23,316	98,052
1997	5,000	10,000	111	-	-	11,598	26,709	8,209	6	-	-	8,215	18,494	116,546
1998	-	4,400	5,888	-	-	15,453	25,741	6,245	6	-	-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	13,271	22,522	12,547	7	-	-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	11,201	23,037	9,905	7	-	-	9,912	13,125	159,129
2001	-	-	32,320	-	-	13,160	45,480	7,284	84	-	-	7,368	38,112	197,241
2002	-	-	46,920	-	-	10,094	57,014	9,443	21	-	-	9,464	47,550	244,791
2003	-	-	70,805	-	-	14,725	85,530	14,363	31	-	-	14,394	71,136	315,927
2004	-	-	40,786	-	-	14,686	55,472	40,670	72	-	-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	19,710	44,333	48,721	57	-	-	48,778	-4,445	326,212
2006	-	-	14,330	-	-	16,878	31,208	68,857	48	-	-	68,905	-37,697	288,515

구분	조성액 (A)							사용액 (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륜사업 수익	복권기금 전입금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등	계	사업비	기타 경비	복권기금 반납금	공자기금 이자상환	계		
2007	-	-	2,846	735	-	17,634	21,215	74,750	62	-	-	74,812	-53,597	234,918
2008	-	-	17,489	255	-	8,141	25,885	75,138	45	-	-	75,183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	11,085	27,617	61,060	262	22	-	61,344	-33,727	151,893
2010	-	-	19,312	2,964	-	5,947	28,223	69,473	113	213	-	69,799	-41,576	110,317
2011	-	-	20,266	4,318	-	2,841	27,425	70,247	3,286	306	-	73,839	-46,414	63,903
2012	-	-	22,235	34,417	-	1,955	58,607	58,650	3,207	30	-	61,887	-3,280	60,623
2013	-	-	16,933	43,403	-	2,074	62,410	68,238	49	622	-	68,909	-6,499	54,124
2014	-	-	12,744	46,694	-	4,707	64,145	70,096	1,088	1,408	-	72,592	-8,447	45,677
2015	-	-	9,566	76,412	-	1,744	87,722	85,568	38	1,118	-	86,724	998	46,675
2016	-	-	16,441	85,230	-	3,236	104,907	95,499	41	1,179	-	96,719	8,188	54,863
2017	-	-	17,285	91,235	-	3,897	112,417	101,548	320	3,527	-	105,395	7,022	61,885
2018	-	-	13,352	97,450	-	1,663	112,465	108,389	390	2,442	-	111,221	1,244	63,129
2019	-	-	8,511	107,598	-	3,631	119,740	119,390	40	1,211	-	120,641	-901	62,228
2020	-	-	6,900	119,418	-	5,511	131,829	131,751	36	2,308	-	134,095	-2,266	59,962
2021	-	-	-	127,857	-	8,919	136,776	163,718	42	3,699	-	167,459	-30,683	29,279
2022	-	-	-	135,750	8,600	8,227	152,577	147,385	49	3,035	78	150,547	2,030	31,309
2023		**50**	**-**	**149,473**	**8,500**	**9,059**	**167,082**	**160,372**	**2,778**	**11,045**	**374**	**174,569**	**-7,487**	**23,822**
계	35,000	76,610	453,422	1,124,089	17,100	274,068	1,980,289	1,911,579	12,251	32,165	452	1,956,447	23,822	

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손실로 2021년 경륜경정기금의 수익금 전입액이 전액 삭감되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도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6억원을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2년 연속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조달받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휴장으로 경륜·경정 수익금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임.

2023년 청소년육성기금의 전체 총 8개 사업 중 3개의 사업은

「경륜·경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8]에 따라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을 일정비율(경주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100분의 10, 경주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경우 100분의 19.5)로 배분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경륜·경정 사업의 수익률 악화로 2023년 전입금이 전액 삭감되었음.[9]

【 2023년 청소년육성기금 중 경륜·경정 수익금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현액 (C)	실집행액 (D)	실집행률 (D/C)	집행차액 (C-D)	계획현액 (C)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93	2,691	99.9	2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6,154	6,064	98.5	90	6,738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	2,193	2,186	99.7	7	-
계	11,040	10,941	99.1	99	6,738

주:'청소년정책 참여지원'은 2023년말 종료되었으며,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는 2024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음.

자료: 여성가족부

8)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9)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휴장으로 전입금 전액이 삭감되었음.

이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은 현재 복권기금 전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23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총액 1,806억 200만원 중 1,494억 7,300만원을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받아 복권기금 전입금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8%에 달하며,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8개 중 5개의 사업이 복권기금 재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 2023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계획액(A)	결산액 (B)	증 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4,902	5,784	882	18.0
	- 기타재산이자수입	352	768	416	118.2
	- 민간출연금	50	50	-	-
	- 기타경상이전수입	4,500	4,966	466	10.4
	정부내부수입	158,317	157,973	△344	△0.2
	- 복권기금전입금	**149,817**	**149,473**	**△1,888**	**△ 0.1**
	- 공자기금예수금	8,500	8,500	-	-
	여유자금회수	14,146	16,845	2,699	19.1
	- 한국은행통화유치금회수	-	877	877	100.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4,146	15,968	1,822	12.9
계		177,365	180,602	3,237	1.8

자료: 여성가족부

【 2023년 청소년육성기금 중 복권기금 전입금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현액 (C)	실집행액 (D)	실집행률 (D/C)	집행차액 (C-D)	계획현액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6,056	6,034	99.6	22	4,879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1,729	31,446	99.1	283	31,485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72,596	72,490	99.9	106	72,07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29,506	29,291	99.3	215	30,855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9,930	9,624	96.9	306	10,304
계	149,817	148,885	99.4	932	149,596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복권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복권기금 전입금 현황을 보면, 2019년 1,076억원에서 2023년 1,495억원까지 매년 전입금이 증가해 왔음.

【 최근 5년간 청소년육성기금 복권기금 전입금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복권기금 전입금	1,076	1,194	1,279	1,358	1,495

자료: 여성가족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10]는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따라 특정 기금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육성기금은 의무배분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의무배분대상 수익금 및 복권기금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일부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복권기금을 전입받고 있음.

복권수익금 실적이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복권기금 전입금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11]에 따라 전액 반납되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2.「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고유재원 수입액이 현행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져 여유자금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공자기금 예수금을 편성하게 될 경우 장래에는 기금 상환[12] 등의 부담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예탁 등 기간) ① 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ㆍ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금이 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 상환만기를 예탁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기금과 예탁기관이 개별약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성과관리 검토

○ 여성가족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는 한편, 단순히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가 아닌 취업 이후 고용유지 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현행 성과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일반가족 외에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책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하여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5조5부터 제85조의7까지[13]에 따라 각 중앙관

13)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09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성과관리란 사업목표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사업집행 이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해 점검·평가하면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14)]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의 성과목표관리체계는 전략목표 4개, 프로그램목표 5개 및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 5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15)]

2023년도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12개 중 초과달성 사업은 없었으며, 달성 사업은 9개, 미달성 사업은 3개로 미달성률이 25.0%임.

【 2023년도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5	12	-	9	3
		100.0%	-	75.0%	25.0%

자료: 여성가족부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목표치를 미달성한 사업은 ① 새일센

14)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5) [참고자료] 1. 여성가족부 2023회계연도 성과관리목표 및 과제 현황

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 ②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③가족정책이용자 만족도임.

【 2023년도 프로그램목표별 미달성 사업 세부 현황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021년	2022년	2023년
(1)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및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강화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 (건)	새일센터 취·창업 실적 전수조사	목표	177,220	179,000	173,038
			실적	180,610	161,772	165,539
			달성률	101.9%	90.4%	95.7%
(3)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점)	○ 측정산식 : (시간제 만족도× 가중치)+(영아 종일제 만족도× 가중치) * 만족도 응답자 수 비율로 가중치 적용	목표	90.4	90.9	91.8
			실적	91.4	90.9	91.4
			달성률	101.1%	100.0%	99.6%
	가족정책이용자 만족도 (점)	○ 측정산식 : 가족정책 분야별 이용자 만족도 = 일반 가족(통합) 대상 가족서비스 이용자 만족도(30%) + 한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30%) + 한부모 시설 이용자 만족도(20%)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용자 만족도 (20%)	목표	84.9	86.9	87.9
			실적	86.8	87.8	87.7
			달성률	102.2%	101.0%	99.8%

자료: 여성가족부

먼저, 2023년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목표치는 최근 3개년(2020~2022년) 실적 평균인 173,038건으로, 2022년 실적(161,772건) 대비 7.0% 증가한 취·창업 건수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2023년 실적은 165,539건(95.7%)으로 목표치에 미달하였음.[16)]

다음으로,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목표치는 최근 3개년(2020~2022년) 실적 평균인 90.7점보다 1.1점 높은 91.8점을 설정하였으나, 2023년 실적은 91.4점(99.6%)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17]

마지막으로, 2023년 가족정책 이용자 만족도 목표치는 87.9점으로 한부모 양육비, 한부모시설 관련 만족도를 최근 실적치보다 상향된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나, 2023년 실적은 87.7점(99.8%)으로 목표치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하였음.

향후 여성가족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는 한편, 단순히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가 아닌 취업 이후 고용유지 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일반가족 외에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책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16)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경제전환에 따라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점차 확대하여 상용직 비율(78.8%)이 전년 실적(73.2%) 대비 5.6%p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최근「여성경제활동법」시행(2022.6.)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함께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강화 등 새일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

17)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최근 3년간 90점 이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4. 성인지 결산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성과목표 달성률(74.1%)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79.4%) 보다 낮으며, 2년 이상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도 12개(3년 이상 6개, 2년 이상 6개)에 달하고 있으므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목표 평균 달성률 이하의 부처는 성과목표 달성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성과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환류를 강화하여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목표 달성 사업 중 성과목표를 전년도 성과목표 및 실적 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개요

성인지 결산서(기금 포함, 이하 같음)는 「국가재정법」제57조 및 제73조의2[18]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기금)의 수혜를 받고 예산(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며,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들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18)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이 있는 부처가 스스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취합한 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됨.[19]

【 2023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정부 내 결산 절차 】

절 차	소관 기관	일정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및 양식 논의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10.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송부	기획재정부	2023.11.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배포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12.
성인지결산서 작성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12.
해당 부처 성인지결산서 작성·취합	해당 부처 · 기획재정부	2024. 1.~ 2.
성인지결산 검사	감사원	2024. 4.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2024. 5.31.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2023.12.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38개 중앙관서의 총 302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중 예산사업은 214개, 기금사업은 88개임.

분석대상 사업 수 302개는 2023년 총 세부사업 수 8,516개[20]의

19) 2010회계연도(기금은 2011회계연도)부터 작성하여, 금번 2023회계연도까지 14번째(기금은 13번째) 제출되었음.
20) **「2023 주요 재정통계」**, 한국재정정보원, p.108

3.5%에 해당하며, 분석대상 사업의 총 지출규모는 31조 5,375억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6.3%)으로, 2023년 정부 총지출 610조 7,000억원[21]의 5.2%임.

【 2023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현황 】

(단위: 억원, 개, %)

구분		2021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A)	2023년			2022년 대비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B) ×100	(C-A)	((C-A) /A)
합계	지출규모	362,763	259,626	327,340	315,375	96.3	55,749	21.5
	기관 수	38	39	-	38	-	△1	△2.6
	사업 수	304	341	-	302	-	△39	△11.4
예산	지출규모	178,942	101,051	90,979	88,876	97.7	△12,175	△12.0
	기관 수	38	39	-	38	-	△1	△2.6
	사업 수	225	244	-	214	-	△30	△12.3
기금	지출규모	183,821	158,575	236,361	226,500	95.8	67,925	42.8
	기관 수	14	13	-	14	-	1	7.7
	기금 수	26	28	-	28	-	-	-
	사업 수	79	97	-	88	-	△9	△9.3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이래로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95개로 시작하여 2018년 345개까지 늘어났으나, 2019년에는 261개[22] 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서를 작

21)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p.14.
22) 2019년에는 사업종료, 사업통폐합, 부적절한 대상정리를 통해 104개의 사업이 제외되고 20개의 사

성하였음.

2019년 성인지 분석대상 사업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대상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이를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구분[23]하여 관리하기 시작한데 기인하며, 이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는 2021년 304개, 2022년 341개로 다시 증가하다가 2023년 302개로 감소하였음.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 및 총지출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이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의 대폭적인 축소에 따라 2019년에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이 2018년 대비 23%인 8조 1,000억원이 감소하였음.

이후 2020년 및 2021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은 34조 6,049억원('20년), 36조 2,763억원('21년)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2022년 25조 9,626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31조 5,375억원으로 2022년 대비 21.5%인 5조 5,749억원이 증가하였음.

업이 추가되어 2018년 대상사업 수 대비 총 84개가 줄어들었음.

23)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유형별 구분 기준 >

구분	직접목적 사업	간접목적 사업
정의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내용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추진 사업 등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2023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중앙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사업	

자료: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2022. 5.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추이(그래프) 】

(단위: 개, 억원)

주; 2010년도는 제외(기금사업 없음) / 자료: 여성가족부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추이(표) 】

(단위: 개, 억원)

연도	정부 총 지출 (조원)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합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2011	304.4	32	197	83,896 (2.8%)	10	44	16,400 (0.5%)	34	241	100,296 (3.3%)
2012	323.3	33	208	93,185 (2.9%)	9	46	17,241 (0.5%)	34	254	110,426 (3.4%)
2013	337.7	34	227	110,399 (3.3%)	11	51	19,674 (0.6%)	35	278	130,073 (3.9%)
2014	347.9	41	257	147,873 (4.3%)	14	82	78,224 (2.2%)	42	339	226,097 (6.5%)
2015	372.0	41	253	173,871 (4.7%)	15	90	90,477 (2.4%)	42	343	264,348 (7.1%)
2016	384.9	42	244	180,694 (4.7%)	15	87	103,791 (2.7%)	43	331	284,485 (7.4%)
2017	406.6	42	263	201,835 (5%)	16	87	110,862 (2.7%)	42	350	312,697 (7.7%)
2018	434.1	41	260	231,111 (5.3%)	16	85	120,704 (2.8%)	41	345	351,815 (8.1%)

연도	정부 총 지출 (조원)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합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2019	485.1	32	192	140,091 (2.9%)	14	69	131,022 (2.7%)	33	261	271,113 (5.6%)
2020	549.9	36	207	180,033 (3.3%)	14	74	166,016 (3.0%)	36	281	346,049 (6.3%)
2021	601.0	38	225	178,942 (3.0%)	14	79	183,821 (3.0%)	38	304	362,763 (6.0%)
2022	682.4	39	244	101,051 (1.5%)	13	97	158,575 (2.3%)	39	341	259,626 (3.8%)
2023	610.7	38	214	88,876 (1.5 %)	14	88	226,500 (3.7 %)	38	302	315,375 (5.2%)

자료: 각 년도「성인지 결산서」및「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3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은 총 38개 부처의 302개 세부사업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성인지 분석 대상 사업 수는 고용노동부 44개(전체 대상사업의 14.6%), 여성가족부 35개(전체 대상사업의 11.6%), 보건복지부 34개(전체 대상사업의 11.3%) 순으로 많게 나타남.

예산의 집행규모면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9조 1,825억원(전체 대상사업의 29.1%), 중소벤처기업부 8조 2,376억원(전체 대상사업의 26.1%), 고용노동부 6조 3,600억원(전체 대상사업의 20.2%), 보건복지부 4조 5,362억원(전체 대상사업의 14.4%) 순으로 나타남.

【 2023년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부처	대상사업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 계	302	327,340	315,375	96.3
고용노동부	44	68,599	63,600	92.7
여성가족부	35	12,658	12,076	95.4
보건복지부	34	45,558	45,362	99.6
문화체육관광부	23	4,758	4,714	99.1
중소벤처기업부	23	82,946	82,376	9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2,449	2,449	100.0
농림축산식품부	13	4,360	4,345	99.7
해양수산부	11	167	167	100.0
법무부	9	1,236	1,204	97.4
국토교통부	8	97,053	91,825	94.6
경찰청	8	557	519	93.2
교육부	7	2,127	2,125	99.9
외교부	6	482	471	97.7
농촌진흥청	6	141	139	98.6
기획재정부	5	138	116	84.1
통일부	5	508	493	97.0
행정안전부	5	134	132	98.5
산업통상자원부	5	280	280	100.0
문화재청	5	262	262	100.0
국방부	4	826	801	97.0
특허청	4	162	162	100.0
국민권익위원회	3	0.63	0.27	4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276	185	67.0
국가보훈부	3	514	432	84.0

부처	대상사업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인사혁신처	2	378	378	100.0
환경부	2	22	20	90.9
국가인권위원회	2	2	2	100.0
방위사업청	2	534	532	99.6
소방청	2	11	11	100.0
방송통신위원회	1	15	15	100.0
국회	1	1	1	100.0
대법원	1	76	76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	1	50.0
국세청	1	4	4	100.0
조달청	1	3	3	100.0
산림청	1	53	52	98.1
질병관리청	1	17	16	94.1
해양경찰청	1	29	28	96.6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재구성

2023년도 성인지 결산에서 나타난 주요 부처별 특징을 살펴보면,[24)]

고용노동부의 사업 수 및 지출액은 각 44개, 6조 3,6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각 17개(△56.4%), 2조 6,917억원(△42.3%) 감소함. 이는 고용장려금(융자) 사업 종료,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실업크레딧지원(일반) 사업 등이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함.

24) [참고자료] 2. 2022 ~ 2023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결산 현황,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사업 수 및 지출액은 각 35개, 1조 2,076억원으로 2022년 대비 사업수는 1개(△2.8%)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946억원(8.5%) 증가함. 이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지출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업 수는 34개로 2022년 대비 3개(△8.1%)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4조 5,362억원으로 2022년 대비 200억원(△0.4%)이 감소함. 이는 2022년도 대상사업이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종료되고, 노인건강관리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어 2023년도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함.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출액이 가장 큰 부처로서, 사업 수 및 지출액은 각 8개, 9조 1,82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5개(166.7%), 9조 1,537억원(31,783.7%)으로 크게 증가함. 이는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전세임대(융자),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임.

한편,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을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3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중 직접목적 사업은 96개, 지출규모는 13조 7,36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91.8% 증가하였고, 간접목적 사업은 206개, 지출규모는 17조 8,014억원으로 2022년 대비 16.2% 감소하였음.

【 2022·2023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유형별 지출현황 】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사업 수	예산현액 (C)	지출액 (D)	집행률 (D/C)	사업 수	예산현액 (C)	지출액 (D)	집행률 (D/C)
합 계	341	271,565	259,626	95.6	302	327,340	315,375	96.3
	(100)		(100)		(100)		(100)	
① 직접목적 사업	99	47,490	47,079	99.1	96	143,356	137,361	95.8
(비중)	(29.0)		(18.1)		(31.8)		(43.6)	
② 간접목적 사업	242	224,075	212,547	94.9	206	183,984	178,014	96.8
(비중)	(71.0)		(81.9)		(68.2)		(56.4)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2024년 6월 발표한 국가성평등 보고서[25]를 살펴보면, 2022년도 국가성평등지수는 평균 76.0점으로, 이 중 '의사결정분야'가 가장 낮은 37.1점, 다음으로 '가족분야'가 67.5점, '안전분야'가 73.6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25) 2023년도 성인지 결산서의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기존(개편 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임.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추이 】

(단위: 점)

부 문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73.9	74.9	75.4	76.0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68.7	69.1	69.7	69.8
	경제활동 분야	75.7	76.1	76.4	77.6
	의사결정 분야	36.0	36.4	38.3	37.1
	교육·직업훈련 분야	94.3	94.7	94.5	94.8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80.6	82.5	83.0	83.4
	복지 분야	75.5	78.5	78.7	79.0
	보건 분야	97.1	96.8	97.6	97.7
	안전 분야	69.2	72.1	72.8	73.6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74.3	75.0	74.9	76.7
	가족 분야	62.3	63.6	65.3	67.5
	문화·정보 분야	86.2	86.4	84.5	85.9

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기존(개편 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성인지 결산 현황을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성불평등 수준이 높은 분야인 ‘의사결정’ 및 ‘가족’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지출액이 각각 78.3%, 12.7%로 증가하였으나,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전체 성인지 결산 총액 대비 0.03%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성평등 분야별 2021년 ~ 2023년 성인지 결산 】

(단위: 억원)

국가성평등 지수 분야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증감	
	지출액	지출액(A)	지출액(B)	B-A	%
전체	362,763 (100%)	259,626 (100%)	315,375 (100%)	55,749	21.5
경제활동	196,026 (54.0%)	165,170 (63.6%)	139,051 (44.1%)	△26,119	△15.8
의사결정	57 (0.02%)	60 (0.02%)	107 (0.03%)	47	78.3
교육·직업 훈련	16,802 (4.6%)	29,868 (11.5%)	31,515 (10.0%)	1,647	5.5
복지	135,822 (37.4%)	46,827 (18.0%)	127,200 (40.3%)	80,373	171.6
보건	3,368 (0.9%)	3,289 (1.3%)	3,065 (1.0%)	△224	△6.8
안전	2,828 (0.8%)	4,457 (1.7%)	2,597 (0.8%)	△1,860	△41.7
가족	6,999 (1.9%)	8,487 (3.3%)	9,567 (3.0%)	1,080	12.7
문화·정보	861 (0.2%)	1,468 (0.6%)	2,273 (0.7%)	805	54.8

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기존(개편 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임.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2021년 ~ 2023년 성평등 분야별 성인지 결산 사업 수를 살펴보면, 성불평등 수준이 높은 분야인 '의사결정' 및 '가족'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사업 수가 각각 15.4%, 6.7% 감소하였고,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전체 성인지 결산 총 사업 수의 3.1%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 2023년 성평등 분야별 성인지 결산 사업 수 】

(단위: 개)

국가성평등 지수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B-A	%
전체	347 (100%)	399 (100%)	351 (100%)	△48	△12.0
경제활동	103 (29.7%)	125 (31.3%)	104 (29.6%)	△20	△16.0
의사결정	14 (4.0%)	13 (3.3%)	11 (3.1%)	△2	△15.4
교육·직업 훈련	99 (28.5%)	119 (29.8%)	108 (30.8%)	△11	△9.2
복지	51 (14.7%)	47 (11.8%)	48 (13.7%)	1	2.1
보건	17 (4.9%)	19 (4.8%)	16 (4.6%)	△3	△15.8
안전	34 (9.8%)	38 (9.5%)	28 (8.0%)	△10	△26.3
가족	12 (3.5%)	15 (3.8%)	14 (4.0%)	△1	△6.7
문화·정보	17 (4.9%)	23 (5.8%)	22 (6.3%)	△1	△4.3

주: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기존(개편 전)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임.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사업 수는 내역사업 기준임.

나. 성평등 분석 대상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1)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정부는 성인지적 재정운용을 위한 중점방향 제시를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성인지 예·결산서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26]의 논의를 통해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성인지 예·결산서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성인지 예산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인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사업'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음.

2023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중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27]은 89개로, 예산현액 12조 893억원의 95.7%인 11조 5,708억원을 지출하였음.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112개 성과목표 중 83개가 달성되고 29개가 미달성되어 성과목표 달성률은 74.1%이며, 전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302개)의 성과목표

---

26)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재부 훈령)」** 제정(2020.10.)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강화하였고, 성인지 대상사업의 사전 심의·평가 등을 위해'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를 두고 있음. [참고자료] 3. 참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2021.2.부터 운영)
- 구성: 기재부,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민간위원 등
- 기능: 지침 개정 협의,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검토, 성과평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문평가위원회(2021.4.부터 운영)
- 구성: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분야 중심으로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등 3개 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야 민간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기능: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 사전 심의

27) [참고자료] 4. 2023년도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결산 현황

달성률 79.4%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23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예산 집행 및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억원, %)

구 분		예산 집행 현황				성과관리		
		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목표	달성	달성률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직접 목적	10	25,838	25,751	99.7	14	11	78.6
	간접 목적	79	95,055	89,957	94.6	98	72	73.5
합계		89	120,893	115,708	95.7	112	83	74.1

주: 세부사업 수 기준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여성가족부

2023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중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15개, 중소벤처기업부 4개, 보건복지부 3개, 국가보훈부 2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1개로 총 29개임.

【 2023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 가입자 비율(%)	35.0	34.1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취업촉진서비스 여성수혜율(%)	56.0	55.6	3년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훈련인원 중 여성비(%)	38.6	32.5	2년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	여성장애인 취업률(%)	40.1	39.9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여성 장애인 비율(%)	37.1	36.8	2년연속 미달성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수혜근로자 여성비율(%)	73.1	71.2	3년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임금감소액 보전) 여성 수혜자 비율(%)	7.0	5.9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 가입자 비율(%)	35.0	34.1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여성노동자직업훈련 참여율(%)	46.3	45.3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여성훈련참여비율(%)	26.5	25.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장 수(명)	1,820	947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근로자의 1년 후 고용유지율(%)	80.0	78.8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제도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83.2	82.5	3년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인원(명)	8,193	7,888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만족도(점)	89.4	89.2	2년연속 미달성
국가보훈부	취업지원	여성취업지원률(%)	35.7	35.0	3년연속 미달성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	전직지원 여성 수혜율(%)	4.1	4.0	2년연속 미달성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여성참여율(%)	50.0	43.2	
문화체육관광부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여성 선수경력자의 수혜비율(%)	14.0	13.8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취업확정 여성장애인비율(%)	41.0	40.95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여성일자리 비율(%)	86.9	86.0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계속 지원(백만원)	42,422	32,813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농식품벤처육성지원 참여 업체의 여성 대표자 비율(%)	27.8	26.9	3년연속 미달성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수혜자(교육생)의 여성비율(%)	80.0	70.4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수혜자 중 여성대표자 비율(%)	29.9	26.7	2년연속 미달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선정 여성비율(%)	18.5	17.1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인력양성(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여학생 참여비율(%)	39.2	36.7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여성취업자 수혜비율(%)	35.0	31.4	2년연속 미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미래앞장감양성(중소벤처기업 재직 전문가 양성 지원)	여성 재직자 교육 참여율(%)	26.5	17.6	3년연속 미달성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이 중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모성보호육아지원', 국가보훈부 '취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미래앞장감양성'등 12개(3년 이상 6개, 2년 이상 6개) 사업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74.1%)이 성인지 분석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79.4%) 보다 낮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12개에 달하고 있는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2) 부처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필요

2023년 성과목표 수는 383개[28]로 2022년도 437개 대비 12.4% 감소하였음. 이는 2022년 대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의 감소(39개, 11.4%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2023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9.4%로 2022년 대비 2.1%p 감소하였음. 이를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보면 2022년 대비 예산사업은 0.1%p, 기금사업은 6.4%p 성과목표 달성률이 감소하였음.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목표가 도입된 2011년부터의 달성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최하점에 도달한 달성률이 2018년 및 2019년에 걸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 다시 하락하고, 2021년부터 다시 2년 연속 개선되었으나, 2023년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8) [참고자료] 5. 2023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성과목표 달성 현황

【 2020 ~ 2023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합계	360	250	110	69.4	380	295	85	77.6	437	356	81	81.5	383	304	79	79.4
예산사업	264	186	78	70.5	280	217	63	77.5	303	244	59	80.5	260	209	51	80.4
기금사업	96	64	32	66.7	100	78	22	78.0	134	112	22	83.6	123	95	28	77.2

주: 2023회계연도 세부사업 수 302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성인지 성과목표 수 및 달성률 추이 】

(단위: 개, %)

구분	성과목표			
	목표수	달성	미달성	달성률
2012	311	221	90	71.1
2013	352	257	95	73.0
2014	420	289	131	68.8
2015	423	300	123	70.9
2016	432	298	134	69.0
2017	455	306	149	67.3
2018	438	315	123	71.9
2019	331	239	92	72.2
2020	360	250	110	69.4
2021	380	295	85	77.6
2022	437	356	81	81.5
2023	383	304	79	79.4

주: 2023회계연도 세부사업 수 302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3년에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38개 중앙관서별 성과목표 수는 최소 1개(국회 등)에서 최대 60개(고용노동부)까지 다양한데,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합쳐 10개 이상의 성인지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처는 11개 기관으로, 2개 기관(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이 전년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 증가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10개 이상 성과목표 관리 부처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p)

구 분	사업 수	성과목표	달성	미달성	달성률 (전년대비)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여성가족부	35	51	47	4	92.2 (3.5)	
기획재정부	5	10	9	1	90.0 (10)	
문화체육관광부	23	30	27	3	90.0 (△3.1)	○
해양수산부	11	13	11	2	84.6 (△2.9)	
법무부	9	11	9	2	81.8 (△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16	13	3	81.3 (△5.1)	
전 체	**302**	**383**	**304**	**79**	**79.4 (△2.1)**	
중소벤처기업부	23	26	20	6	76.9 (△4.6)	
경찰청	8	13	10	3	76.9 (△6.4)	○
농림축산식품부	13	13	9	4	69.2 (△14.1)	
고용노동부	44	60	41	19	68.3 (△6.4)	○
보건복지부	34	39	26	13	66.7 (△6.5)	○

주: 전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평균 달성률 79.4%를 기준으로 달성률의 값에 따라 배열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바탕으로 작성

2023년 정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평균 달성률(79.4%)보다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5개임.[29]

한편, 2019년도부터 각 분야의 성폭력 방지 정책과 성차별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개 부처[30]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함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총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담조직으로, 부처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성인지 정책별 성과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경찰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 평균 달성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부처들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및 성과목표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성과목표 달성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31]에 따라

29) [참고자료] 6. 2023년도 성인지 성과목표 10개 이상 부처의 달성률
30)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3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여성가족부 훈령 제142호, 2020.4.29. 발령)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 제도 운영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성과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환류를 강화하여 성인지 분석 대상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필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사전 심의·평가 등을 위해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부처별·사업별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2년부터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음.

2023년에 실시된 성과평가의 대상은 성인지 예산서를 3년 연속 작성한 총 271개 세부사업이고 전문평가위원회의 사업성과평가 후 협의회에서 최종확정하여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함.

전체 271개 사업 중 ‘매우 우수’ 사업은 26개, ‘우수’ 사업은 44개였으며, ‘보통’ 사업은 175개, ‘미흡’ 사업은 25개, ‘매우 미흡’ 사업 1개임[32].

【 2023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평가등급별 현황 】

구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개)
매우 우수(90점 이상)	26
우수(89~80점)	44
보통(79~60점)	175
미흡(59~40점)	25
매우 미흡(40점 미만)	1
전체(사업수)	271

자료: 여성가족부

32) [참고자료] 7. 2023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미흡 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운영(청탁금지제도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이 있음.

【 2022·2023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사업내역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성과 관리			
			연도	성과지표	목표	실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여성리더양성 ·심화과정운영	2021	교육생 수(명)	248	64
			2022	교육생 수(명)	300	63
			2023	교육수료율(명)	96	106.6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콘텐츠성평등 센터 운영	2021	성폭력 예방 교육 만족도	90	89
			2022	성폭력 예방 교육 만족도	90	89
			2023	성폭력 예방 교육 만족도	90	92.4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예술계인력 양성(ODA)		2021	여성 수혜자 인원 비율(%)	63.0	66.6
			2022	여성 수혜자 인원 비율(%)	69.0	71
			2023	여성 수혜자 인원 비율(%)	69.0	74.6
국민권익 위원회	청탁금지제도 운영	청탁금지제도 운영 지원 (전문가 자문료 등)	2021	여성위원 구성 비율(%)	40.0	40.4
			2022	여성위원 구성 비율(%)	40.0	30.4
			2023	여성위원 구성 비율(%)	40.0	30.4

2022·2023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사업에 대한 의견서[33]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서와 결산서 상의 성과지표의 불일치, 성과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목표 미달성 및 성과지표 개선 미흡 등을 지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콘텐츠성평등센터운영)의 경우 성과목표의 미달성 및 성과지표의 고도화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의 기본적 특성상 여성 예술인 비율이 높아 여성수혜자가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상황임에도 여성 수혜자의 성비라는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제도운영(청탁금지제도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의 적극적 발굴 노력 부족으로 인한 성과목표 미달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제도운영(청탁금지제도운영 지원)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콘텐츠

33)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성과평가 의견서

성평등센터운영) 등 3가지 사업은 비록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가 부적절하여 성과목표의 달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해당사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계획 및 성과 등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은 예산사업 22개, 기금사업 13개 등 총 35개로 2023년 여성가족부 총 세부사업 수 51개의 68.6%이고,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지출액은 1조 2,076억 1,100만원으로, 여성가족부 예산 1조 5,018억 3,700만원의 80.4%에 해당함.[34)]

여성가족부 소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접목적 사업 수는 29개(82.9%)이며, 지출액은 1조 1,211억 3,9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의 92.8%에 해당함.

한편, 간접목적 사업은 6개(17.1%), 지출액은 864억 7,300만원(7.2%)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은 대부분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직접목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개, %)

구 분	2023년			사업유형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직접목적 사업			간접목적 사업		
				지출액 (C)	사업 수	비중 (C/B)	지출액 (D)	사업 수	비중 (D/B)
계(35)	1,265,838	1,207,611	95.4	1,121,139	29	92.8	86,473	6	7.2
예산 (22)	505,595	499,990	98.9	496,215	21	99.2	3,775	1	0.8
기금 (13)	760,243	707,621	93.1	624,924	8	88.3	82,698	5	11.7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34) 행정지원, 내부거래, 보전지출을 제외한 사업 수 및 예산액임.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는 총 51개인데 이 중 달성 47개, 미달성 4개로 성과목표 달성률은 92.2%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사업은 성과목표 29개 중 27개를 달성하여 93.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기금 사업은 22개의 성과목표 중 20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90.9%임.

여성가족부 성인지 성과목표 수는 51개로,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국제개발협력(ODA)',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에서 성과목표 증감이 있어 목표수는 2022년 대비 2개가 줄어들었음.[35]

【 2020~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상사업수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대상사업수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대상사업수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대상사업수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달성률(B/A)			달성(B)	달성률(B/A)			달성(B)	달성률(B/A)			달성(B)	달성률(B/A)
합계	31	47	32	68.1	35	51	40	78.4	36	53	47	88.7	35	51	47	92.2
예산사업	19	28	18	64.3	22	32	25	78.1	23	33	30	90.9	22	29	27	93.1
기금사업	12	19	14	73.7	13	19	15	78.9	13	20	17	85.0	13	22	20	90.9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여성가족부 미달성 성인지 성과목표는 2022년 6개에서 4개로 감소했고,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92.2%)은 2022년 달성률(88.7%)

35) [참고자료] 8.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세부현황

보다 3.5%p 상승하였음.

【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변화 추이 】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사업 수	성과목표		지출액
		목표 수	달성률	
2013	38	41	54	90.7
2014	53	69	82.6	439,753
2015	51	66	83.3	487,248
2016	40	61	82.0	519,655
2017	39	60	88.3	552,933
2018	39	57	84.2	611,299
2019	33	50	92.0	806,554
2020	31	47	68.1	834,249
2021	35	51	78.4	940,853
2022	36	53	88.7	1,113,007
2023	35	51	92.2	1,207,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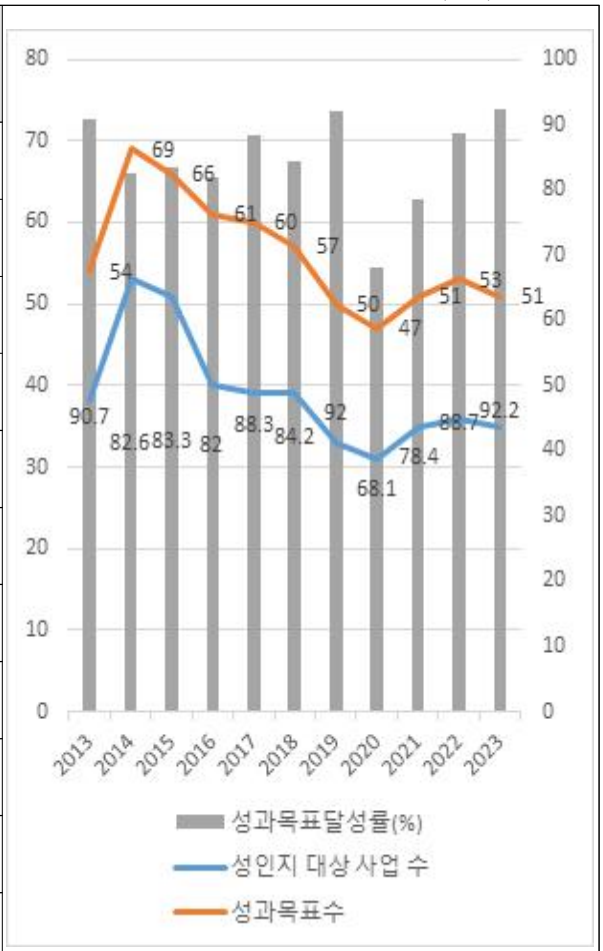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1)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2023년 여성가족부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목표		
			지표	목표치	달성치
일반회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88.0	80.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이수자 수(명)	6,950	6,429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의 성별만족도(여성)(점)	83.6	83.4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시설 기능보강 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정원 대비 입소율(%)	80.0	64.4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3년 성과목표가 미달성된 사업의 원인 및 향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성과지표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로 목표치 88.0%에 비해 실적치는 80.1%로 미달성 되었음.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대상자별 바우처 현황 및 이용방법 등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매월), 지자체별 바우처 현황 점검 및 독려(문자, 유선, 우편 등)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청소년지도사양성’의 성과지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이수자 수(명)로 보수교육 이수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자격

증 취득자의 감소로 인해 자격연수 수료인원이 감소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자격증 취득자 감소 사유는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자격취득 응시인원 감소로 추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로서 적합한 성인지적 사고 배양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지속 실시 및 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힘.[36]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의 성과지표는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의 성별만족도(점)'로 남성의 만족도는 82.4점으로 목표(81.8점)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여성의 만족도는 2022년 83.0점에서 2023년 83.4점으로 높아졌으나, 목표치(83.6점)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여성가족부는 사업 참여 청소년의 성비를 현재와 같이 균등하게 유지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품질을 높이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의 성과지표는 '부자가족복지시설 정원 대비 입소율(%)'로, 입소율 목표치 미달성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의 공급(LH 등 공공주택 공급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 지원대상), 주거급여 대상의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수요가 사회복지시설 입소 수요를 대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중 '청

36) '청소년지도사양성'은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부적절하여 2024년 성인지 분석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음.

소년방과후활동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은 3년 연속 성인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2023년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			
			지표		목표	실적
청소년 육성기금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의 성별만족도(여성)(점)	2021	85.1	82.2
				2022	83.5	83.0
				2023	83.6	83.4
양성평등 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시설 기능보강 지원	부자가족복지시설 정원 대비 입소율(%)	2021	85.0	80.0
				2022	85.1	80.0
				2023	80.0	64.4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3년 연속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를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2)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필요

2023년도 예산이 2022년보다 동일하거나 증액되었음에도 성과목표가 2022년의 성과목표 및 실적치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거의 동일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의 성과지표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로 2023년도 성과목표는 81.6으로 2022년도 성과목표(84점) 및 실적(86점) 보다 낮고[37], ‘여성사 전시관’의 경우 성과지표는 ‘여성사전시관 관람객수’로 2023년 성과목표(11,232명)가 2022년 성과목표(53,860명) 및 실적(25,220명)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의 경우 2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의 2023년 성과목표(68%)는 2022년의 높은 실적(73.2%)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0.1%p 높은 수준인 68%로 설정하였으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경우 성과지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로 3년 연속 80.6점임.

37) 세계한민족네트워크(KOWIN)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미개최, 2021년 ~ 2022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2023년 부산에서 대면 개최하였음. 여성가족부는 4년 만에 개최하는 대면 행사의 활성화체감도 추정치를 산정하여 목표설정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종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가 설정 되었다고 설명함.

【 2023년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사업 】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구분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 여부
일반 회계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202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3.6	80.8	미달성
			202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4.0	86	달성
			202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1.6	88	달성
	여성사 전시관		2021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명)	57,850	10,336	미달성
			2022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명)	53,860	25,220	미달성
			2023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명)	11,232	38,375	달성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		2021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67.8	69.8	달성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83	85.4	달성
			2022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67.9	73.2	달성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83.1	86.2	달성
			2023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68	78.8	달성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85	86.8	달성
양성 평등 기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02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점)	80.6	80.6	달성
			202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점)	80.6	80.7	달성
			202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점)	80.6	80.9	달성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그러나 해당 사업 모두 2023년 예산이 2022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된 경우[38]로 목표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8) **<성과목표 적정성 검토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액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275	251	275	255
여성사 전시관	1,851	976 (970)	4,345	567 (566)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3,741	73,651 (70,823)	74,355	74,196 (68,44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21,275	421,229 (394,924)	495,900	445,293 (416,978)

자료: 각 연도「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Ⅲ 사업별 검토

Ⅲ. 사업별 검토

1. 기획조정실

가. 일반회계

1) 기획조정기본경비(7111-252),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지원 서비스 개선사업(7133-331)

○ 일반수용비(210-01)로 우수 부서·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는바, 우수 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은 기타운영비(210-16) 등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우수 부서·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적정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기획조정기본경비(7111-252)는 기획조정실 유지운영을 위한 경상적 행정경비로 2023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억 4,400만원 중 4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9백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0%임.

【 2023년도 기획조정기본경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기획조정기본경비(비총액)	399	399	-	45	-	444	435	-	9	399

자료: 여성가족부

행정능률행상 및 민원지원서비스 개선사업(7133-331)은 여성가족부 조직·인력·정책에 대한 변화관리, 민원서비스 개선 정부혁신 추진 및 정책수행역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억 8,400만원 중 2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8%임.

【 2023년도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지원서비스 개선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지원서비스 개선사업	284	284	-	-	-	284	255	-	29	471
· 민원서비스 상담실 운영	110	110	-	-	-	110	99	-	11	-
· 혁신 및 협업행정관리	64	64	-	-	-	64	61	-	3	64
· 정책수행역량 기반 강화	80	80	-	-	-	80	68	-	12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30	30	-	-	-	30	27	-	3	
· 청년인턴 운영	-	-	-	-	-	-	-	-	-	110
· 2030자문단 운영	-	-	-	-	-	-	-	-	-	74

자료: 여성가족부

나) 적정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2022년 자체평가 포상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기본경비와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지원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일반수용비 1,714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상품권 구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상품권 구매액	비 고
◦ 기획조정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8,720	- 적극행정 BI공모전 - 2023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2023년 청렴 우수부서 등 상품권 -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지원서비스 개선사업(혁신 및 협업행정관리)	일반수용비 (210-01)	8,420	- 2023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포상 - 2022년 자체평가 포상 - 여성가족부 멘토링 - 여성가족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모 - 혁신 버스 등
합 계		17,140	

자료: 여성가족부

상품권은 현금성 물품으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3. 9. 27.)에 따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

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음.[39]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관서운영경비 집행지침」(2019. 7.)[40]에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미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상품권은 소속직원 생일, 기관 발전 또는 사업추진에 특별한 공헌을 한 내·외부인에 대한 포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와 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부서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분기별로 상품권 지급내역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60-262, p268, p270)에서는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간행물 등 구입비 등은 일반수용비(210-01)로,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은 '기타운영비(210-16)' 또는 표창 부상금 등은 포상금(310-03)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41]

39)「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p41
40) [참고자료] 9.「여성가족부 관서운영경비 집행지침」(2019. 7.)
41)「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p166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60-262, p268, p270) 】

210-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 (430-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화물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에, 기업특별회계에서 물자처리 관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운영비(210-16)목에 계상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 초빙강사료는 고용계약없이 강의회수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 후 임금을 고정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110-04)목에 계상
8.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9.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0.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1. 기타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12.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210-16 기타운영비 1. 기업특별회계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처리관리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2.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3. <u>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u>
310-03 포상금 1. <u>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u> 2. 예산절약 상여금

따라서 우수 부서·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일반수용비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여성가족부는 우수 부서·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적정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2. 운영지원과

가.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1) 세입

○ 과징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우 저조한 바, 계약상대방의 과징금 등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법령 등의 규범력 또는 계약의 이행강제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체납 과징금에 대해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기타 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1.8%에 불과하여 수납 실적이 저조하므로 여성가족부는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2023년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하 '회계 및 기금') 중 미수납액이 발생한 세입(수입)은 기타재산이자수입[42], 벌금 및 과료[43], 기타경상이전수입[44], 과징금[45] 등이 있음.

미수납액이 발생한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의 징수결정액은 893억

42) 국고보조금 등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회수액
43)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44)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
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반환 명령 미이행에 따른 제재부가금 등

8,100만원, 수납액은 461억 9,000만원, 미수납액은 431억 9,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1.7%임.

【 2023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 미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과목	예산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합 계	계	48,913	89,381	46,190	43,191	-
	기타재산이자수입	3,232	4,840	3,564	1276	-
	벌금 및 과료	-	6	-	6	-
	과징금	-	2,317	1	2,316	-
	기타경상이전수입	45,681	82,218	42,625	39,593	-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2,245	1,809	1,036	773	-
	벌금 및 과료	-	6	-	6	-
	과징금	-	152	1	151	-
	기타경상이전수입	24,511	19,049	10,695	8,354	-
지역균형 발전 특별 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	13	-	13	-
	기타경상이전수입	-	2,526	1,026	1,500	-
양성평등 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635	1,821	1,760	61	-
	과징금	-	331	-	331	-
	기타경상이전수입	16,670	48,882	25,938	22,944	-
청소년 육성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352	1,197	768	429	-
	과징금	-	1,834	-	1,834	-
	기타경상이전수입	4,500	11,761	4,966	6,795	-

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합계
자료: 여성가족부

나)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

과징금[46]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2023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는「청소년보호법」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보호기금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조금 반환 명령 미이행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 과징금으로 징수 결정되었음.

2023년 결산현황을 보면, 과징금에 대한 징수결정액 23억 1,700만원 중 100만원을 수납하고, 23억 1,600만원을 미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0.04%임.

---

46)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과징금 미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징금 부과 사유 (세부사업명, 금액, 납부의무자)	미수납 사유
계	2,317	0	2,317		
일반회계	150	0	150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등/150백만원/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채무자 파산
양성평등기금	331	0	331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284백만원/박00 ·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47백만원/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납부거부 및 채무자 파산
청소년육성기금	1,834	0	1,834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1,834백만원/(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납부거부

주: 청소년육성기금 과징금 7,162백만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중복 부과 처리한 것으로, 2024년도에 오류정정감 처리하여 2024. 2월말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은 1,834백만원임.
자료: 여성가족부

과징금 수납률 저조 사유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과징금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인바, 계약상대방의 과징금 등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법령 등의 규범력 또는 계약의 이행강제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비록 미수납액의 절대적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수납액에 비해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크거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률이 낮다면, 여성가족부가 법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체납 과징금에 대해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필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과년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기관의 불용액 등을 반납받는 수입과목으로,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업에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있음.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82.0%(‘21년) → 91.3%(‘22년) → 56.1%(‘23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54%(‘21년) → 60%(‘22년) → 40.6%(‘23년),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60.8%(‘21년) → 59.4%(‘22년) → 53.1%(‘23년),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63.4%(‘21년) → 51.4%(‘22년) → 42.2%(‘23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 연도	예산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일반회계	2021	10,312	49,726	40,765	82.0	8,961	-
	2022	12,425	32,665	29,820	91.3	2,845	-
	2023	24,511	19,049	10,695	56.1	8,354	-
지역균형특별 회계	2021	-	3,029	1,655	54.6	1,374	-
	2022		2,566	1,540	60.0	1,026	-
	2023	-	2,526	1,026	40.6	1,500	-
양성평등기금	2021	19,746	19,165	11,657	60.8	7,508	-
	2022	31,509	25,845	15,347	59.4	10,498	-
	2023	16,670	48,882	25,939	53.1	22,943	-
청소년육성 기금	2021	4,976	11,547	7,321	63.4	4,226	-
	2022	2,338	11,771	6,052	51.4	5,719	-
	2023	4,500	11,761	4,966	42.2	6,795	-
합 계	**2021**	**35,034**	**83,467**	**61,398**	**73.6**	**22,069**	**-**
	2022	**46,272**	**72,847**	**52,759**	**72.4**	**20,088**	**-**
	2023	**45,681**	**82,218**	**42,626**	**51.8**	**39,592**	**-**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세부사업별 보조사업 불용액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10개 세부사업에서 83억 4,90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우 1개 세부사업에서 15억원,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8개 세부사업에서 229억 4,3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8개 세부사업에서 67억 9,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미수납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임.

【 2023년도 세부사업별 보조사업 반환금 미수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미수납 기관
일반회계	가족서비스기반구축	1,006	598	59.4	408	서울특별시 등 4개 지자체
	가족역량강화지원	1,387	898	64.7	489	서울특별시 등 7개 지자체
	아이돌봄지원	4,974	2,703	54.3	2,271	서울특별시 등 8개 지자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4,270	2,419	56.7	1,851	경기도 등 9개 지자체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5,039	2,157	42.8	2,882	서울특별시 등 8개 지자체
	여성폭력방지추진기반구축	42	27	64.3	15	충청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550	335	60.9	215	경기도 등 7개 지자체, 민간사업자
	청소년활동지원	290	186	64.1	104	서울특별시 등 8개 지자체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89	0	0	89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기타	26	1	3.8	25	민간사업자
지역균형특별회계	가족센터건립	1,500	0	0	1,500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40	9	21.9	31	전라남도 등 8개 지자체
	가정폭력피해자지원	2,891	1,104	38.2	1,787	전라북도 등 11개 지자체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2,246	5,250	42.9	6,996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1,345	1,038	77.2	307	경상북도 등 7개 지자체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109	1,223	58.0	886	전라남도 등 7개 지자체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875	347	39.7	528	전라북도 등 8개 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120	909	81.2	211	서울특별시 등 5개 지자체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28,255	16,058	56.8	12,197	경기도 등 7개 지자체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미수납 기관
청소년 육성기금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 교육및피해자치료재활	136	101	74.3	35	전라북도 등 6개 지자체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2,742	958	34.9	1,784	전라남도 등 10개 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544	425	27.5	1,119	충청남도 등 12개 지자체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5,085	2,451	48.2	2,634	전라남도 등 14개 지자체, 민간사업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580	282	48.6	298	경기도 등 9개 지자체
	청소년참여지원	453	347	76.6	106	전라남도 등 8개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126	0	0	126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기타	700	7	1	693	민간사업자
합 계		79,420	39,833	50.2	39,587 47)	

자료: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4항[48]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보조사업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0.2%에 불과함.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시·도별 징수결정액 반납을 위한 예산 편성(추경) 시기가 상이하고 일부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 수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

47) 2023년도 회계 및 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395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부사업 중 성인지정책분석평가운영 위탁 사업 미납금 500만원이 제외됨에 따른 것임.

4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 ③ (생 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⑧ (생략)

고 있음.

향후 여성가족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제2항[49]에 따라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수납건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50]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상계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3. 여성정책국

가. 일반회계

1)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양성평등정책 전략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사업 외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공정성 · 투명성을 기하고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책연구비(260-02)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정책 조정 · 협의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48.6%로 집행이 부진하고,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회의를 서면으로만 실시하여 실질적인 논의 · 조정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 · 분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은 양성평등정책 의제 개발·평가와 성평등지수 분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협의·조정 및 각종 회의체 운영 등을 통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② 양성평등정책 조정 · 협의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억 6,200만원 중 2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은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9%임.

【 2023년도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여성정책전략 기반 구축	362	362	-	-	362	286	-	76	348
·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290	290	-	-	290	251	-	39	290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72	72	-	-	72	35	-	37	58

자료: 여성가족부

나)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내역사업인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중 양성평등정책 전략분석은 양성평등정책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 현안 사항 발굴 및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집행률은 86.4%임.

【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 전략분석 결산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290	251	-	39
· 양성평등정책 전략분석	220	190	-	30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양성평등정책 전략분석의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하였고,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의 추진체계는 ① 국내외의 다양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이슈 및 동향 리포트, 지역 여성정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자체 여성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지원하는 현안대응팀, ② 급변하는 양성평등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연구기획팀으로 이루어져 있음.

【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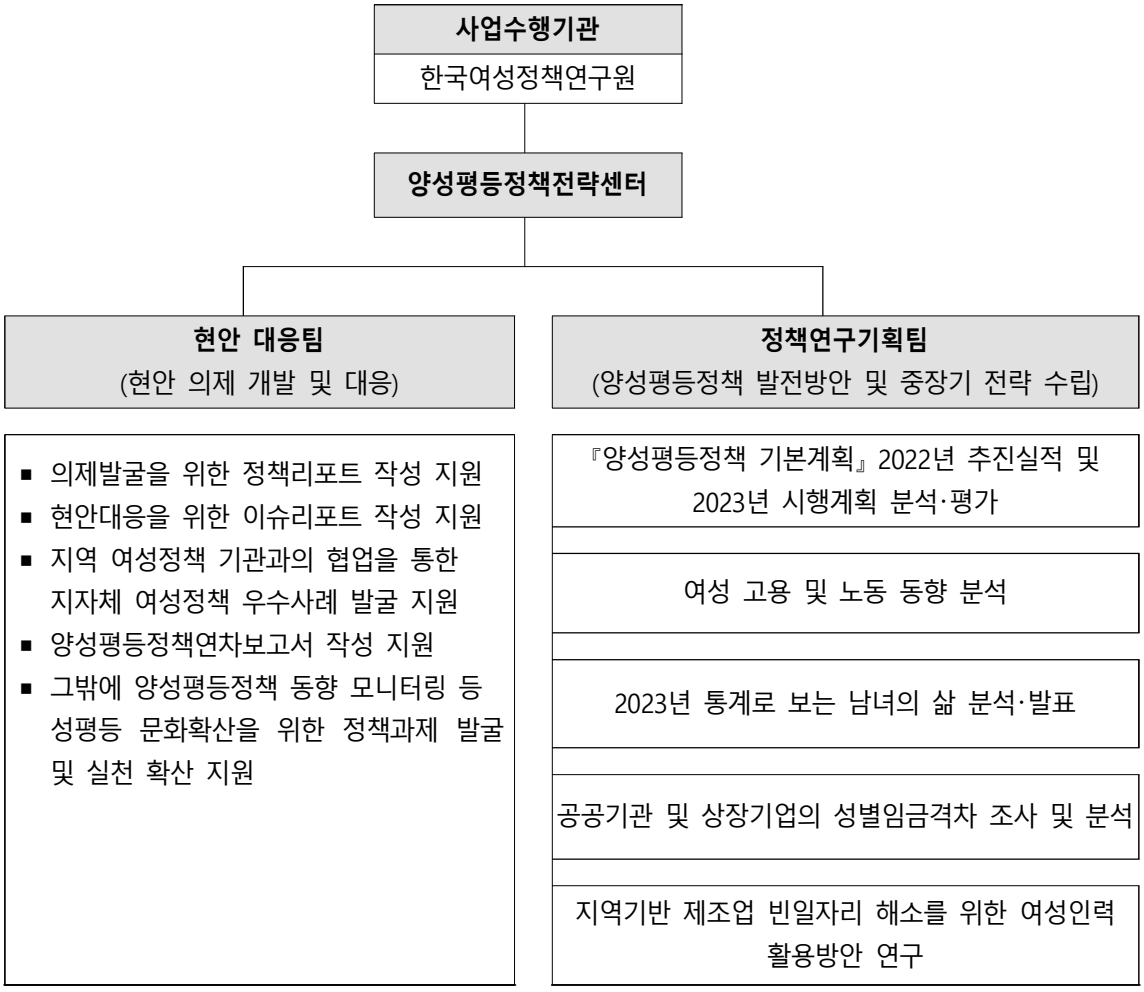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최근 3년간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를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51]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분석·평가, 양성평등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 등 외에 ① 성인 여성 생애주기별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 개발 기초 연구, ② 지역기반 제조업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이 있음.

---

51)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6조(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생략)

【 최근 3년간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정책연구과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220	300	220
집행액	193	265	190
위탁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 과제명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시행계획 분석·평가 · 여성 고용·노동 동향 및 주요 이슈 심층분석 · 성인 여성 생애주기별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 개발 기초 연구 ·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분석·발표 · 체육계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실태조사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시행계획 분석·평가 · 여성 고용·노동 동향 및 주요 이슈 심층분석 ·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분석·발표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 연구 ·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분석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시행계획 분석·평가 · 여성 고용·노동 동향 및 주요 이슈 심층분석 ·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분석·발표 ·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분석 · 지역기반 제조업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소관)」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52]로, ②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을 정책연구비(260-02)[53]로 집행하

52)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98p.
5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88p.

도록 하고 있음.

또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고,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③ 정책연구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략)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

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 ③ (생략)

그런데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되어 있어 정책연구의 경우, ① 연구과제와 연구자를 선정할 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② 정책연구결과가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개발이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공정성·투명성을 기하고 정책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에 정책연구비(260-02)를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활성화 필요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은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양성평등은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어 일부 부처가 아닌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대상' 중심으로 추진되는 양성평등정책의 특성 상 '기능' 중심으로 구분된 각 부처 정책과의 통합·조정을 통해서 실효적 추진이 가능함.

이에 따라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54]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동법 제13조[55]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56] 및 전담전문인력, 그리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57] 등을 통한 범부처적

---

54)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56) 각 설치 부처의 직제 시행규칙에 근거함.

57)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3%(2021년) → 44.3%(2022년)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의 경우 48.6%로 소폭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결산 】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년	79	79	79	65	-	14	82.3
2022년	79	79	79	35	-	44	44.3
2023년	72	72	72	35	-	37	48.6

자료: 여성가족부

제1조(설치)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및 권익정책과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의 협의체 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참고자료] 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규정」

양성평등위원회는 2015년 7월 처음 개최한 이후 2024년 5월 까지 총 17회를 개최하여, 통상 연 2회, 실무위원회는 연 5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통상 연 1~2회 운영하고 있음.[58]

2023년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2회, 실무위원회는 6회의 회의가 서면으로만 실시되어 실질적인 논의·조정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2023년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회의	일자	참석 위원	심의안건(심의 결과)	방법
양성평등 위원회	2023.1.16. ~ 1.18.	위원장 등 총 25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 ~ 2027)(안) -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서면
	2023.6.19. ~ 6.21.	위원장 등 총 25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 ~ 2027) 2023년 시행계획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023 ~ 2027)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 ~ 2022)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1 ~ 2023) 2022년 이행점검 결과 -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보완 계획	서면
실무 위원회	2023.1.9. ~ 1.11.	위원장 등 총 27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 ~ 2027)(안) -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서면
	2023.3.29. ~ 3.30.	위원장 등 총 44명	- 2022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 결과	서면

58) [참고자료] 11. 최근 3년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	일자	참석 위원	심의안건(심의 결과)	방법
	2023.4.28. ~ 5.2.	위원장 등 총 29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 ~ 2027) 2023년 시행계획(안)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023 ~ 2027)(안)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 ~ 2022)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1 ~ 2023) 2022년 이행점검 결과 -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보완 계획	서면
	2023.7.26. ~ 7.28.	위원장 등 총 18명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서면
	2023.8.28. ~ 8.30.	위원장 등 총 32명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	서면
	2023.9.27. ~10.5.	위원장 등 총 44명	- 2023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 결과	서면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실적을 살펴보면 총 4회 중 서면방식 1회, 영상방식 2회, 대면방식 1회로 운영되었음.

【 2023년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개최 현황 】

일자	참석자	안건	방식
2023.3.3.	차관, 여성정책국장,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부처별 신설기구 성과평가 실적 중간점검 및 각 부처 주요정책 현안사항 논의	대면
2023.7.31.	여성정책국장,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양성평등주간 및 대한민국 양성평등포럼 개최 협조 요청 -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와 과제 수시 연구과제 보고 - 각 부처 협조요청 사항 공유	영상
2023.9.26.	여성정책국장,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성별영향평가 운영 협조 - 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배포	영상
2023.12.14. ~15.	여성정책국장, 안건 담당과장,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등	- 2024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 유치원·어린이집 성폭력 예방조치 - 각 부처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 공유	서면

자료: 여성가족부

향후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1231-321)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은 2022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80.1%이나, 지자체는 49.1%로 중앙행정기관보다 낮고,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교육참여가 전년 대비 35,665명(△37.9%)이 감소하였는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은 정책 및 예산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여성과 남성의 정책 만족도 및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성별영향평가 운영,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③ 성인지 예·결산 운영, ④ 성인지 통계 운영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4억 700만원 중 41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9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3%임.

【 2023년도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4,407	4,407	-	-	4,407	4,158 (4,096)	-	249	4,075
- 성별영향평가 운영	3,996	3,996	-	-	3,996	3,779 (3,717)	-	217	3,664
- 여성친화도시 조성	131	131	-	-	131	122	-	9	131
- 성인지 예·결산 운영	240	240	-	-	240	221	-	19	240
- 성인지 통계 운영	40	40	-	-	40	36	-	4	40

자료: 여성가족부

나)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참여율 제고 필요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59],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성별영향평가 적용 기관은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59)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각 기관은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평가 대상[60]으로 선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성별영향 평가서를 여성가족부장관(지자체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함.

여성가족부장관(지자체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 평가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지자체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에 대해 정책개선 이행률을 점검·관리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2년[61] 306개의 성별영향평가 추진기관이 수립한 '개선계획 수립과제'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 과제(20,479개)의 40.0%(8,191개)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4,074개에 대해서만 개선이 이루어져 정책개선 이행률은 49.7%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71.0%('20년) → 77.8%('21년) → 80.1%('22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자체의 이행률은 43.9%('20년) → 51.5%('21년) → 49.1%('22년)로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31%p만큼 낮은 실정임.

60)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임.

61) 2023년도 이행점검 결과는 2024년 7월말 현재 제출되지 않았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2024년 8월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 2020~2022년도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정책개선 현황 】

(단위: 개)

연도	대상 기관 (기관수)	추진 과제(주1) (A)	개선계획 산출률 (B/A)	개선 이행률 (C/B)	개선계획 수립과제(주2)			개선과제(주3)		
					소계 (B=가+나)	자체 개선안 (가)	개선의견 수용 (나)	소계 (C=다+라)	자체 개선안 (다)	개선의견 수용 (라)
2020	전체 (306)	22,818	37.4	44.7	8,528	5,767	2,761	3,811	2,074	1,737
	중앙행정기관 (46)	2,048	12.8	71.0	262	88	174	186	69	117
	광역자치단체 (17)	2,485	55.2	37.0	1,372	1,012	360	507	316	191
	기초자치단체 (226)	17,805	37.5	45.9	6,674	4,480	2,194	3,063	1,643	1,420
	시·도교육청 (17)	480	45.8	25.0	220	187	33	55	46	9
2021	전체 (306)	22,888	38.1	52.4	8,716	6,303	2,413	4,566	2,952	1,614
	중앙행정기관 (46)	1,840	16.1	77.8	297	112	185	231	96	135
	광역자치단체 (17)	2,568	55.6	43.5	1,429	1,172	257	622	463	159
	기초자치단체 (226)	18,025	37.7	53.3	6,803	4,860	1,943	3,627	2,323	1,304
	시·도교육청 (17)	455	41.1	46.0	187	159	28	86	70	16
2022	전체 306	20,479	40.0	49.7	8,191	6,068	2,123	4,074	2,711	1,363
	중앙행정기관 46	1,481	11.2	80.1	166	92	74	133	74	59
	광역자치단체 17	2,390	56.6	43.7	1,352	1,078	274	591	420	171
	기초자치단체 226	16,168	40.3	50.3	6,510	4,770	1,740	3,276	2,157	1,119
	시·도교육청 17	440	37.0	45.4	163	128	35	74	60	14

주1: 추진과제는 대상과제(성별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에서 기타과제(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 및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를 제외한 과제 수를 의미함.
2: 개선계획 수립과제는 성별영향평가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과제와 여성가족부 또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개선의견을 수용한 과제(일부 수용 포함)를 의미함.
3: 개선과제는 개선계획 수립과제 중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과제를 의미함.
자료: 각 연도「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62]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영향평가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7,001명, 2021년 98,473명, 2022년 66,679명으로, 2022년의 경우 2021년 대비 31,794명(△32.3%) 감소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대비 35,665명(△37.9%)이 감소하여 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교육참여율의 경우 3년 연속 약 43%로 저조함.

---

62)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20 ~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현황 】

(단위: 명)

연도	직급별 교육 참여인원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교육 참여인원		
	대상기관 수	합계	5급 이상	6급 이하	기관수	책임관	실무담당
2020	전체(306)	87,001	6,121	80,880	전체(306)	131	351
	중앙행정기관(46)	9,751	1,151	8,600	중앙행정기관(46)	27	7
	광역자치단체(17)	16,957	1,389	15,568	광역자치단체(17)	13	40
	기초자치단체(226)	59,954	3,494	56,460	기초자치단체(226)	89	285
	시·도교육청(17)	339	87	252	시·도교육청(17)	2	19
2021	전체(306)	98,473	6,483	91,990	전체(306)	131	495
	중앙행정기관(46)	3,456	447	3,009	중앙행정기관(46)	15	42
	광역자치단체(17)	15,491	1,900	13,591	광역자치단체(17)	17	40
	기초자치단체(226)	78,653	3,986	74,667	기초자치단체(226)	93	383
	시·도교육청(17)	873	150	723	시·도교육청(17)	7	30
2022	전체(306)	66,679	6,100	60,579	전체(306)	136	376
	중앙행정기관(46)	6,690	2,212	4,478	중앙행정기관(46)	16	31
	광역자치단체(17)	12,080	1,542	10,538	광역자치단체(17)	11	34
	기초자치단체(226)	46,399	2,132	44,267	기초자치단체(226)	101	272
	시·도교육청(17)	1,510	214	1,296	시·도교육청(17)	8	39

자료: 각 연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를 바탕으로 작성

정책개선 이행률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직결되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담당 공무원의 공감대 제고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및 교육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여성사전시관(1232-332)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중간설계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일시 정지 상태이며, 2022년도 이월 예산인 설계비뿐만 아니라 2023년도 공사비 예산 전액이 불용됨에 따라 집행률이 0.04%로 저조한바,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 기간을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중간설계는 기본조사설계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이므로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실시설계비(420-02)로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사전시관[63]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64]에 따라 한국의 역사발전에 기여한 여성인물 및 성평등 문화의 전형을 발굴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고 한국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임.

---

63) 2002년에 서울시 여성플라자건물을 임차하여 전시관을 설립하였고 2012년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지방합동청사로 이전 개관하였음.

64)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동 사업의 202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2억 1,100만원 중 5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4,4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9%에 불과함. 이는 국립여성박물관 건립 예산현액(46억 4,400만원)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임.

【 2023년도 여성사전시관 결산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여성사전시관	4,345	4,345	866	-	-	5,211	567 [566]	-	4,644	4,352
· 여성사전시관 운영	562	562	-	-	-	562	562 [561]	-	-	569
· 간담회 등 사업추진	5	5	-	-	-	5	3 [3]	-	2	5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3,778	3,778	866	-	-	4,644	2 [2]	-	4,642	3,778

자료: 여성가족부

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은 합리적인 공사기간 설정 및 연례적 이월·불용 방지 필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46억 4,400만원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 4,2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0.04%에 불과함.

【 최근 4년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296	252	44	1,333	459	866	4,644	2	3,778	-
▪ 기본조사 설계비(420-01)	296	252	44	44	44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1,279	413	866	866	-	-	-
▪ 공사비(420-03)	-	-	-	-	-	-	3,517	-	3,517	-
▪ 감리비(420-04)	-	-	-	-	-	-	255	-	255	-
▪ 시설부대비(420-05)	-	-	-	10	2	-	6	2	6	-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규모는 연면적 7,000㎡(지하 2층~지상 5층), 공사기간은 2021년~2023년(3년), 총공사비 267억 7,700만원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임.[65]

65)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 국립여성사박물관 당초 기본계획상 건립 개요 】

구 분	내 용
건설공사명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공사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일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공사 규모	연면적 7,000㎡, 지하 2층~지상 5층
공사 형태	기존 노후 건물 철거 후 증축
공사 기간	2021년 ~ 2023년(3년)
총공사비	267억 7,700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공사 내용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연차별 시행계획	2021년 설계공모, 기본설계 2022년 기본·실시설계, 건설공사 2023년 건설공사, 개관

자료: 여성가족부

당초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 추진,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였음.

그러나 중간설계 실시 후 2023년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공사비가 약 105억 6,600만원이 증가[66]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기재부(KDI) 주관 '사업

66) 중간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 사유

(단위: 백만원)

공사비 증액 사유	증가액
물가상승 반영	4,496
연면적 증가, 지하층 층수 추가	1,912
토목공사비 증액	3,741
기존시설 철거 및 이송비용 추가	417
합 계	10,566

자료: 여성가족부

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임.

이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은 2022년 12월 이후 일시정지 상태로 실시설계 및 전시설계 등이 완료되지 않아 2022년도 이월예산인 실시설계비 8억 6,600만원과 2023년에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 37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현황 및 계획 】

기 간		절차
추진 경과	2020. 6.	문체부의 국립여성사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0. 12.	2021년도 예산안(설계비) 반영
	2021. 1.	기획재정부와 협의, 총사업비 확정, 사업내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
	2021. 4.	국립여성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고시
	2021. 4. ~ 9.	설계공모지침 마련, 공공건축심의
	2021. 9. ~ 12.	설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공모
	2021. 12.	설계 계약 체결 (* 용역 일시정지 중)
	2022. 2. ~ 4.	경계복원측량, 부지 현안 검토 및 변경안 검토
	2022. 3. ~ 5.	건립부지 관련 관계기관(은평구청, 국무조정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협의
	2022. 6. ~ 9.	서울시 경관심의(7월),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2022. 9. ~ 11.	중간설계 추진
	2023. 1. ~ 5.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3. 6. ~ 11.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협의
	2023. 12. ~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
향후 일정	2024. 하반기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재협의
	2025년 이후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적정성 검토(조달청), 총사업비(기재부)), 시설공사 추진 등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예산에는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37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024년 6월 현재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및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재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각 단계별 적정성 검토 및 심의·협의 기간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사업 기간을 정하여 일정을 계획하고, 비효율적인 예산배정으로 연례적인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 여성가족부는 실시설계 및 공사 기간을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 중간설계의 적정 비목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동 사업의 설계용역은 ① 계획설계, ② 중간설계, ③ 실시설계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3단계의 설계용역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계약기간: 2021. 12. ~ 2022. 12.)하였음.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1년 12월에 총액 12억 1,900만원의 설계용역 계약 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계획설계를 진행하였음.

계획설계가 완료된 후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중간설계를 진행하면서 선금으로 실시설계비(420-02)로 4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2023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었음.

【 최근 4년간 국립여성사박물관 설계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계	296	252	44	1,323	457	866	866	-	866	-
▪ 기본조사 설계비(420-01)	296	252	44	44	44	-	-	-	-	-
- 설계보상	100	100	-	-	-	-	-	-	-	-
- 계획설계(설계용역)	196	152	44	44	44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1,279	413	866	866	-	866	-
- 실시설계(설계용역)	-	-	-	1,023	413	610	610	-	610	-
- 지하안전영향평가	-	-	-	72	-	72	72	-	72	-
- 전시설계	-	-	-	184	-	184	184	-	184	-

자료: 여성가족부

【 여성사박물관 설계용역 집행현황 】

구 분	설계 용역		
계약기간	2021. 12. 22.~ 2022. 12. 7.(일시 정지)		
계약금액	1,219백만원		
세부내용	① 계획설계	② 중간설계	③ 실시설계
수행기간	2021.12. ~ 2022.6.	2022.9. ~ 2022.11.	-
예산과목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예산액	196백만원	1,023백만원	
집행액	196백만원	413백만원	-
집행일	2021. 12. 27. (1차 선금) 2022. 10. 7.	2022. 10. 7. (2차 선금)	-
비고 (완료여부)	완료	완료	-

주:'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후 총사업비 재협의 결과에 따라 금액·기간 등 변경계약 예정
자료: 여성가족부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52p)에서는 "건축분야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간설계는 기본조사설계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이므로 기본조사설계비(420-01)로 집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비(420-02목)로 집행할 수 없음.

따라서 향후 여성가족부는 동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 예산에 대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권익증진국

가. 일반회계

1)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2136-316)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은 각각 다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각각의 내역사업이 연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은 2018년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67]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여성폭력방지 정책 전략분석, 성매매·가정폭력·여성폭력·성희롱 등 관련 실태조사,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운영 등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억 8,400만원 중 7억

67)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시행 2019. 12. 25.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784	784	-	-	784	761	-	23	3,415
·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협의	39	39	-	-	39	34	-	5	39
·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분석	150	150	-	-	150	132	-	18	150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95	595	-	-	595	595	-	-	-
· 여성폭력실태 조사	-	-	-	-	-	-	-	-	600
· 성희롱 실태조사	-	-	-	-	-	-	-	-	500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	-	-	-	-	-	-	80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	-	-	-	-	-	-	-	-	1,230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	-	-	-	-	-	-	-	816

자료: 여성가족부

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를 통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 동행, 법률·의료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의 2023년 실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 5억 9,500만원 중 5억4,900만원이 집행되었고,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95	595	-	595	549	-	46	613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동 사업은 2021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되어 2023년도까지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지원)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취지 및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지

적을 받아 2024년도 예산에는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양성평등기금 사업, 2159-432)의 내역사업인 통합상담소(디지털 성범죄특화형)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지역별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지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 행위를 일컫는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68] 비교적 최근에 새로 등장한 개념으로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69]의 발생 건수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7년 9월 이후 매년 5,00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징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6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94&ccfNo=1&cciNo=1&cnpClsNo=1)
69)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발생건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2,412	4,841	6,635	7,615	5,170	6,465	5,925	5,764	4,881	5,541	5,876

자료: 경찰청 범죄통계

【 성폭력 범죄의 죄종별 현황[70] 】

(단위: 건)

구 분	발생 건수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 등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2020년	29,467	21,702	4,881	2,047	686
2021년	32,080	20,267	5,541	5,067	534
2022년	40,515	22,484	5,876	10,563	603

자료: 경찰청

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및 심각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기반 강화, 인식개선 홍보, 예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피해자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각각 다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이 연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 사업	내역 사업	2022년	2023년	2024년
양성평등기금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지원	-	-	613 (이관)
일반회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디클’ 유지관리	283	240	240

70)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준

회계	세부 사업	내역 사업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76	595	-
일반회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사업 -디지털성범죄 대응역량 강화	1,227	1,216	1,443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	185	185
일반회계	아동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종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929	-

자료: 여성가족부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모두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여성가족부가 최근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대책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는 다른 사업이 양성평등기금 등 기금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양상의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 홍보의 경우 예산상의 제약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홍보 사업인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사업이나 별도의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홍보 사업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음.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영상물 삭제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기간제 인력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성평등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42억 3,300만원 중 132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233	-	-	-	14,233	13,237	-	996	14,692
· 인건비	6,353	-	-	△68	6,285	5,793	-	492	
· 운영비	2,123	-	-	68	2,191	2,177	-	14	
· 사업비	5,757	-	-	-	5,757	5,267	-	490	6,110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 지원	1,350	-	-	-	1,350	1,308	-	42	1,888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947	-	-	-	947	927	-	20	825
-여성폭력피해자 인권 보호	1,241	-	-	-	1,241	1,062	-	179	1,44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연구 등	1,754	-	-	-	1,754	1,527	-	227	1,954
-중앙인신매매등피해 자권익보호기관 운영	80	-	-	-	80	80	-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중앙 총괄기능 수행	200	-	-	-	200	194	-	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185	-	-	-	185	169	-	16	

자료:여성가족부

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운용 방식 개선 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 연구 등,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5대 폭력 피해

자 지원 중앙 총괄기능 수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 중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대응력 강화 및 지원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디지털 성범죄 정책대응 연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체제로 불법영상물 삭제, 상담, 수사·법률·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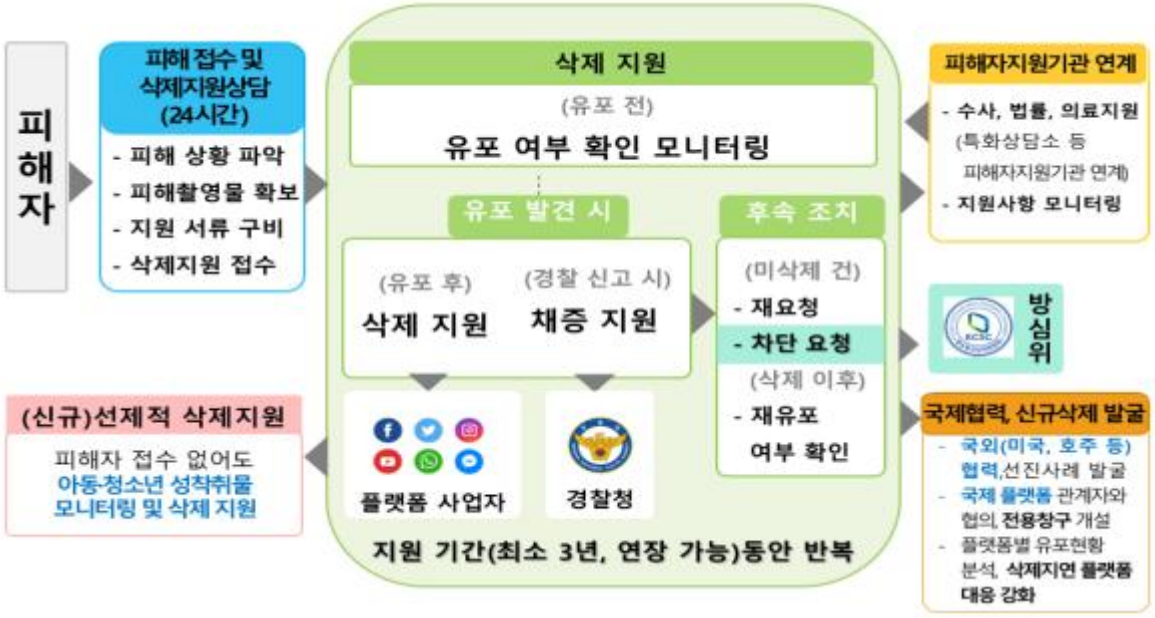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71] 또는 제14조의2[7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73]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의미함.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양상의 변화로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의 38.5%가 기간제 인력으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

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어려운 상황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정규직	계	17	21	24
	삭제지원	13	13	14
	상담지원	4	8	10
기간제	계	22 (8개월)	18 (8개월)	15 (8개월)
	선제적 삭제지원	**11 (8개월)[74]**	**11 (8개월)**	**11 (8개월)**
	미채용 등*	11 (8개월)	7 (8개월)	4 (8개월)
총 인원		39	39	39

* 상담 교대근무자, 행정·회계 인력 등 선제적 삭제지원 담당 인력을 제외한 인원수
자료: 여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

(단위: 건수)

기 간	총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18년 (4.30.-12.31.)	33,921	4,787	**28,879**	203	52
2019년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년	170,697	11,452	**158,760**	445	40
2021년	188,083	17,456	**169,820**	708	99
2022년	234,560	19,259	**213,602**	1,525	174
2023년	275,520	28,082	**245,416**	1,819	203
계	1,004,159	86,771	**911,560**	5,200	628

자료: 여성가족부

74) 선제적 삭제지원 현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여 예산 기준 기간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의 평균치를 기재함. 예를 들어 2023년 예산 기준 15명의 기간제 인력이 8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는 202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75]으로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접수로 인한 삭제지원 외에 신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선제적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이에 기존의 피해자 신청에 의한 삭제지원 업무는 정규직 인원이 담당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선제적 삭제지원 업무는 기간제 삭제지원 인원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3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인력은 전원이 기간제(11명)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아

---

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1. 1. 12.>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인력 현원은 예산상의 정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기간만료에 따른 퇴사와 신규채용의 반복으로 인한 업무 단절로 피해영상물 유포추적 등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직무분석 연구 결과[76] 정규직의 업무실적이 단기 계약직의 실적에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숙련된 정규인력의 배치가 중요해 보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의 영상물 삭제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기간제 인력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 운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6)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연구 수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무 분석 연구 보고서」, 2021, 66면 참조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동법에 따라 시 · 도에 설치해야 하는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바,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지연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구조·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하며, 지역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함)을 통한 피해 신고접수, 응급조치, 피해자 판정,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인신매매 피해 구조·지원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지역피해자 지원사업 위탁연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함) 운영 및 피해자 지원 등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억 9,400만원 중 3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집행률이 53.9%로 저조함.

【 2023년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524	524	70	±15	594	320	-	274	291
· 정책조정협의회 운영	4	4	-	-	4	4	-	-	4
· 피해자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9	9	-	-	9	1	-	8	5
· 인신매매방지 홍보	150	150	-	-	150	150	-	-	80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217	217	-	-	217	-	-	217	-
·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44	44	-	-	44	-	-	44	-
· 인신매매방지 교육	50	50	-	-15	50	35	-	-	22
· 지역피해자 지원사업 위탁연구	50	50	-	15	50	60	-	5	-
·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피해자 지원	-	-	-	-	-	-		-	180
· 인신매매방지 추진기반 구축	-	-	70	-	70	70	-	-	-

자료: 여성가족부

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지연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결방안 모색 필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개념을 정의하고, 피해자 식별 및 추진체계,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라 함)이 2021년 4월에 제정 및 공포된 후 2023년 1월 1일 시행에 맞추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조정협의회 운영,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인신매매 방지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사업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1,7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또한 ‘피해자 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발굴된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접수된 피해자의 심리치료, 생활,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 4,400만원도 전액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등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 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 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217	217	-	-	217	-	-	217	-
·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44	44	-	-	44	-	-	44	-

자료: 여성가족부

【 2023년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	
계	217	
인건비	67	· 인건비 : 55백만원 = 5명×1개소×2.7백만원×8개월×50% · 초과근무수당 : 6백만원 = 5명×1개소×0.3백만원×8개월×50% · 퇴직적립금 : 6백만원 = 1개소×12백만원×50% * 인건비의 10%
운영비	66	· 기관운영비 : 19백만원 = 1개소×4.8백만원×8개월×50% · 기자재 구입 : 1백만원 = 1개소×.0.2백만원×8개월×50% · 사무실임차(보증금, 월세) : 31백만원 = 1개소×61백만원×50% · 사무공간 확보 : 15백만원=1개소×30백만원×50%
사업비	39	· 홍보(캠페인) : 18백만원=1개소×35백만원×50% ·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6백만원=1개소×10명×6회×0.2백만원×50% · 교육사업비 : 10백만원=1개소×(2회×8개월×1.3백만원)×50% · 신고접수, 현장조사, 통역 등 : 5백만원=1개소×11백만원×50%
법률지원	45	30명×1.5백만원×100%

자료: 여성가족부

당초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부여된 기능 및 역할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5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

업 무	주요 내용
❶ 신고접수	- 신고 접수 및 긴급전화 설치·운영
❷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 현장조사 출동 - 응급보호 및 긴급 구조지원 의뢰
❸ 확인서 발급	- 인신매매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피해자 확인서 발급
❹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시설 통보
❺ 중앙기관 및 타 기관 연계지원	- 중앙권익보호기관 보고 및 협력 - 피해자지원시설 및 타 기관 연계 및 협업
❻ 교육 · 홍보	-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위탁 -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홍보
❼ 기타업무	- 피해자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자료: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77]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7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생략)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③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사후관리,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두는 기관이므로, 17개 시·도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야 함.

그런데, 「인신매매방지법」이 2021년 4월에 제정되었음에도 2023년 예산에는 1개소 시범 운영 예산만 반영하였고, 이마저도 설치되지 못하였는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수요조사 및 공모결과 희망 지자체가 없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었음.

특히 2024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관련 예산이 모두 순감된 상황임.

여성가족부는 시·도 개별접촉, 시·도 국장 회의 상정, 수요조사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시·도의 참여 의사가 없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함.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노력 경과(여성가족부) ▶

△ 시·도 순회 설명회 개최(22.2월)

△ 시·도 수요조사 공문 시행(22.7월 2회, 23. 2월)

* 여가부 전담직원 파견 등 인센티브 제공 포함

△ 전남도에서 지역권익보호기관 참여 신청('22.7월) 및 이후 미참여 전달('22.10월)

* (미참여 사유) 당초 시범운영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철회, 기타 기관 찾기 어려움

△ 시도 수요조사 추가 공문 시행('22.10월, 23.3월)

△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차관 및 시도부단체장) 상정 협조요청('23. 2.13 / 3.15)

△ 시·도(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 개별접촉 협의('23.4~5월)

△ 여가부-시도국장회의 상정 협조요청 ('23. 4. 7)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수행기관 공모('23.5.16~6.16),

* 공모시 여가부 직원파견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업무 컨설팅 제공 등 인센티브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동법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78] 및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에 따라 시・도별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여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사례판정위원회"라 함)를 두어야 하는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3년 6월 「(임시)사례판정위원회 한시적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7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을 신청(‘23. 7. 13.)하였고, 감사원은 임시사례판정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필요성을 “인용”하였음(‘23. 8. 18.).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한시적으로「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례판정을 통해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처럼 2023년 1월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은 8월 이후에서야 가능하게 되었음.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1명임.

【 연도별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 】

(단위: 건)

연도	월	인원	내국인	외국인	성별		착취 유형*
2023년	9월	3	0	3	여성	3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2024년	7월	3	0	3	여성	3	성적 착취
		1	0	1	여성	1	성매매, 성적 착취
		4	0	4	남성	3	노동력 착취
					여성	1	
합계		11	-	11	-	11	-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중앙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피해

가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추진·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 2024년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피해자 지원 : 180백만원 ▶
· 중앙권익보호기관 운영 : 108백만원(총액내 운영)
* 인건비 3명(기존 중앙권익보호기관 상담 및 교육업무 담당 인력)
* 운영비(수용비, 업무추진비, 상해보험 등)
·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지원 : 39백만원
* 인신매매등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워크숍, 양성 및 보수교육 교재개발, 사례판정위원회 개최·운영 등
· 중앙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 : 33백만원
* 피해자 확인서 발급자 중 취업지원, 귀국지원, 법률지원 등

자료: 여성가족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에 사례판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법령상 근거 없는 업무수행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동 법률을 제정할 당시 구상했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지연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인신매매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빈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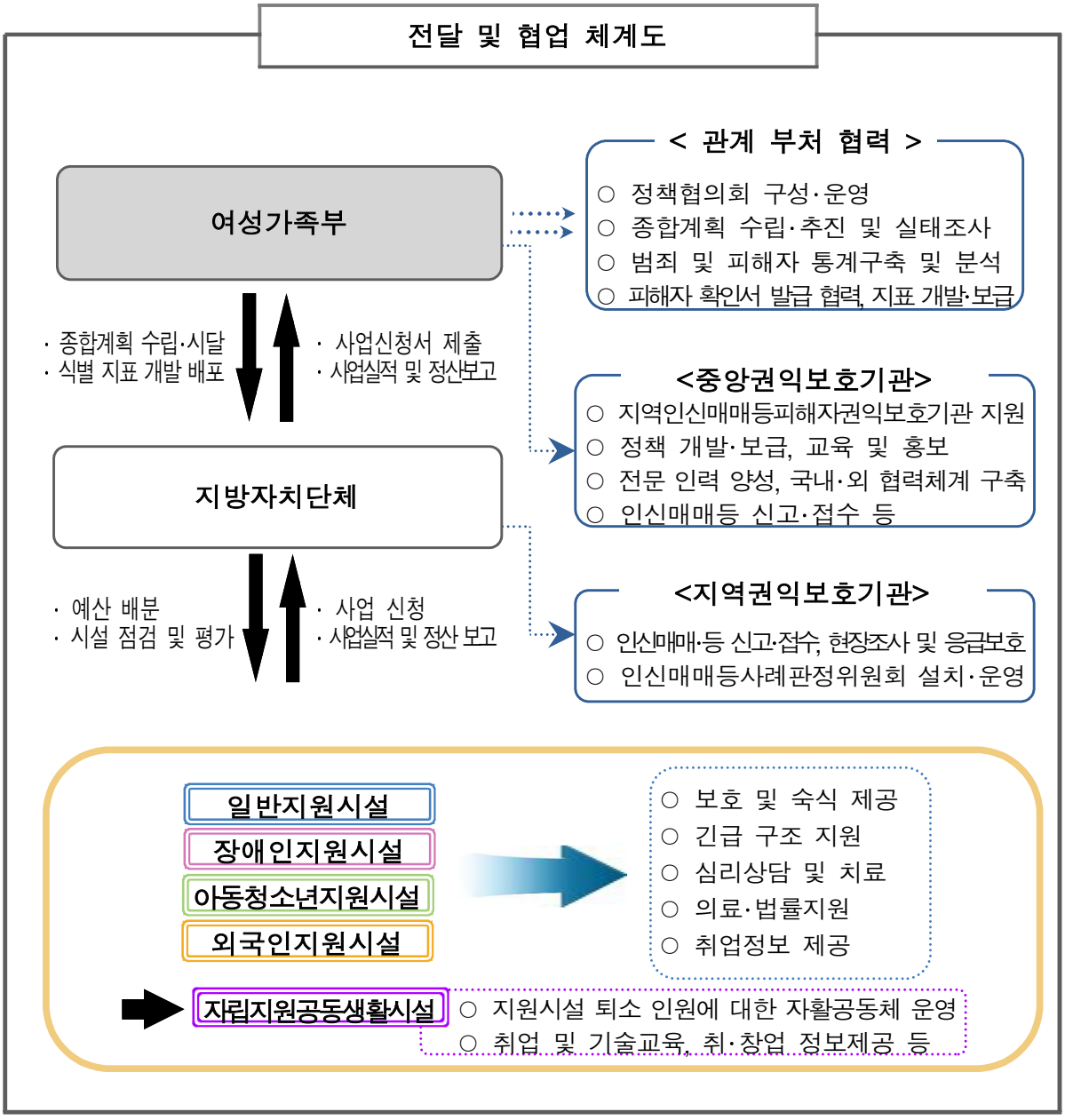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 업무는 성매매·성착취·노

동착취·장기적출 등 강력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반면, 지자체는 여성·외국인·인권·노동 관련 부서가 각자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도는 타 분야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실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미설치 주요이유(시·도) ▶

【지방자치단체 의견】

① 업무범위가 광범위하여 시·도내 성매매·노동·인권 부서 간 사업주체 선정에 애로

- (여성정책부서) 성매매 이외 노동착취 등 담당 어려움
- (외국인·인권부서) 노동부 또는 행안부 소관 업무만 수행, 여가부 업무수행 곤란

② 전담인력 확보 및 보조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필요

【관련단체 의견】

① 「인신매매방지법」이 여성은 물론 노동, 외국인 등 여러 부처 사무라는 점과 기존 법인들이 노동, 외국인 등에 대한 새로운 지원 모델 개발 등에 대한 부담감

② 보조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검토 필요

자료: 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법」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 분류되나 그 내용이나 업무의 성격은 여성가족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업무의 성격 및 시·도의 업무 수행 부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제4항에 법률상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법률 및 사업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부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시설 등 간에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관련 부처 및 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 및 보호체계 구성 】

피 해	식별·긴급구조 (조기발견)	피해자지원 협업프로그램 운영 (피해자지원시설 등)		사회복귀
발생	⇒ **신고 접수 긴급 구조** · 상담·모니터링 · 인신매매행위 피해 신고·접수, 긴급출동 · 피해자 격리, 임시보호 또는 의료연계	⇒ **피해자 보호·지원**	·상담, 의료·법률, 사례 관리 ·긴급보호 및 지원시설 연계 ·피해자(가족) 상담운영 등	⇒ **치료·안정 회복** **안전한 사회복귀** · 사후관리, 귀국지원
		역량강화 교육	·(청소년) 진로·진학, 취학연계 ·(외국인) 귀국지원 훈련 등 ·(일반인, 장애인) 자립·자활교육, 취·창업정보 제공 등	
지역 협업 체계	⇒ **(해양)경찰관서** · 신고접수연계(야간) · 긴급출동·구조 동행 · 가해자 초동수사 **노동관서, 출입국관서** · 업무현장 점검시 인신매매 추정피해자 식별 · 잠재적피해자 신원확인, 수사, 권익보호기관 연계 **지자체(사회복지공무원)** · 임시숙소 연계(지원시설) · 업무관련 식별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등** · 업무관련 식별체계 구축 · 피해자 발견·신고	⇒ **(전담)의료기관**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지원 ·보건상담 ·건강진단 및 질병 치료	
		변호사, 국제이주기구 등	·법률상담 및 보상청구 등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연계 ·본국으로 귀환관련 정보 제공	
		다문화 가족센터, 상담소 등	·통·번역 등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자립지원 패키지 참여 등	
		새일센터, 노동센터, 자활후견 기관등	·직업 훈련 ·취업 및 창업 연계, 창업 멘토링 ·자활공동체 운영 ·복지프로그램등 전문분야서비스	⇒

자료: 여성가족부

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2137-322)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는 1차로 모바일 방식으로 고지하고, 모바일 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2차로 우편 고지가 이루어지는데, 우편고지와 모바일 고지의 발송 단가에 차이가 있어 모바일 고지 열람률이 증가하면 총 고지 비용이 감소하므로 홍보 강화를 통해 모바일 고지의 열람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재범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제도 운영, 신상정보 고지 제도 운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성범죄 예방 및 홍보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1억 1,600만원 중 57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 활동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6,116	6,116	-	±5	6,116	5,769	-	347	5,403
·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제도 운영	339	339	-	5	344	326	-	18	264
· 신상정보 고지 제도 운영	4,377	4,377	-	-	4,377	4,097	-	280	3,934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172	172	-	-	172	153	-	19	154
·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524	524	-	-	524	524	-	-	-
· 성범죄 예방 및 홍보	704	704	-	-5	699	669	-	30	608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	-	-	-	-	-	-	-	443

자료: 여성가족부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율 제고 필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 운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79]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선고 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의 장 등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것임.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80]에 따라 법원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집행하고 있음.

신상정보 고지는 우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다가 2020년 11월부터 모바일 고지 제도가 도입되어 우편 고지 방식과 모바일 고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에게 네이버와 카카오톡으로 고지문을 발송하고 이 모바일 고지문을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편으로 다시 고지문을 발송하고 있음.

---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신상정보 고지제도 운영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불용액이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급감하였음. 이는 2023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대상 기관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법 개정 전 기존 고지대상 기관은 14만여 개소였으나 법 개정으로 32만여 개소로 증가하였음.[81)]

【 최근 5년간 신상정보 고지 제도 운영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2019년	6,148	6,146	99.9%	2
2020년	5,763	5,737	99.5%	26
2021년	5,630	4,763	84.6%	867
2022년	5,284	3,871	73.3%	1,413
2023년	4,377	4,097	93.6%	280

자료: 여성가족부

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2023년의 경우 우편 고지는 예산현액 40억 5,800만원 중 38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모바일 고지는 예산현액 3억 1,900만원 중 2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신상정보 고지제도 운영 사업 결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 신상정보 고지제도 운영	4,377	4,097	93.6%
- 우편 고지 발송료	4,058	3,814	93.9%
- 모바일 고지 발송료	319	283	88.7%

자료: 여성가족부

최근 4년간 신상정보 고지 건수 및 비용을 살펴보면, 모바일 고지는 2020년 17만건에서 182만 4,000건('21년) → 194만 3,000건('22년) → 247만건('23년)으로 증가한 반면, 우편 고지는 2020년 749만 9,000건에서 563만 3,000건('21년) → 429만건('22년), → 443만 9,000건('23년)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전체 고지 비용도 2020년 57억 5,600만원에서 47억 6,300만원('21년) → 38억 7,100만원('22년) → 40억 9,700만원('23년)[82]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82) 2023년에 우편고지 건수와 고지비용이 다소 증가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대상 기관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법 개정 전 기존 고지대상 기관은 14만여 개소였으나 법 개정으로 32만여 개소로 증가하였음.

【 모바일 고지 이후 연도별 고지 건수 및 비용 】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전체		우편			모바일		
	건수(A)	비용	건수(B)	비용	비율 (B/A)	건수(C)	비용	비율 (C/A)
2020년	7,669	5,756	7,499	5,737	97.8	170	19	2.2
2021년	7,458	4,763	5,633	4,494	75.5	1,824	269	24.5
2022년	6,234	3,871	4,290	3,618	68.8	1,943	253	31.2
2023년	6,909	4,097	4,439	3,814	64.2	2,470	283	35.8

자료: 여성가족부

【 신상정보 고지대상 기관 증가 현황 】

(단위 : 건)

법개정전(2022.10 ~ 2023. 5.)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6,101	15,213	18,329	17,203	15,846	15,581	15,636	13,412
법개정후(2023.10 ~ 2024. 5.)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7,312	44,196	33,205	28,328	22,655	27,849	38,974	35,866

자료: 여성가족부

고지비용 감소에는 고지 대상 성범죄자 수 감소와 아동청소년 세대 수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고지 건수 감소도 영향을 미쳤지만, 주된 이유는 우편 고지 단가(750원)와 모바일 고지 단가(110원)에 차이가 있어 모바일 고지 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비용이 절감되

었기 때문으로 보임.

【 연도별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 현황 및 신규 현황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고지대상자	4,358명	3,992명	3,777명	3,602명	3,563명
신규대상자	882명	706명	653명	595명	585명

자료: 여성가족부

【 연도별 고지단가 】

2020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650원	650원	700원	750원	750원	850원
100원	100원	120원	110원	110원	110원

자료: 여성가족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모바일 고지가 활성화 될수록 신상정보 고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장,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되어 고지 대상기관이 증가하였으므로,

적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고지 열

람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제도는 ‘고지’ 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어,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국구 행정동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함.[83]

공개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정면, 좌·우, 전신),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으로, 고지정보는 공개정보에서 성범죄자의 주소·실거주지 상 상세주소가 포함되는 차이가 있음.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열람 건수를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바, 모바일 고지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83) 성범죄자알림e 어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5,401천여 건(2024. 6월말 기준)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및 성범죄자 알림e 최근 5년간 열람률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모바일 고지 열람율	-	2.2%	24.5%	31.2%	35.8%
성범죄자 알림e 본인인증 건수	1,859건	3,383건	1,702건	1,701건	1,722건

자료: 여성가족부

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기금운용 · 관리주체(법무부)와 사업주체(여성가족부)가 이분화됨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여성가족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권 회복, 기금의 운용 · 관리상 효율성 확보, 여성가족부의 집행 책임성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용 ·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사업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75억 3,700만원 중 367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37	37,537	-	37,537	36,732 [34,708]	-	805	37,354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377	14,377	-	14,377	14,033 [13,382]	-	344	14,181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8,647	18,647	-	18,647	18,222 [17,131]	-	425	19,465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서비스 지원	4,341	4,341	-	4,341	4,338 [4,056]	-	3	3,536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72	-	172	139	-	33	172

자료: 여성가족부

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이관 필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은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일반회계에서 동 사업을 수행해 왔음.

이후 2004년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시행되어 복권기금이 설립되었고[84], 동 사업의 일부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

8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04. 4. 1.] [법률 제7159호, 2004. 1. 29., 제정]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ㆍ장애인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부 칙 <법률 제7159호, 2004. 1. 29.>
제2조(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복권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 복

복 및 재발방지 사업(2004년 기준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의 이름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발전기금에 편성되어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수행되어 왔음.

그런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0. 5. 14. 제정, 2011. 1. 1.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2011년에 설치되면서 동 사업은 201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85]에 편성되어 여성가족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기금운용·관리주체와 사업주체가 이분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첫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동 사업의 계획안 및 결산을 예비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86],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법무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권기금운용계획안 및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하 이 조에서 "복권기금운영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복권기금운영계획안의 경우에는 복권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권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8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86)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국가재정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국가재정법」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사업의 계획안 규모, 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차년도 계획안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여성가족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측면이 있음.

둘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대한 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행하나 동 사업에 대한 심사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수행함에 따라 심사의 중복 등 기금 및 사업의 관리·감독 차원에서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

셋째, 여성가족부가 동 사업을 수행하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운용·관리하지 않으므로 계획안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업 계획안에 정책 현장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할 수 없도록 기금의 용도를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차례 발의된 바 있음.[87]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연구용역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체계 개선방안」(2020년 2월) 추진 시 전문가 인터뷰 및

8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6823,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7.4.28.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8132,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19.1.11.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68,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2020.11.5. 발의)

관계기관 회의 참석을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기획재정부 주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2021년 3월 2일)에서 동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현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사업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2159-432) 사업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었으나[88] 2014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운용·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구(舊) 여성발전기금][89]에 이관·편성되고 있다는 점,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사업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0) 사업도 2021년까지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1137-300) 사업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에 이관·편성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합적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권 회복, 기금의 운용·관리상 효율성 확보, 여성가족부의 집행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운용·관리하는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8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84호, 2010. 5. 14., 제정]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28호, 2010. 12. 14., 제정]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89) 여성발전기금은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용·관리됨

5. 청소년정책관

가. 일반회계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 동 사업은 지원대상 중 9~10세 및 19~24세 연령대의 바우처 신청률이 저조하므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지자체 보조를 통한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바우처시스템 운영 사업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135억 7,400만원에서 전용감액 7억 5,700만원을 뺀 128억 1,700만원으로, 이 중 128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3,574	13,574	-	△757	12,817	12,816	-	1	14,827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 128억 1,300만원 중 108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4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84.3%임.

【 2023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사업수행기관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2,817	12,816	1	12,813	-	12,813	10,809	-	2,004	14,827
· 생리용품 지원	12,488	12,488	-	12,488	-	12,488	10,570	-	1,918	14,488
· 바우처시스템 운영	325	325	-	325	-	325	239	-	86	325
· 사업운영 등	4	3	1		-	-	-	-	-	54

자료: 여성가족부

나)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16년에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11세에서 18세인 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음.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90] 개정(2021. 4. 20. 개정, 2022. 4. 21. 시행)으로 2022년부터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에 속하는 9세부터 24세까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액은 122억 3,200만원으로, 이 중 78억 6,1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4.3%로 저조하였음.

---

9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신규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9~10세 및 19~24세 연령의 여성청소년의 바우처 신청률이 저조하였기 때문임.

【 2020~2022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비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89.3%	90.1%	71.2%

자료: 여성가족부

【 2022년 연령대 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현황 】

구 분	9~10세	11~18세	19~24세	계
신청률	53.2%	93.2%	47.5%	71.2%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은 예산액 131억 8,800만원에서 전용감액 7억원[91]을 뺀 124억 8,800만원으로, 이 중 105억 7,000만원이 실집행되었는 바,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84.6%이며, 당초 예산액(131억 8,8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80.1%임.

91) 2023세계 잼버리 침수재해대책을 위하여 7억원이 전용되었음.

【 2023년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13,188	△700	12,488	12,488	-	12,488	-	12,488	10,570	-	1,918	84.6%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80.1%)이 2022년(64.3%)에 비해 15.8%p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23년부터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단가를 증액(월 12,000원 → 월 13,000원)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도 생리용품 바우처 평균 신청률은 80.1%로, 2022년 대비 8.9%p 증가하였으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중 9~10세의 바우처 신청률은 47.4%, 19~24세의 바우처 신청률은 72.3%로 아직까지는 평균 신청률(80.1%)을 하회하고 있고, 기존 지원대상자(11세~18세)의 신청률(92.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가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연령대 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률 현황 】

(단위: 명)

구 분	9~10세	11~18세	19~24세	계
계획인원	21,843	122,766	93,209	237,818
지원인원	10,349	112,894	67,360	190,603
신청률	**47.4%**	**92.0%**	**72.3%**	**80.1%**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동 사업의 지원기간은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가 생성되는 구조임. 예컨대 1월 신청자는 12개월분의 지원을 받게 되나, 12월 신청자는 1개월분의 지원을 받게 됨. 따라서 신청이 늦어져 연중 바우처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3~2024년(4월말 기준) 월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현황 】

구 분	누적 신청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69.0	70.4	73.2	74.1	75.0	75.9	76.7	77.5	78.3	78.9	79.5	80.1
2024년	77.9	78.9	80.1	80.9	-	-	-	-	-	-	-	-

자료: 여성가족부

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건립 사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이월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실시설계비를 이월하고,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일부를 집행하였는 바, 「국가재정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이월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현재 건립 사업이 완료된 대구 청소년디딤센터의 성과지표만 남아 있으므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공사 진척도 등과 관련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현행 성과지표를 개선 ·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은 지방에 거주하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치유기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①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②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및 ③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92]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27억원에서 전용감액 14억원을 뺀 13억원으로, 이 중 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92)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10억원이 편성되었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14.9%이며, 당초 예산액(27억원) 대비 집행률은 7.2%로 매우 저조함.

【 2023년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2,700	2,700	-	△1,400[93]	1,300	194	1,082	24	3,691
·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1,700	1,700	-	△700	1,000	185	791	24	600
·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1,000	1,000	-	△700	300	9	291	-	2,091
·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	-	-	-	-	-	-	-	1,000

자료: 여성가족부

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 저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사업기간은 5년(2023~2027)[94], 총사업비는 213억원임.

93) 2023 세계잼버리 아영장 침수대책 예산 긴급 지원을 위해 실시설계비(420-02) 예산 11억원 전용(2023. 6.21.),
잼버리 참가자 폭염 대비 물품 긴급 지원을 위해 기본조사설계비(420-01) 예산 3억원 전용(2023. 8.4.)
94)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2년부터 편성되었음.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개요 】

구 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총사업비	213억원(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사업기간	2023년~2027년(예정)
사업규모	부지면적 27,536.6㎡, 건축연면적 4,150㎡, 3층이내
설립목적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9~18세)
주요시설	치료실, 상담실, 대안교실, 생활동, 체육관 등
프로그램	「치료+보호+교육+자립」 종합적·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동 사업은 국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본조사설계비 3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 5억 2,500만원 등 총 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95] 교부액 8억 7,500만원 중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5,5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이 2.3%에 불과하였음.

또한, 202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17억원에서 전용감액 7억원[96]을 뺀 10억원으로, 이 중 1억 8,500만원을 집

9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의견 반영
96) 2023세계 잼버리 침수재해 및 폭염 대책을 위하여 7억원이 전용감 되었음. 잼버리 침수재해 대책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6억원(2023. 6.21.)을, 잼버리 폭염대책을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2023. 8.4.)을 전용감하였음.

행하고, 7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00만원은 불용되었음. 실집행률은 18.5%이며, 당초 예산액(17억원) 대비 실집행률은 10.8%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2022~2023년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다음 연도 예산액
2022	계	875	-	-	875	20	-	855	1,700
	건설 보상비	-	-	-	-	-	-	-	500
	기본조사 설계비	350	-	-	350	20	-	330	480
	실시 설계비	525	-	-	525		-	525	720
2023	계	1,700	-	△700	1,000	185	791	24	600
	건설 보상비	500	-	-	500	-	500	-	-
	기본조사 설계비	480	-	△100	380	185	171	24	-
	실시 설계비	720	-	△600	120	-	120	-	600

자료: 여성가족부

실집행률이 2년 연속 저조한 이유는 센터 건립 지역(전북 익산시)이 2022년 하반기인 8월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전북 익산시,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준비 등 사업추진 절차가 단계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일 정	추진 현황
2022. 9. ~ 2022. 1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3. 2.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3. 4.	시설공사 일괄대행 업무협약 체결(조달청)
2023. 4.	토지보상 업무협약 체결(익산시)
2023. 7. ~ 2023. 10	설계공모(7.26.) 및 심사·선정(10.16.)
2023. 10.	계획설계 실시
2024. 4	계획설계 완료
2024. 4	중간설계 실시
2024. 6	중간설계 완료
2024. 6. ~ 2024. 12.	실시설계 추진
2024. 6 ~ 9.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2024. 9 ~ 11.	총사업비 조정 협의
2025. 4.	실시설계 완료
2025. 5.	착공
2027. 6.	준공

여성가족부는 2023년 2월 건립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97]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98]에 따라

9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9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 공사등의 시공관리

설계공모, 시공관리 등 공사 계약 등에 관한 업무는 조달청에 일괄대행 위탁 방식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등 절차에 관하여는 전북 익산시가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당초 여성가족부는 2023년 5월까지 설계공모를 마치고 기본조사설계인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23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에 필요한 절차 등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설계가 2023년 10월 이후에 착수되어 2024년 6월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99]

또한, 2024년 6월말 현재 중간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고, 여성가족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00]에 따라 실시설계는 중간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2024년 11월 예정) 전까지 착수할 수 없으므로, 2024년 예산으로 편성된 실시설계비 6억원도 일정 부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101]

라. 공사등의 사후관리
마.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99) 여성가족부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과업지시서, 설계공모지침서 등의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은 관련 자료 검토후 설계공모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예상보다 그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본조사설계를 연내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설계용역비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2023년 10월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기본조사설계를 위한 기간을 180일(6개월)로, 실시설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330일(11개월)로 설정하였는바, 당초 계획대로 2023년 6월에 기본조사설계를 시작하였더라도 설계용역비의 일부는 이월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임.

100)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15)」
(2) 실시설계 착수 시점
◦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 후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착수한다.

101)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함.

여성가족부는 전라북도 익산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작성,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군·구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등)가 지연되어 2024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및 토지보상비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함.[102]

대규모 건립 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 발생 이후 대외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월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연례적인 이월의 반복은 「국가재정법」 제3조[103]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등 예산의 점증성을 가중시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임.

따라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더는 건립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동 건립사업의 설계용역은 기본조사설계(계획설계 →

102) 전북 익산시는 2023년 4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립부지 내 토지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2023년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토지 감정평가(사유지 중 전(田) 7필지, 묘지(墓地) 2필지)를 마친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연도 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 일정도 2024년 4월 이후로 지연되었고, 2024년 6월말 현재 사유지 중 전(田) 7필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묘지(墓地) 2필지에 대하여는 보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임.

10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중간설계)→실시설계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여성가족부는 설계용역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하고 각 설계단계별로 차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음.

여성가족부는 2023년 10월 설계용역을 8억 3,300만원으로 총액계약(착수일로부터 300일)한 후 1차수에는 3억 5,200만원으로 기본조사설계 계약(2023.10~2024. 6.)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11월에 기본조사설계비 1억 7,6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1억 7,600만원(기본조사설계비 5,6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음.

또한, 2023년 11월에 기본조사설계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6,900만원)과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4,600만원) 계약을 체결(2023.11.~2024. 9.)하고, 이를 사유로 기본조사설계비 1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음.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용역 계약 현황 】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예산과목	선금 지급액	잔금 이월액
설계용역 1차 (기본조사설계)	352	2023. 10.17. ~ 2024. 4.13.	기본조사설계비(420-01)	176	56
			실시설계비(420-02)	-	120
			소계	176	17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69	2023. 11.23. ~ 2024. 9.17.	기본조사설계비(420-01)	-	69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46	2023. 11.23. ~ 2024. 9.17.	기본조사설계비(420-01)	-	46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실시설계는 중간설계(기본조사설계비) 완료전까지 착수할 수 없다는 점과 기본조사설계비(420-01)와 실시설계비(420-02)는 예산 비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용역 1차수(기본조사설계) 계약체결을 실시설계비를 이월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로 보기는 어려운바,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104]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음.

- 2024년 6월 기본조사설계가 완료된 후 기본조사설계비 이월액 5,600만원과 실시설계비 이월액 1억 2,000만원으로 용역비 잔금 1억 7,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향후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이월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신규 성과지표 마련 필요

현재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202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경상권) 공사 진척도(%)

---

104)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로 설정되어 있음.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2020 ~ 2024년도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경상권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공사 진척도(%)	목표	신규	100	-	-	-	해당없음	공정률= (누적투자액/ 총사업비)×100	예산집행실적
	실적	신규	100	-	-	-			
	달성도	신규	100	-	-	-			

그런데, 국립 대구 청소년디딤센터의 경우 2021년 10월에 센터 건립을 완공함에 따라 2022년부터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지역 균형적 측면에서 호남권 지역센터 추가 설립 필요성에 따라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현재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2022년 신규 편성) 및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이 진행 중임.[105]

105)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익산시 2개 지역을 후보지로 하여 건립 설계비(국비 8억 7,500만원)가 반영되었음.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비교 】

구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	전북 익산	광주광역시
총사업비	213억원	229억원
건립기간	2023년~2027년(예정)	
추진현황	◦2022년 8월 건립지역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및 건립지역 선정 ◦2022년 9월~11월 기초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2023년 2월 건립예산 총사업비 확정(213억원/기재부) ◦2023년 10월 ~ 설계용역 착수	◦2023년 3월~5월 기초연구 ◦20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 ◦2023년 6월 건립예산 총사업비 확정(229억원/기재부) ◦2023년 12월 ~ 설계용역 착수

자료: 여성가족부

호남권 지역센터 건립 사업 2건 모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며, 2027년 완공 예정에 따라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여성가족부는 향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및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공사 진척도 등과 관련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각 내역사업 별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3)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비는 이월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월하였고, 이월된 실시설계비로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일부를 집행하였는 바, 「국가재정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이월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건립한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및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 대한 ①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사업과 ②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③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등 특성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신규건립 추진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80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2억 1,000만원을 더하고, 전용감액 2억 9,800만원을 뺀 150억 800만원으로, 이 중 14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8,096	8,096	7,210	△298[106]	15,008	14,194	-	814	9,745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영덕, 김제센터)	7,616	7,616	-	182	7,798	7,798	-	-	7,938
· 국립청소년진로직업 체험수련원 건립	480	480	370	△480	370	370	-	-	1,807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	-	6,840	-	6,840	6,026	-	814	-

자료: 여성가족부

나)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부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기반한 심층적인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4억 8,000만원을 전액 전용감하여 전년도 이월액 3억 7,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106) 2023 세계잼버리 아영장 침수대책 예산 긴급 지원을 위한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사업 건설보상비(410-00), 공사비(420-03), 시설부대비(420-05) 등 4억 8,000만원 전용(2023. 6.21.) 감액한 예산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가 소요액 발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영덕, 김제센터) 임차료 (210-07) 1억 8,200만원 전용(2023. 8.4.) 증액한 예산의 합계임.

【 2023년도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2024년 예산액
계	480	370	△480	370	370	-	-	1,807
건설보상비	300	-	△300	-	-	-	-	827
기본조사설계비	-	-	-	-	-	-	-	302
실시설계비	-	370	-	370	370	-	-	671
공사비	179		△179			-	-	-
시설부대비	1		△1			-	-	7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2014. 5.~2017. 3.)와 여성가족부 타당성조사(2018. 3.~9.)를 거쳐 사업기본계획을 고시(2021. 4. 16.)하였으며, 2025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27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될 예정임.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개요 】

구 분	주 요 내 용
위 치	대구 동구 괴전동 1번지 일원
총사업비	402억 7,100만원
사업기간	2021 ~ 2027
사업규모	부지 86,921㎡, 연면적 10,713㎡
사업목적	청소년의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균형 잡힌 직업관 형성에 기여
주요시설	본관, 청소년 직업체험관, 실내체육관, 생활관, 수련의 숲 등
주 요 프로그램	진로탐색, 보건·의료, 문화·예술, 미래 직업체험, 지역네트워크 현장체험 등

동 사업은 2021년 첫 시행 이후 2023년까지 편성된 예산총액 24억 3,500만원 중 실집행액이 8억 4,900만원(실집행률 34.9%)으로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상황임.

【 2022~2023년도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다음연도 예산액
2021	**계**	**500**	**-**	**-**	**500**	**361**	**139**	**-**	**1,455**
	기본조사 설계비	500	-	-	500	361	139	-	1,455
2022	**계**	**1,455**	**139**	**△1,041**	**553**	**118**	**370**	**65**	**480**
	건설보상비	-	-	-	-	-	-	-	300
	기본조사 설계비	-	139	-	139	112	-	27	-
	실시설계비	1,441	-	△1,041	400	-	370	30	-
	공사비	-	-	-	-	-	-	-	179
	시설부대비	14	-	-	14	6	-	8	1
2023	**계**	**480**	**370**	**△480**	**370**	**370**	**-**	**-**	**1,807**
	건설보상비	300	-	△300	-	-	-	-	827
	기본조사 설계비	-	-	-	-	-	-	-	302
	실시설계비	-	370	-	370	370	-	-	671
	공사비	179		△179	-	-	-	-	-
	시설부대비	1		△1	-	-	-	-	7
총 계		**2,435**	**509**	**△1,521**	**1,423**	**849**	**509**	**65**	

자료: 여성가족부

연도별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10월 설계용역〔설계절차: 기본조사설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계획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예산액 5억원 중 3억 6,100만원(실집행률 72.2%)을 집행하고, 1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2년도에는 관계 부처 간 업무협의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액 14억 5,500만원 중 10억 4,100만원을 감액조정[107]한 예산현액 5억 5,300만원 중 1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7,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에는 예산액 4억 8,000만원을 전액 전용감[108]하였고, 실시설계비 전년도 이월액 3억 7,0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음.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수련원 건립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변경 계획수립을 위한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기간(2022년 1월～11월)이 길어짐에 따라 설계용역이 중단되면서 2022년 6월 완료 예정이었던 기본설계가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등 건립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여성가족부는 당초 동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 변

107) 8,000만원은 전용(420-02 → 210-07), 10억 600만원은 세목조정(420-02 → 420-03)
108) 2023년 세계 잼버리 침수재해대책을 위한 전용(2023. 6.21.) 감액한 예산 3억 100만원 및 국고채 수익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가 소용액 발생에 따른 전용(2023. 11.8.) 감액한 예산 1억 7,900만원에 따른 것임.

경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해제 요건 검토, 부지 규모 조정 등에 예상치 못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임.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연도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일 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14. 5. 3 ~ 2017. 3.	예비타당성 조사
2018. 4. ~ 2018. 9.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1. 6. ~ 2021. 9.	설계 공모
2021. 10.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022. 1. ~ 2022. 11.	개발제한구역 업무협의(국토교통부)
2022. 12.	계획설계 완료
2023. 12.	중간설계 완료
2024. 4.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대구시)
2024. 4. ~ 2024. 12.	실시설계 추진
2024. 7. ~ 2024. 10.	중간설계 적정성·경제성 검토
2024. 10. ~ 2024. 12.	총사업비 조정 협의
2025. 1. ~ 202. 3.	실시설계 완료
2025. 5.	착공
2027. 10.	준공

자료 : 여성가족부

그런데, 2023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협의가 계속되어 기본조사설계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2022년말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을 전제로 건설보상비 및 공사비 등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결과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 감액하였는바, 이는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4년에도 건설보상비 8억 2,700만원, 실시설계비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 7월 현재 중간설계 완료에 따른 적정성·경제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된 상황이며,[109]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올해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2024년에도 실시설계비 예산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으로, 여성가족부는 계획설계(기본조사설계)가 완료된 2022년 12월에 중간설계(기본조사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실시설계비 3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3년 12월에 완료된 중간설계(기본조사설계) 용역비를 전년도 실시설계비 이월액인 3억 7,000만원으로 집행하였음.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109)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16)
(2) 실시설계 착수 시점
◦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 후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착수한다.

지침」[110]은 중간설계를 기본조사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간설계 계약체결을 실시설계비를 이월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로 보기는 어려운바, 전년도 실시설계비(420-02)를 이월하고 이월액으로 중간설계비(420-01)를 지급한 것은「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111]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향후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지침 등에 위반되는 예산의 이월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10)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52)」 건축분야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

111)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청소년활동 지원(2254-541)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은 수련시설 참여인원을 과도하게 추계하여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하였는 바, 사업 집행관리가 미흡했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 수행 시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회에서 심의 · 확정한 방향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활동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역량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②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③ 청소년동아리 지원 ④ 지역특화형 청소년 꿈누리센터 설립, ⑤ 청소년수련시설 재해복구비 지원, ⑥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등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은 2023년도에 종료된 사업임.

2023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8억 2,200만원 중 3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청소년활동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소년활동 지원	3,825	3,825	-	△3	3,822	3,775	-	47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교부액 37억 4,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6억 8,000만원을 더한 104억 2,800만원으로, 이 중 67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1,0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64.4%에 불과함.

【 2023년도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 사업수행기관 결산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청소년활동 지원	3,822	3,775	47	3,748	6,680	10,428	6,718	-	3,710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889	882	7	882	-	882	869	-	13
·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1,512	1,512	-	1,512	-	1,512	1,470	-	42
· 청소년동아리 지원	1,250	1,250	-	1,250	-	1,250	1,213		37
· 청소년활동 운영지원단 지원	104	104	-	104	-	104	97	-	7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	-	-	-	6,680	6,680	3,069	-	3,611
· 경상경비	67	27	40	-	-	-	-	-	-

자료: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실집행 저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은 2022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청소년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지속적인 감소(2019년 390만명 → 2020년 110만명 → 2021년 100만명)는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여 2018년 12월말까지 207개소였던 민간시설이 2021년 12월말에는 120개소가 휴·폐업(휴업 83개소, 폐업 37개소)한 것으로 나타남.[11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감 증가[113] 및 신체활동 축소[114]로 인하여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 정점이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정부차원의 일상회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수련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에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112) 출처: 여성가족부(청소년수련시설현황)
113)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상담 건수 2.5배 증가('20년 14,517건→'21년 36,484건),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년)
114) 청소년 비만율 3.5%p 증가(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 9.7% → '21년 13.5%) 및 과체중률 0.8%p 증가(코로나19 이전 5년 평균 9.1% → '21년 9.9%),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2022. 4.)

【 2022년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주최/주관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원대상시설	민간수련시설 189개소(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사업예산	76억원(38만명×20,000원)
사업기간	사업승인일 ~ 2022. 12.
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지원방식	단체수련활동 참여시 1인당 최대 2만원 (2박3일: 2만원, 1박2일: 1만원, 당일 및 학교 방문형: 5천원)
운영방식	참가대상 청소년에 단체수련활동 제공한 민간수련시설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민간수련시설 170개소에 공공수련시설 중 자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을 받지 않은 시설 19개소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2022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73억 9,100만원 중 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66억 8,000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이 9.6%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2023년에도 실집행률이 45.9%(예산현액 66억 8,000만원, 실집행액 30억 6,900만원)로 여전히 저조하였음.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년	7,600	-	△204	7,391	711	6,680	-
2023년	-	6,680	-	6,680	3,069	-	3,611

주) 전용(320-01→330-03) 2억 400만원은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자체(경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재해복구비 국비지원에 따른 것임.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① 사업 기본방향 수립, ② 민간수련시설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 ③ 사업계획 승인, ④ 사업참여기관 선정, ⑤ 수련활동 제공 및 지원금 지급, ⑥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음.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일 정	추진 현황
2022.1 ~ 2022.3	사업 기본방향 수립
2022.4 ~ 2022.5	민간수련시설 현장의견 수렴 회의(2회) 설문조사 실시(6일간)
2022.5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2022.5 ~ 2022.6	지원대상 시설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참여기관 모집 및 선정 사업홈페이지 개설(시설 정보, 지원 안내 등)
2022.7 ~ 2022.11	사업홈페이지 내 예약정보 등록 학교단체 수련활동 제공 및 지원금 지급
2022.12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 이월 승인 통보
2023.1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2023.3.	참여기관 1차 추가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 사업홈페이지 보완(시설 정보, 지원 안내 등)
2023.3 ~ 2023.11.	사업홈페이지 내 예약정보 등록 학교단체 수련활동 제공 및 지원금 지급
2023.5. ~ 2023.10.	사업 홍보추진(시도교육청 공문, 청소년박람회 등)
2023.6.	참여기관 2차 추가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
2023.8. ~ 2023.9.	실무회의(1회), 현장의견 수렴(온라인 조사) 사업계획 변경보고 및 승인
2023.12.	회계검증 및 종합결과 보고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2년 연속 저조했던 이유는 지원대상인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참여율이 저조하였고, 당초 계획한 초·중·고 학생의 수련 활동률을 과도하게 추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부는 지원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초·중·고 학생의 수련시설 참여인원을 38만명으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민간수련시설(197개소)[115]을 이용한 229만 8,361명(연인원)을 실인원으로 환산[116]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민간수련시설 운영 및 학교의 청소년수련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이를 다시 실인원의 절반으로 축소하여 추정한 것임.

【 2022년도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예산 산출 내역 】

▪ 380,000명(2,298,361명÷3일×50%(6개월분))×20,000원 = 76억원(신규)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 추진방식에 대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지원사업[117]을 벤치마킹하고, 청소년 또는 학교에 지급하는 방식 등의 검토를 거쳐 민간수련시설의 운영형태[118]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활동비 일부를 수련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설명임.

115) 민간수련시설수: 2019년 말 197개소 → 2021년 말 170개소(27개소 감소)
116) 여성가족부는 일반적으로 수련활동이 2박 3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인원을 연인원÷3으로 추계하였음.
117) ① (국민체육진흥공단) 실내 민간체육시설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1타3만'
② (한국관광공사) 대국민 숙박할인쿠폰지원사업 '대한민국 숙박대전'
두 사업 모두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118) 민간수련시설은 주로 학교·단체의 숙박형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통상 2박 3일)시 숙박시설로 이용됨.

동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189개 민간수련시설 중 61개 시설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수련활동을 운영한 시설은 약 17%인 32개 시설에 불과하였고, 2023년에도 지원대상 189개 시설 중 59개 시설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나 약 25.9%인 49개 시설만 운영하는 등 실제로 참여한 시설 수는 여전히 저조하였음.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참여시설 현황 】

구 분	지원가능 시설 수	신청시설 수	참여시설 수
2022년	189개소	61개소	32개소
2023년	189개소	59개소	49개소

2022년 수련활동에 참여한 학교는 391개(전국 초·중·고 11,794개교[119]의 3.3%)에 불과하였고, 참여 청소년 수도 50,651명으로 당초 계획인원인 38만명의 약 13.3%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2023년에도 1,248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계획인원 38만명의 약 46.9%인 178,262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여전히 높지 않은 편임.

119) <2022년 전국 초중고 현황> (출처: 2022년 교육기본통계)

(단위 : 개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교수	6,163	3,258	2,373	11,794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참여 학교 및 청소년 현황 】

구 분	참여학교 수	참여 청소년 수(실인원)
2022년	391개소	50,651명
2023년	1,248개소	178,262명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일선 학교의 수련활동이 2022년 하반기부터 재개되어 사업기간이 짧았고, 운영중지 중인 민간수련시설의 시설물 정비 및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며, 2023년에는 민간수련시설의 참여 증대를 위하여 연 2회 모집(2월, 6월) 하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협조를 통하여 동 사업의 홍보[120]를 강화하였다는 설명임.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청소년수련시설 대부분이 장기간 미운영이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수련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유시설의 점검 및 개보수, 수련 운영을 위한 직원 충원, 체험 장비 보완 및 프로그램 마련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예측이 어려워 일선 학교의 수련활동이

120) 시·도교육청 홍보문 공문 발송, 청소년박람회 사업소개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참여기관 대상 사업 안내 홍보자료(이메일, 카드뉴스 등) 발송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당초 사업 계획시 초·중·고 학생의 수련시설 참여인원(실인원, 연 38만명)을 과도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음.[121]

또한 동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가 2박 3일간의 수련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실인원) 2만원의 수련활동비를 운영 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2023년 실제수련활동 기간은 2박 3일(27,176명) 외에 당일형(11,043명, 1인당 5천원 지원)과 1박 2일(12,432명, 1인당 1만원 지원)이 혼재되어 있어 계획했던 예상 집행률보다 실제 집행률이 더욱 낮아지는 요인이 되었고, 2022년 보다 동 사업 홍보를 강화하였음에도 집행실적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현황 】

구 분	참여학교 수	참여 청소년 수(실인원)
당일형	92개소	9,481명
1박2일	382개소	40,882명
2박3일	774개소	127,899명
합 계	**1,248개소**	**178,262명**

121) 여성가족부는 당초 초·중·고 학생의 수련시설 참여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연간 참여인원(실인원)을 38만명(코로나19 이전 연간참여인원의 1/2 수준)으로 계획한 후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실제 참여기간은 2022년 5개월(2022. 7.~11.), 2023년 9개월(2023. 3.~11.)로 차이가 있음.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 만큼 여성가족부는 사업 집행관리가 미흡했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 수행 시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방향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2254-542)

○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은 행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매년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였고, 행사 당해연도인 2023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 배정이 있었는바, 행사 준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및 전라북도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은 국가 간 교류, 해외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청소년 글로벌 역량 증진 및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① 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② 스카우트 활동지원, ③ 2023 세계잼버리 지원 ④ 경상경비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은 2023년도에 종료된 사업임.

2023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128억 2,500만원에 전용증액 29억 5,800만원과 예비비 151억 7,700만원을 더한 309억 6,000만원으로, 이 중 308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12,825	12,825	-	2,958	15,177	30,960	30,877	-	83
·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2,914	2,914	-	-	-	2,914	2,914	-	-
· 스카우트 활동지원	271	271	-	-	-	271	271	-	-
· 2023 세계잼버리 지원	9,513	9,513	-	2,958	15,177	27,648	27,611	-	37
· 경상경비	127	127	-	-	-	127	81		46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수행기관은 교부액 307억 9,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62억 9,600만원 중 309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53억 2,8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85.3%임.

【 2023년도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30,960	30,877	83	30,796	5,500	36,296	30,968	-	5,328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2,914	2,914	-	2,914	-	2,914	2,775	-	139
· 스카우트 활동지원	271	271	-	271	-	271	261	-	10
· 2023 세계잼버리 지원	27,648	27,611	37	27,611	5,500	33,111	27,932	-	5,179
· 경상경비	127	81	46	-	-	-	-	-	-

자료: 여성가족부

나)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추진 점검 및 집행 관리 미흡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2023 세계잼버리 지원'은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홍보 지원 및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임.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요 】

기 간	2023. 8. 1 ~ 8. 12 (12일간)
장 소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 일원
참가규모	156개국 42,646명(국외 38,770명, 국내 3,876명)
행사내용	개영식, 과정활동(영지 내·외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폐영식 등

자료: 여성가족부

세계잼버리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인 야영대회로 수만 명의 세계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우호 증진의 기회를 갖게 되는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 활동이며, 우리나라에서 세계잼버리가 개최된 것은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이후 두 번째임.

동 사업은 2017년 유치가 결정되고, 2018년도 예산 편성시 사업기간 5년(2018~2023년), 총사업비 491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2020년 11월 총사업비 계획 변경을 통해 846억 1,1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후 예산 증액을 통하여 최종 총사업비는 1,389억원 2,000만

원(국비 556억 9,700만원, 지방비 400억 2,600만원, 자체수입 43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연도별 총사업비 변경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사업비	49,100	84,611	93,936	108,244	138,920
국비	5,430	21,674	23,717	28,217	55,697
지방비	12,670	27,688	30,011	39,819	40,026
자체수입	31,000	35,269	40,208	40,208	43,197

주: 2019~2022년은 계획된 총사업비(2020.11월 계획변경 승인 이후는 증액 편성된 예산을 합산 산출), 2023년은 편성된 총사업비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2023년도 본예산은 95억 1,300만원이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29억 5,800만원[122]을 전용증액하고, 예비비 151억 7,700만원[123]이 배정되어 예산현액은 276억 4,800만원임.

여성가족부는 예산현액 중 276억 1,100만원을 교부하였고, 사업수행기관(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라북도)은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

122) 전용증액 내역
- 민간경상보조 9억 1,600만원 : 잼버리 참가자에게 폭염 대비 물품 긴급지원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2237-37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2237-372)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전용(2023. 8.4)한 금액임.
- 자치단체자본보조 20억 4,200만원 : 잼버리 야영장 침수대책 예산 긴급 지원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등 3개 세부사업에서 전용(2023. 6.21.)한 금액임.

123) 예비비 내역
- 민간경상보조 69억 50만원 : 잼버리 행사의 안전한 운영과 폭염 피해 등을 긴급히 예방·지원하기 위하여 폭염대비 물품, 의료물자 보급 등 긴급 지원 필요성에 따른 것임.
- 자치단체경상보조 82억 7,650만원 :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한 잼버리 참가자 비상대피 후 8개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체류 및 프로그램 등 지원 필요성에 따른 것임.

액 55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31억 1,100만원 중 279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7,9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84.4%임.

【 2023년도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불용액
계	27,648	27,611	37	27,611	5,500	33,111	27,932	5,179
민간경상보조 (320-01)	12,194	12,194	-	12,194	57	12,251	7,484	4,767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8,277	8,239	37	8,239	-	8,239	8,107	132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7,178	7,178	-	7,178	5,443	12,621	12,342	279

자료: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별 집행 현황을 보면,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예산현액 122억 5,100만원 중 74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 6,7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61.1%이며, 전라북도는 예산현액 126억 2,100만원 중 123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9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97.8%임.

마지막으로 태풍 카눈으로 인한 잼버리 참가자 비상대피 후 지자체 체류 및 프로그램 비용 보전을 위하여 2차 예비비로 편성한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현액 82억 3,900만원 중 8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98.4%임.

【 2023년도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사업수행기관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이·전용 등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100)
계		9,513	2,958	15,177	5,500	33,111	27,932	84.4
잼버리 조직위원회	민간경상보조(320-01)	4,377	916	6,901	57	12,251	7,484	61.1
8개 시·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8,277	-	8,239	8,107	98.4
전라북도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136	2,042	-	5,443	12,621	12,342	97.8

주) 백만원 단위 반올림에 따라 예비비 총액과 예비비 각 내역별 합계 수치 간에 차이가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124]을 받아왔는데, 특히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조성을 위하여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의 경우 공사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어 2022년 연말까지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였음.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전라북도에 착공 첫해인 2020년 기반시설 설치비 1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총사업비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전액 이월되었음.

2021년에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39억 7,6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공사 착공 전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및 토지매입 등 사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총 36억 6,200만원이 이월되어 실

124)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21. 9.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22. 8.
「2023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22. 11.

집행률은 26.4%(예산현액 49억 7,600만원 중 13억 1,400만원 집행)로 매우 저조하였음.

2022년에도 잼버리 행사 개최를 위한 상·하수도, 야영장, 대집회장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준공 일정이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총 54억 4,3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58.3%(예산현액 130억 6,600만원 중 76억 2,300만원 집행)로 저조하였음.

잼버리 개최가 2달도 남지 않은 2023년 6말까지도 2023년 기반시설 설치비 예산현액 126억 2,200만원 중 40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32.1%로 여전히 저조하였음.

【 2023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연도별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 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다음년도 이월액
2020	**계**	**1,000**	**-**	**-**	**1,000**	**-**	**-**	**1,000**
	기반시설	1,000	-	-	1,000	-	-	1,000
	대집회장	-	-	-	-	-	-	-
	야영장	-	-	-	-	-	-	-
	과정활동장	-	-	-	-	-	-	-
2021	**계**	**3,976**	**1,000**	**-**	**4,976**	**1,314**	**-**	**3,662**
	기반시설	1,776	1,000	-	2,776	1,105	-	1,671
	대집회장	750	-	-	750	-	-	750
	야영장	1,450	-	-	1,450	209	-	1,241
	과정활동장	-	-	-	-	-	-	-
2022	**계**	**9,404**	**3,662**	**-**	**13,066**	**7,623**	**-**	**5,443**
	기반시설	5,321	1,671	-	6,992	3,816	-	3,176
	대집회장	750	750	-	1,500	779	-	721
	야영장	1,824	1,241	-	3,065	2,677	-	388
	과정활동장	1,509	-	-	1,509	351	-	1,158
2023 (6월말 기준)	**계**	**5,136**	**5,443**	**2,042**	**12,622**	**4,046**	**-**	**-**
	기반시설	2,174	3,176	1,500	6,850	2,572	-	-
	대집회장	-	721	-	721	109	-	-
	야영장	2,653	388	542	3,583	417	-	-
	과정활동장	309	1,158	-	1,468	948	-	-

자료: 여성가족부

【 2023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기반시설	대집회장	야영장	직소천 과정활동장
사업비 (국비)	10,271	1,500	5,926	1,819
추진 주체	전라북도	전라북도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사업 내용	상수도, 하수도, 주차장, 임시하수처리시설, 그늘시설 등	야외무대, 잔디광장, 배수시설 등	샤워장, 화장실, 급수대, 분리수거시설 등	수상교육장, 수변테크, 부유식수영장 등
착공일	2021. 12.	2022. 5.	2022. 12.	2022. 10.
준공일	2023. 11.	2023. 10.	2023. 8.	2023. 7.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3년 6월 잼버리 야영장 침수대책 긴급지원을 위해 3개 세부사업으로부터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20억 4,200만원(기반시설 15억원, 야영장 5억 4,200만원)을 전용 증액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자치단체자본보조 전용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보조사업자	전용일자	전용액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기반시설	전라북도	6. 21.	1,500	1,500	1,500	100.0
야영장	전라북도 → 조직위원회	6. 21.	542	542	542	100.0
계			2,042	2,042	2,042	100.0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23년 5월 전북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잼버리 현장의 부실한 배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전용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함.

잼버리 기반시설 사업은 상·하수도, 임시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것이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면 배수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비책 마련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잼버리 기반시설 실집행률이 2023년 6월말까지 32.1%에 머물고 있는 등 그 설치가 행사 개최연도까지도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배수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여성가족부가 잼버리 주무부처로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2023년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21억 9,400만원 중 74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61.0%로 높지 않은 편인데, 이는 1차 예비비 배정(2023. 8. 4.)을 통한 증액분인 예산 69억 100만원의 실집행률이 33.2%로 저조하였기 때문임.

【 2023년도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교부액(A)	실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 (B/A*100)
본예산	4,377	4,377	4,328	49	98.9
전용	916	916	816	100	89.1
예비비	6,901	6,901	2,294	4,606	33.2
계	**12,194**	**12,194**	**7,438**	**4,655**	**61.0**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잼버리 행사의 안전한 운영과 폭염 피해 등을 긴급히 예방·지원하기 위하여 폭염대비 물품, 의료물자 보급 등 지급에 따른 78억 1,700만원(전용+예비비)을 추가로 보조하였으나,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한 긴급 대피로 잼버리 행사일정이 조정되어 새만금에서의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함.

2023년 8월 4일 추가 배정한 예비비를 8월 7일 조직위원회에 전액 교부하였는데, 2023 세계잼버리 기간 중 발생한 태풍 카눈과 같은 천재지변은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비비의 69.8%가 집행되지 못한 것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125]에 따라 예측할 수

125)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 즉,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예측불가능성),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급박하며(시급성, 긴급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비임.[126]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건강, 위생 등 잼버리 행사의 안전한 운영과 폭염 피해 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폭염대비 물품, 의료물자 보급 등 지급에 따른 예비비 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1차 예비비 신청서에 따른 세부내역을 보면 청소기 구입, 참가자 급식·간식 추가 제공, 조명 추가 등 행사 운영 관련 지원으로 보이는 내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126) 국회예산정책처,「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p.201.

【 1차 예비비 신청서상 세부내역별 산출근거 및 집행내역 】

연번	추가지원 필요내역	산출내역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1	전기공급 용량 증설(비상발전기 추가)	633	292
2	샤워장 배수로 정비(추가인건비, 유지보수비)	50	21
3	의료물자 추가보급(물품, 약품)	360	-
4	클리닉 운영 시간 연장(24시간 운영)에 따른 비용 추가 (전기, 수도, 청소, 인건비)	596	11
5	냉동생수(1일 10만병), 얼음, 아이스크림	1,800	-
6	청소도구 추가 구입	20	13
7	운영요원식당 진공청소기 50대 구입	25	11
8	참가자 급식량 확대, 간식 추가 제공	2,250	200
9	할랄음식 적기 지원을 위한 차량	51	22
10	쓰레기 수거	50	16
11	8월6일 k-pop공연 관련 안전조치를 위한 조명 확대	300	872
12	가로 조명 추가	450	399
13	파레트(텐트받침) 추가	91	88
14	냉장냉동 탑차(얼음 등 수송용)	225	-
15	잼버리 참가자의 수송비 및 숙박비[127]	-	349
합 계		6,901	2,294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할 예산의 일부를 예비비에 포함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사전에 잼버리 행사 운영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127) 예비비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태풍 비상대피에 따른 잼버리 참가자의 수송비 및 숙식비 등 집행액 3억 4,900만원이 추가 발생함.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8]에 따라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정 예비비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종합해 보면, 2023 세계잼버리 행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매년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였고, 행사 당해 연도인 2023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 배정이 있었는바, 행사 준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및 전라북도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부는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129]

---

128)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142)
15. 예비비 예산
17-2. 세부지침
가. 예비비의 요구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29)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감사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함.

나. 청소년육성기금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254-432)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사업의 지역별 집행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위기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생활보호를 제공하는 ① 청소년쉼터, ② 청소년자립지원관, ③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의 운영과 ④ 청소년 복지시설 내실화, 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⑥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현액 295억 600만원 중 292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29,506	29,506	-	29,506	29,291	-	215	30,855
· 청소년쉼터	25,290	25,085	-	25,085	25,085	-	205	26,232
· 청소년자립지원관	1,766	1,766	-	1,766	1,766	-	-	1,967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77	977	-	977	974	-	3	1,015
·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485	485	-	485	485	-	-	485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888	888	-	888	881	-	7	1,056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100	-	100	100	-	-	100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수행기관은 292억 9,100만원을 교부받아 277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8,600만원을 불용하여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94.6%임.

【 2023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29,506	29,291	215	29,291	-	29,291	27,705	-	1,586	30,855
· 청소년쉼터	25,290	25,085	205	25,085	-	25,085	23,824	-	1,261	26,232
· 청소년자립지원관	1,766	1,766	-	1,766	-	1,766	1,682	-	84	1,967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977	974	3	974	-	974	929	-	45	1,015
·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485	485	-	485	-	485	484	-	1	485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888	881	7	881	-	881	686	-	195	1,056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100	-	100	-	100	100	-	-	100

자료: 여성가족부

나)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역별 집행 편차 문제

내역사업인 청소년쉼터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는 2023년 계획액 252억 9,000만원 중 25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수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250억 8,500만원 중 238억 2,400만원(실집행률 95.0%)을 집행하였음.

2021년 신규 도입된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은 청소년쉼터 사업 중 하나로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

구 분	2021년~2022년	2023년
대상자	① 만 18세 이후 쉼터 퇴소청소년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②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쉼터 이용자 ③ 퇴소 직전 **1년간** 연속 보호받은 자	① 좌동 ② 좌동 ③ 퇴소 직전 **6개월간** 연속 보호받은 자
지급액	매월 30만원	매월 40만원
지급기간	36개월	60개월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 첫해인 2021년 여성가족부는 예산액 1억 2,600만원(지원 계획인원 70명, 매월 30만원, 12개월 지원) 중 1억 1,985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1억 1,985만원 중 2,85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23.8%로 매우 저조하였음. 당초 70명의 청소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27명에 불과하였음.

2022년도에는 쉼터 퇴소 청소년 140명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2억 3,28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1억 2,285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은 52.8%로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났음.

2023년에는 쉼터 퇴소 청소년 200명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4억 8,000만원 중 4억 4,885만원[130]을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3억 5,665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실집행률은 79.5%로 2022년 대비 26.7%p 개선된 것으로 확인됨.

130) 총 계획예산 4억 8,000만원 중 유보액(지자체의 배정 수요를 넘는 수요 발생 시 지자체 교부 예정금액) 3,115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2021～2023년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현황 】

(단위: 천원, 명, %)

연 도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배정액	교부액 (A)	실집행액 (B)	산정인원 (월평균)	계획인원 (월평균)	지원인원 (월평균)	실집행률 (B/A*100)
2021	126,000	119,850	28,500	70	70	27	23.8
2022	252,000	232,800	122,850	140	129.3	68.2	52.8
2023	480,000	448,850	356,650	200	187.1	148.8	79.5

주1) 산정인원 수는 해당연도 예산안 편성 시 산출한 예상 지원인원수임.
주2) 계획인원 및 지원인원 수는 각 지자체별 월별 계획인원 및 지원인원을 각각 모두 더하여 집계한 후 다시 지자체 수(17)와 개월 수(12)로 나눈 산술평균값임.
자료: 여성가족부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지원수당의 집행 편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필요해 보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립지원수당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실집행률 79.5%보다 지원 실적이 높은 지자체가 7개(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남)인 반면,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지자체가 7개(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로 지자체별 자립지원수당 지원금의 집행 편차가 발생하였음.

이 중 서울(96.4%), 광주(93.5%), 경기(100%), 전북(90%), 경남(100%)은 2023년 평균 실집행률(79.5%)보다 실집행률이 10%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대전(32.3%), 세종(33.3%)의 경우 실집행률이 30%대에 머물렀

고, 대구(55.6%), 울산(53.7%), 강원(64.1%), 전남(69.1%), 제주(62.9%)의 경우 실집행률이 50~60%대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 2023년도 자립지원수당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및 지원 현황 】

(단위: 천원, 명)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실집행액	계획인원 (월평균)	지원인원 (월평균)	실집행률
서울	56,100	54,100	23.4	22.6	96.4
부산	34,800	30,200	14.5	12.6	86.8
대구	23,400	13,000	9.8	5.4	55.6
인천	21,600	18,350	9.0	7.7	85.0
광주	28,400	26,550	11.8	11.1	93.5
대전	19,200	6,200	8.0	2.6	32.3
울산	21,600	11,600	9.0	4.8	53.7
세종	7,200	2,400	3.0	1.0	33.3
경기	68,000	68,000	28.3	28.3	100.0
강원	14,200	9,100	5.9	3.8	64.1
충북	35,200	25,200	14.7	10.5	71.6
충남	20,800	16,400	8.7	6.8	78.9
전북	18,000	16,200	7.5	6.8	90.0
전남	16,800	11,600	7.0	4.8	69.1
경북	29,000	21,000	12.1	8.8	72.4
경남	13,550	13,550	5.7	5.7	100.0
제주	21,000	13,200	8.8	5.5	62.9
계	448,850	356,650	187.1	148.8	79.5

자료: 여성가족부

연도별 실집행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자체는 2021년과 2022년에도 평균 실집행률을 상회하여 집행하였으나,

대전, 강원, 전남, 제주 등 4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을 시행한 2021년 이후 매년 평균 실집행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대전, 제주는 2021년 교부금 전액을 불용하였음.

【 평균 실집행률 상·하회한 7개 지자체 자립지원수당 연도별 집행 현황 】

(단위: %)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	42.5	72.5	96.4
부산	65.7	90.3	86.8
광주	100	96.2	93.5
대전	-	31.4	32.3
강원	7.7	20.0	64.1
전남	15.8	27.8	69.1
제주	-	38.8	62.9
평균 실집행률	**23.8**	**52.8**	**79.5**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31]에 따라 각 중앙

131)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7)
(1) 보조금 교부시 점검 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의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가능성을

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의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가족정책관

가. 일반회계

1)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② 지방 보조율 등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와 다르므로 지방 보조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③ 지원대상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실집행이 저조하였으므로 청소년부모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④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교부하여 교부액의 29.3%가 불용되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반납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족역량강화 지원’은 가족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가족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희망드림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실태조사, 경상경비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예산현액 115억 3,300만원 중 96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3,5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1%임.

【 2023년도 가족역량강화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가족역량강화 지원	11,533	11,533	-	11,533	9,698	-	1,835	2,762
· 가족희망드림지원	7,121	7,121	-	7,121	7,121	-	-	-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492	492	-	492	492	-	-	49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600	3,600	-	3,600	1,800	-	1,800	2,250
· 조손가족 실태조사	300	300	-	300	277	-	23	-
· 경상경비	20	20	-	20	8	-	12	20

자료: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 보조율 확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교부 필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청소년부모[132]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음.

2023년 예산현액 36억원 중 18억원이 집행되고 18억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0.0%임.

---

13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5. (생략)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8. (생략)

【 2023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가족역량강화 지원	11,533	11,533	-	11,533	9,698	-	1,835	2,76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600	3,600	-	3,600	1,800	-	1,800	2,250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지원되었음.

【 2023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

○ (추진배경)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필요

* 청소년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로 자녀 양육비(30.7%), 생계 및 의료비 지원(29.4%), 주거지원(10.9%) 등을 꼽음(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19).

○ (사업대상) ① 청소년(만 24세 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 (추진체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보조금 지원(국비-지방비 매칭)

여성가족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재원확보 및 배분, 사업운영지침 제공 · 사업정산 및 결과분석 실시 등	⇒	· 수요조사 및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아동양육비 집행(신청·접수 - 대상판별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급 - 사후관리) · 사업 정산결과 보고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약 3.000명 이내
· (지원예산) 국비 3,6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금액)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 미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지방 보조율[133] 등 상이, 지원대상 과다 산정으로 실집행률 저조,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기한 내 미반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첫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21년 3월 23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청소년부모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복지지원의 경우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13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보조율 50%
청소년한부모복지급여(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 보조율 서울 50%, 지방 80%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 지원 규정 】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소득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실시 및 자료요청 규정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생략)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 ⑤ (생략)

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주거 등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출국·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병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생략)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

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⑦ (생략)

이로 인해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134] 60% 이하의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금융기관과 관계 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부모가 제출한 소득판별 관련 서류만[135]을 확인하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근로·사업·자산 소득 등 공적자료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1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135)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시 소득금액증명 소득판별 관련 서류(소득이 없는 가구원은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를 제출함(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는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는 의견임

둘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 지원액, 지방 보조율 등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와 다르므로 지방 보조율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는바, 청소년부모는 청소년한부모와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받고 지원금액도 15만원 적음.

【 2023년 여성가족부 아동양육비 지원현황 】

(단위: 만원, %)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부모연령	소득기준	아동연령	아동양육비(월)			보조율	보조율 근거
						기본	추가	계		
일반회계	가족역량 강화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	60% 이하	만18세 미만	20	-	20	50	-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청년한부모: 만 25~34세	60% 이하	만5세 이하	20	10	30	서울 50, 지방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1〕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	20	5	25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복지급여(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부 또는 모 만24세 이하	65% 이하	만18세 미만	35	-	35		

또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양육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복지급여(청년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서울 50% 지방 80%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지방 보조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청소년부모 현황, 지원대상 소득기준, 지원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36억원 중 18억원을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18억원 중 12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35.3%,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70.7%에 불과함.

【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C)	불용액	실집행률	
본예산	추경(A)							C/A	C/B
3,600	3,600	1,800	1,800	-	1,800	1,272	528	35.3	70.7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지원대상은 예산편성시 3,000명으로 산정되었는데, 실제 지원인원은 지원대상의 52.3%인 1,569명에 불과하여 지원대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 2022년의 경우에도 실제 지원인원은 지원대상(3,000명)의 43.0%인 1,291명에 불과하였음.

【 2022년~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액	1,800	3,600
교부액	1,800	1,800
지원액(실집행액)	680	1,266
지원대상(A)	3,000	3,000
지원인원(B)	1,291	1,569
B-A	△1,709	△1,431
B/A	43.0	52.3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계상하였으나, 그 수요가 청소년부모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연도별 청소년부모 가구수 현황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가구가 2021년 2,969가구, 2022년 2,350가구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3,000가구로 산정하여 예산편성시 지원대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산정하였음.

【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

(단위: 가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557	6,188	4,900	3,760	2,969	2,350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가장 낮은 지역(대구 55.0%, 제주 52.5%, 경북 52.3%)은 가장 높은 지역(인천 92.5%)보다 30%p 이상이 낮고 평균(70.7%)보다 15~18%p 낮으므로, 자치단체별 실집행률 격차가 크게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치단체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가구, 명)

구분	교부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지원가구수	지원아동수
서울	121	93	76.9	85	112
부산	88	58	65.9	78	95
대구	40	22	55.0	59	63
인천	106	98	92.5	83	113
광주	77	60	77.9	56	66
대전	40	28	70.0	29	34
울산	41	26	63.4	20	25
경기	446	338	75.8	286	395
강원	78	58	74.4	48	65
충북	96	75	78.1	43	94
충남	131	86	65.6	79	104
전북	92	56	60.9	50	71
전남	125	88	70.4	82	111
경북	128	67	52.3	71	87
경남	132	88	66.7	81	98
제주	59	31	52.5	28	36
계	1,800	1,272	70.7	1,178	1,569

자료: 여성가족부

넷째, 여성가족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교부하여 교부액의 29% 정도가 불용되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13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또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37]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13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3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97)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집행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2022년 10월 23일 최종교부된 금액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한 시·도가 10개(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 파악되었는바, 2023년 10월 23일 최종교부할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교부액의 29.3%(5억 2,800만원)가 불용되었음.[138)]

【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치단체별 교부·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피보조기관명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1.12	1.13	1.16	2.3	10.23	계(A)				
1	서울특별시	-	60	-	36	25	121	121	93	28	76.9
2	부산광역시	-	35	-	21	32	88	88	58	30	65.9
3	대구광역시	22	-	-	-	18	40	40	22	18	55.0
4	인천광역시	81	-	-	-	25	106	106	98	8	92.5
5	광주광역시	48	-	-	-	29	77	77	60	17	77.9
6	대전광역시	39	-	-	-	1	40	40	28	12	70.0
7	울산광역시	40	-	-	-	1	41	41	26	15	63.4
8	경기도	-	258	-	154	34	446	446	338	108	75.8
9	강원도	41	-	-	-	37	78	78	58	20	74.4
10	충청북도	10	86	-	-	0	96	96	75	21	78.1
11	충청남도	94	-	-	-	37	131	131	86	45	65.6
12	전라북도	-	27	-	16	49	92	92	56	36	60.9
13	전라남도	-	-	69	40	16	125	125	88	37	70.4
14	경상북도	-	71	-	43	14	128	128	67	61	52.3
15	경상남도	105	-	-	-	27	132	132	88	44	66.7
16	제주특별자치도	36	-	-	-	23	59	59	31	28	52.5
계		516	537	69	310	368	1,800	1,800	1,272	528	70.7

자료: 여성가족부

138) 피보조기관의 불용액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므로 국고보조금 반납절차를 거쳐 일반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세입처리됨.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39]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40]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22년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2023년까지 반납되어야 하나, 2022년·2023년 정산보고 및 잔액정산 현황을 보면, 2024년 초까지 반납하지 않은 지

---

13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140)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가 17개 시·도 중 5개(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임.

【 2022년·2023년 정산보고 및 잔액정산 현황(2024.4.30. 기준 】

피보조기관명	2022년		2023년	
	정산보고일 (2023.3.31.)	잔액반납일 (2023.12.31.)	정산보고일 (2024.3.31.)	잔액정산일 (2024.12.31.)
서울특별시	2023.2.28.	-	2024.2.19.	정산 중
부산광역시	2023.1.31.	2023.12.26.	2024.2.23.	정산 중
대구광역시	2023.2.3.	2023.3.27.	2024.2.23.	정산 중
인천광역시	2023.1.26.	2023.12.11.	2024.2.19.	정산 중
광주광역시	2023.2.8.	2023.12.28.	2024.2.23.	정산 중
대전광역시	2023.1.30.	2023.3.27.	2024.2.8.	정산 중
울산광역시	2023.1.30.	2024.1.12.	2024.2.14.	정산 중
경기도	2023.2.15.	2023.12.28.	2024.2.19.	정산 중
강원도	2023.2.1.	2023.12.29.	2024.2.7.	정산 중
충청북도	2023.1.31.	2023.12.21.	2024.2.5.	정산 중
충청남도	2023.2.9.	-	2024.2.20.	정산 중
전라북도	2023.2.24.	-	2024.3.6.	정산 중
전라남도	2023.2.9.	-	2024.2.15.	정산 중
경상북도	2023.2.9.	2023.12.29.	2024.2.6.	정산 중
경상남도	2023.2.6.	-	2024.2.7.	정산 중
제주특별자치도	2023.2.13.	2023.12.7.	2024.2.1.	정산 중

주: 2022년 잔액정산일 공란인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지자체임
자료: 여성가족부

2) 아이돌봄 지원(2334-341)

○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등 3개 내역사업은 예산이 1개로 통합·관리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와 서비스제공기관은 예산의 내역별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관리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부족한 예산을 돌봄수당에서 매년 충당하고 있으므로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돌봄수당은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이 70.2%에 불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가 13,031가구이며 평균 대기일수가 33일이므로,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① 광역지원센터 지정 지연으로 예산액(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②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현행법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③ 여성가족부는 광역지원센터 지정 ·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원센터를 지정 ·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은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아이돌봄 지원’은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광역지원센터 운영, 중앙지원센터 운영, 경상경비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예산현액 3,546억 1,300만원 중 3,545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7%임.

【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아이돌봄 지원	354,613	354,613	354,613	354,509	104	467,866
· 돌봄수당	281,874	281,874	281,874	281,874	-	384,222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46,969	46,969	46,969	46,969	-	57,299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367	19,367	19,367	19,367	-	20,300
· 광역지원센터 운영	4,955	4,955	4,955	4,955	-	4,697
· 아이돌봄 중앙센터 운영	1,249	1,249	1,249	1,196	53	1,249
· 경상경비	199	199	199	148	51	99

자료: 여성가족부

나) 예산의 내역별 집행관리 강화 필요

‘아이돌봄 지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4개 내역사업이 있고, 이 중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등 3개 내역사업은 서비스제공기관이 교부된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광역지원센터 운영 내역사업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교부된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41] 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14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42]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의 예산을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면,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을 내역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집행기관별(서비스제공기관과 광역지원센터)로 구분하여 교부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내역

---

142)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보조금 교부시 점검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3개(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의 예산을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지 않고 1개로 통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에만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이 사업의 목적(서비스지원)과 집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이 동일하므로 1개로 통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3개(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내역사업을 1개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3개(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내역사업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매년 예산 부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적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족한 예산이 돌봄수당에서 충당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아이돌보미 양성관리는 104억 6,100만원,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53억 8,900만원이 돌봄수당에서 충당되었음.

【 돌봄수당·아아돌보미 양성관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본예산 (A)	전년 대비		실집행액 (B)	B-A	실집행률(B/A)
			증감액	증감률			
2022	돌봄수당	202,031	21,873	12	195,935	△6,096	95.6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50,053	△1,973	△4	52,115	2,062	102.2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038	495	3	23,756	4,718	119.6
2023	돌봄수당	281,874	78,843	40	231,883	△49,991	82.3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46,969	△3,084	△6	57,430	10,461	122.3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367	329	2	24,756	5,389	127.8

자료: 여성가족부

특히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전년도 실집행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음. 2022년과 2023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매년 상향되고 있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143]에 연동되는 4대보험 및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액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감액(2022년 △4%,

143) 2023년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 편성근거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46,969백만원**
* 양성교육 878백만원 = 4,500명×30만원(1인당 운영 단가)×65%
* 보수교육 2,925백만원 = 25,000명×18만원(1인단 운영 단가)×65%
* 정서치유 및 사례집담회 192백만원 = 227개소×130만원×65%
* 채용심사 88백만원 = 9,000명(양성교육인원 2배)×1.5만원(단가)×65%
* 배상보험료 378백만원 = 29,090명×2만원×65%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42,509백만원** = 22,000명×**2,252원(요금의 약 20%)**×110시간(월평균 활동시간)×12개월×65%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19,367백만원
* 인건비 18,254백만원 = 996명×1,958.0천원×12개월×1.2(기관부담금)×65%
* 운영비 1,113백만원 = 227개소×7,548천원×65%

2023년 △6%) 편성되었음.

2022년과 2023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의 경우 2020년 ~ 2023년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129.9%(2020년) → 124.8%(2021년) → 119.6%(2022년) → 127.8%(2023년)로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만 증액되었음.

【 2020년~2023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A)	18,709	19,094	19,870	19,367
실집행액(B)	24,311	23,821	23,756	24,756
실집행률(B/A)	129.9	124.8	119.6	127.8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서비스제공기관은 예산의 내역별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관리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유형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고, 서비스종류에 따라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가 있으며, 소득유형과 서비스종류에 따라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이 달라 돌봄수당의 경우 가형, 나형, 다형에만 지원되고 라형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소득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0~12세, 시간당 11,08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080원)	
		취학 전		취학 후		0 ~ 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1,080원 (100%)

주: 1. 휴일 및 야간(22시 ~ 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2. 가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돌봄수당'은 예산현액 2,818억 7,400만원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중 2,318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82.3%로 저조함.

【 2023년도 돌봄수당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3년						실집행률 (B/A)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불용액	
◦ 아이돌봄 지원	354,613	354,613	353,165	353,165	317,594	35,571	89.9
· 돌봄수당	281,874	281,874	281,874	281,874	231,883	49,991	82.3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과 2023년 시·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는 122,729가구로 전년 대비 51,384가구 증가하였으나 아이돌보미는 28,071명으로 전년 대비 1,396명만 증가되었음.

이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전년(89.6%) 대비 19.4% 감소된 70.2%에 불과하였음.

【 2022년·2023년 시·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

(단위: 가구, %, 명)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023년-2022년)			
	신청 가구	연계 가구	연계 율	아이 돌보미	신청 가구	연계 가구	연계 율	아이 돌보미	신청 가구	연계 가구	연계율	아이 돌보미
서울	9,620	8,672	90.1	3,946	18,207	11,641	63.9	4,037	8,587	2,969	△26.2	91
부산	4,579	4,282	93.5	2,073	6,198	4,838	78.1	2,172	1,619	556	△15.4	99
대구	2,808	2,640	94.0	1,257	4,253	3,321	78.1	1,375	1,445	681	△15.9	118
인천	2,991	2,800	93.6	1,359	5,005	3,587	71.7	1,391	2,014	787	△21.9	32
광주	2,420	2,280	94.2	1,100	4,141	3,121	75.4	1,166	1,721	841	△18.8	66

(단위: 가구, %, 명)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2023년-2022년)			
	신청 가구	연계 가구	연계율	아이돌보미	신청 가구	연계 가구	연계율	아이돌보미	신청 가구	연계 가구	연계율	아이돌보미
대전	1,889	1,764	93.4	682	3,287	2,319	70.6	757	1,398	555	△22.8	75
울산	2,185	2,022	92.5	937	4,179	3,221	77.1	998	1,994	1,199	△15.4	61
세종	849	773	91.0	335	1,532	985	64.3	363	683	212	△26.7	28
경기	17,457	14,148	81.0	5,521	28,373	18,240	64.3	5,688	10,916	4,092	△16.7	167
강원	3,378	3,124	92.5	1,147	5,439	3,885	71.4	1,232	2,061	761	△21.1	85
충북	2,048	1,878	91.7	739	3,698	2,598	70.3	813	1,650	720	△21.4	74
충남	3,220	2,943	91.4	1,103	4,796	3,455	72.0	1,168	1,576	512	△19.4	65
전북	3,162	2,989	94.5	1,154	4,540	3,599	79.3	1,196	1,378	610	△15.2	42
전남	3,513	3,209	91.3	1,167	6,220	4,525	72.7	1,199	2,707	1,316	△18.6	32
경북	5,347	5,027	94.0	2,148	12,697	9,496	74.8	2,414	7,350	4,469	△19.2	266
경남	4,626	4,331	93.6	1,654	8,340	6,155	73.8	1,765	3,714	1,824	△19.8	111
제주	1,253	1,016	81.1	353	1,824	1,114	61.1	337	571	98	△20.0	-16
계	71,345	63,898	89.6	26,675	122,729	86,100	70.2	28,071	51,384	22,202	△19.4	1,396

자료: 여성가족부

즉, 돌봄수당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돌봄수당 사업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2022년과 2023년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41.2%로 전년 대비 12.8%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특히 2023년 대기가구는 13,031가구이고, 평균 대기일수도 33일에 달함.

【 2022년·2023년 신규 신청가구 연계 및 평균 대기일수 현황 】

(단위: 가구, %, 일)

구 분	2022(A)	2023(B)	B-A
신규 신청가구(A)	20,599	22,145	1,546
연계가구(B)	5,854	9,114	3,260
대기가구	14,745	13,031	△1,714
연계율B/A	28.4	41.2	12.8
평균 대기일수	27.8	33.0	5.2

주: 1. 대기가구는 연도말 대기가구 상태에 있는 가구수를 의미
2. 평균 대기일수는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계된 가구의 평균 대기일수를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21년~2024년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은 최저임금의 100.1%~102.5%에 불과하므로, 2023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보미 처우가 열악하여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중 퇴사자가 많으므로[144],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부모들의 민간 육아도우미서비스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기본 근무시간 보장, 시급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144) 2019년~2023년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입사자 및 퇴사자 현황을 보면, 아이돌보미 입사자(신규 양성자)는 19,602명인데 퇴사자는 14,849명에 달함.

< 2029년~2023년 최근 5년간 아이돌보미 입사자 및 퇴사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입사자(신규 양성자)(A)	5,793	2,415	3,904	3,544	3,946	19,602
퇴사자(B)	4,857	2,917	2,456	2,637	1,982	14,849
B-A	936	△502	1,448	907	1964	4,753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021년∼2024년 최저임금·돌봄수당·이용요금 현황 】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최저임금(A)	8,720	9,160	9,620	9,860
전년대비 증	130	440	460	240
돌봄수당(B)	8,730	9,170	9,630	10,110
전년대비 증	130	440	460	480
B/A	100.1	100.1	100.1	102.5
주휴수당(C)	1,310	1,380	1,450	1,520
이용요금(B+C)	10,040	10,550	11,080	11,630
전년대비 증	150	510	530	550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이 70.2%에 불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가 13,031가구이며 평균 대기일수가 33일이므로,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확대[145]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45) '아이돌보미 양성관리'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채용에 따른 심사비, 배상보험료,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의 경우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이 대부분(2023년 90.5%)를 차지하며 과소 편성되어 부족한 예산(104억 6,100만원)이 돌봄수당에서 충당되었음.

2023년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편성근거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46,969백만원
* 양성교육 878백만원 = 4,500명×30만원(1인당 운영 단가)×65%(※2024년부터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아이돌봄 인력양성으로 이관)
* 보수교육 2,925백만원 = 25,000명×18만원(1인단 운영 단가)×65%
* 정서치유 및 사례집담회 192백만원 = 227개소×130만원×65%
* 채용심사 88백만원 = 9,000명(양성교육인원 2배)×1.5만원(단가)×65%
* 배상보험료 378백만원 = 29,090명×2만원×65%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42,509백만원 = 22,000명×2,252원(요금의 약 20%)×110시간(월평균 활동시간)×12개월×65%

라) 광역지원센터 업무 합리적 개선 및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17개 시·도의 광역지원센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49억 5,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3년도 광역지원센터 운영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아이돌봄 지원	354,613	354,613	-	354,613	354,509	-	104	467,866
· 광역지원센터 운영	4,955	4,955	-	4,955	4,955	-	-	4,697

자료: 여성가족부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광역지원센터 지정 지연으로 실집행률 저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어려움,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첫째, 시·도가 광역지원센터 지정에 소극적이어서 예산액(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제공기관[146]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노무 관리 등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할 인력의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아이돌보미의 탄력적인 수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이돌봄 지원법」[147]을 개정(2020. 5. 19.)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런데 시・도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을 보면, 시·도가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에 소극적[148]임에 따라 17개 시·도 중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 곳은 2022년 4개에 불과하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개에 불과하였음.

---

146)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2019. 9. 23. 의안번호 2022594)한「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 내용 참고

147)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283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 ⑤ (생략)

148) 시·도지사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에 소극적인 이유(자료: 여성가족부)

ㅇ 시·도는 광역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규모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를 수행할 기관이 없고 노조 요구(시·도의 광역센터 직영 및 아이돌보미 직접 채용), 파견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지정·운영에 소극적, 법률 개정 요구 * 최대 수천 명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역량 부족, 아이돌보미나 이용자 가정과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과 소송 등에 따른 부담 * 아이돌보미 채용은 광역센터, 배치·운영은 제공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파견법 위반 소지 및 현장 관리·감독의 어려움 존재 ㅇ 광역센터가 시·군·구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여 발생하는 기관 당 고용인원 증가(최대 5천 명 이상)로 각종 추가부담 발생 :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가(최소 80억 원 추산),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책임자 선임 의무

【 시·도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

연번	시도	지정·운영 시기	기관명(법인)
1	세종	2022.6.~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2	전북	2022.7.~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3	전남	2022.7.~	영광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법인 난원)
4	경남	2022.8.~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5	충북	2023.5.~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6	대구	2023.7.~	달서구가족센터(가정복지회)
7	광주	2023.7.~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
8	대전	2023.8.~	대전광역시가족센터(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
9	강원	2024.1.~	원주YMCA((재)원주기독교청년회)
10	경북	2024.1.~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11	충남	2024.1.~	(재)당진시복지재단
12	경기	2024.1.~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13	제주	2024.1.~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유지재단)
14	부산	2024.1.~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15	인천	2024.2.~	(사)인천YWCA
16	서울	-	
17	울산	-	

자료: 여성가족부

그 결과 2021년~2023년 광역지원센터 운영의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0.0%(2021년) → 40.4%(2022년) → 68.5%(2023년)로 저조하였음.

【 2021년~2023년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A)	566	4,883	4,955
집행액(교부액)	0	2,002	4,955
실집행액(B)	0	1,974	3,396
실집행률(B/A)	0.0	40.4	68.5

주) 2021년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함.
자료: 여성가족부

둘째,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행법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광역지원센터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광역지원센터는 파견법 위반 소지, 아이돌보미 직접 채용 및 복무관리 어려움 등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조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광역지원센터가 현행법대로 지정·운영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149]은 2022년 6월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해당 법률 개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법적 쟁점

149) 감사원에 아이돌보미 등 319인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2022. 3. 21.)가 접수되었음

및 현실적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광역지원센터 지정 및 아이돌보미 채용 조정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통보)”을 통보하였음.

이에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이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셋째, 여성가족부는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은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시·도별 광역지원센터 운영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시·도의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 49억 5,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9개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에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은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집행하였음.

【 2023년 시·도별 광역지원센터 운영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시·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광역센터 지정·운영 시기	'23년 지정 완료 여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B/A)		
	본예산	추경 (A)								
세종	225	225	225	225	225	186	39	82.7	'22.6.~	○
전북	298	298	298	298	298	295	3	99.0	'22.7.~	
전남	298	298	298	298	298	295	3	99.0	'22.7.~	
경남	298	298	298	298	298	298	-	100.0	'22.8.~	
충북	225	225	225	225	225	165	60	73.3	'23.5.~	
대구	298	298	298	298	298	298	-	100.0	'23.7.~	
광주	225	225	225	225	225	225	-	100.0	'23.7.~	
대전	225	225	225	225	225	225	-	100.0	'23.8.~	
강원	298	298	298	298	298	225	72	75.5	'24.1.~	×
경북	298	298	298	298	298	148	150	49.7	'24.1.~	
충남	298	298	298	298	298	217	81	72.8	'24.1.~	
경기	464	464	464	464	464	162	302	34.9	'24.1.~	
제주	225	225	225	225	225	84	140	37.3	'24.1.~	
부산	298	298	298	298	298	252	46	84.6	'24.1.~	
인천	298	298	298	298	298	94	204	31.5	'24.2.~	
서울	464	464	464	464	464	258	206	55.6	-	
울산	225	225	225	225	225	101	124	44.9	-	
계	4,955	4,955	4,955	4,955	4,955	3,,525	1,430	71.1		

자료: 여성가족부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기존 광역거점기관[150]이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광역거점기관 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보임.

150) 여성가족부는 법적 근거 없이 서비스제공기관 중 한 곳을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광역거점기관은 사업시행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 사업홍보, 사업실적 관리를 담당하였음. 광역거점기관 운영비는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으로 집행되었음.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는 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1]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가족서비스지원사업, 양육비이행지원사업, 예비비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15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⑥ (생 략)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 ⑩ (생 략)

2023년 예산현액 249억 9,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0%임.

【 2023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4,990	24,990	-	24,990	24,990	-	-	24,513
· 인건비	8,889	8,889	-	8,889	8,889	-	-	9,112
· 운영비	3,871	3,871	-	3,871	3,871	-	-	3,871
· 가족서비스지원사업	8,132	8,132	-	8,132	8,132	-	-	7,432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3,898	3,898	-	3,898	3,898	-	-	3,898
· 예비비	200	200	-	200	200	-	-	200

자료: 여성가족부

나)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

'인건비'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직원의 인건비[152]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153]에서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의 인

152)【 2023년도 인건비 편성 내역 】

□ 인건비 8,889백만원 - (내용) 정원 127명, 공무직 57명 - (산출) 130명×53백만원, 57명×36백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15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③ (생략)

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88억 8,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3년도 인건비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4,990	24,990	-	24,990	24,990	-	-	24,513
· 인건비	8,889	8,889	-	8,889	8,889	-	-	9,112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변호사의 신규채용 인건비는 3,600만원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변호사 신규채용 인건비는 6,500만원 이상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변호사 인건비가 다른 기관의 변호사 인건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하반기 이후 신규 변호사 채용 인건비 현황 】

(단위: 백만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6 ~	65 ∽ 70	66 ∽	65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2023, p220.

이로 인해 2019년~2023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17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은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을 변호사의 신규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최근 5년간 양육비 이행 변호사 인건비 및 인원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변호사 인건비 집행액	655	632	529	483	495
변호사 정원	-	-	-	-	-
변호사 현원	17	17	11	10	10
변호사 입사 후 이탈(이직)인원	5	2	6	1	0
변호사 신규채용 인원	2	2	0	0	0

주: 1. 변호사 인건비 집행액은 변호사 기본연봉 및 제수당이며, 퇴직적립금과 기관부담금 제외됨.
2. 정원은 별도로 없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체 정원 내에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음.
3. 현원에는 휴직자가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 처우가 열악하여 변호사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처우개선 등을 통해 변호사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을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2021년과 2022년에는 하지 않았고, 2023년에는 2차례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였음.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예산을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일정비율(2023년의 경우 1.7%)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임.

그런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26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도록 개정되어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될 계획인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고 그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양육비 이행변호를 맡는 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은 비 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6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3년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4,990	24,990	-	24,990	24,990	-	-	24,513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3,898	3,898	-	3,898	3,898	-	-	3,898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1,601	1,601	-	1,601	1,601	-	-	1,601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9개월(3개월 연장가능)을 지급하였음.

연도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신규로 지원하는 자녀는 2015년 79명에서 2023년 953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지원금액도 2015년 6,200만원에서 2023년 15억 4,7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22년부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크게 확대되었음.

【 연도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지원자녀	79	93	100	123	265	245	510	778	953	3,146
지원금액	62	116	92	122	215	269	246	1,560	1,547	4,229

주: 지원자녀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지원 결정된 자녀수를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154]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청구한 금액과 누적 회수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말 기준 누적 회수율이 여전히 15.36%에 불과함.

【 구상권 행사 및 체납처분 강제징수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당해 청구금액(A)	95	74	105	122	239	552	772	1,959
당해 회수금액(B)	0	2	1	17	39	92	150	301
누적 회수율	-	1.18	1.09	5.05	9.29	12.72	15.36	15.36

주: 체납처분 강제징수는 2021.6.10.이후 지원 결정된 사건의 지원이 종료된 2022.7.부터 시행
자료: 여성가족부

15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보유율이 낮고 양육비 채무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비 회수율이 낮다고 설명함.

그런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5]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보험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녀 1인당 회수할 최대금액이 소액임(180만원, 3개월 연장시 240만원)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재산(금융정보)[156]을 조사할 수 없어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157]

또한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강제징수[158]가 2021년 6월 10일

---

15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15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법률개정 논의시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비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금융기관 장에 대한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서 금융정보가 제외되었다고 함.

157) 양육비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긴급지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므로 양육비 채무자가 이 기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음.

15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7439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략)

이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하고, 2021년 6월 10일 전에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강제징수를 할 수 없고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어 회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재정으로 지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임.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가족센터 건립(2333-334)

○ 가족센터 건립은 ① 매년 실집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교부하고, ②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기간 내에 가족센터를 준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족센터 건립'은 지역 기반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건립비를 정액으로 보조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사업임.

2023년 예산현액 146억 6,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임.

【 2023년도 가족센터 건립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가족센터 건립	14,660	14,660	-	-	14,660	14,660	-	-	9,050

자료: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을 보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은 교부액 146억 6,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39억 7,900만원을 더한 586억 3,900만원으로, 이 중 310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233억 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41억 8,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여성가족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12.1%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212.1%이며,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53.0%에 불과함.

【 2023년도 가족센터 건립 사업수행기관 결산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2024년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가족센터 건립	14,660	14,660	-	14,660	43,979	58,639	31,098	23,356	4,185	9,050

자료: 여성가족부

나) 집행가능한 예산 교부 및 사업기간 변경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족센터 건립[159]’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센터 건립비를 정액(기본형 10억원 이하, 확장형 15억원 이하)으로 사업기간(2년 또는 3년)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배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59)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기재부가 부여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부터 2023년까지 102개소[160]가 추진되었음.

【 가족센터 건립 사업 개요 】

○ (목적) 지역 기반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적 기반 조성

○ (주요기능) 가족형태별,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교육·돌봄 서비스 및 세대·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 제공

○ (공간구성) 상담실,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사무공간, 다목적 소통·교류공간 등

[가족센터 공간별 적정 표준면적]

세부구분	기본형(509㎡)		확장형(759㎡)	
가족상담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100㎡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100㎡
가족교육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200㎡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200㎡
가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99㎡	공동육아나눔터	99㎡
가족소통	-	-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250㎡
사무공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0㎡

※ 기본형에 포함되는 시설은 필수 조성 / (전용+공용) 기본형 814㎡, 확장형 1,214㎡

○ (건립비 지원) 가족센터 건설비 지원(기본형 10억원 이하, 확장형 15억원 이하)

* 지자체별 사업기간('21년까지 2~3년, '22년부터는 3년)에 따라 총예산 연차별 차등배분(2년간 4:6, 3년간 2:3:5) 지원

- ('19년) 5개소 250억원, ('20년) 60개소 345억원, ('21년) 89개소 439억원, ('22년) 77개소 486억원 지원, ('23년) 25개소 142억원 지원

○ (건립현황)

(단위 : 개소 / '23.12.31.기준)

계	'15	'17	'19	'20	'21	'22
102	2	1	5(8)	60(68)	23(91)	11(102)

자료: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61]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160) 2023년말 기준으로 가족센터는 244개소임(통합가족센터 21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3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

16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62]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63]은 ①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고, ②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62)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97)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3)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8)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지원 등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 ㅇ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
- ㅇ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
  -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
- ㅇ 전년도 지방비 부담실적 등 지방비 부담 가능성 및 사업 진행상황 등 보조금의 집행 가능성 검토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되,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7.3%(2020년) → 42.6%(2021년) → 52.3%(2022년) → 53.0%(2023년)로 매년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사전절차이행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당해연도 교부액이 전액 또는 대부분 이월 〔당해연도 교부액 대비 이월률 : 96.3%(2020년) → 105.4%(2021년) → 84.8%(2022년) → 159.3%(2023년)〕 되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20년~2023년 가족센터 건립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2023. 12. 31. 기준)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실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D)	불용액	실집행률 (C/B)	이월률 (D/A)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실집행액				
2020	36,545	36,545	37,034	37,034	11,989	49,023	13,370	37,034	10,470	35,653	-	27.3	96.3
2021	45,178	44,878	42,398	42,398	35,653	78,051	33,215	42,098	11,249	44,704	132	42.6	105.4
2022	48,166	48,166	51,857	51,857	44,404	96,261	50,355	51,856	16,110	43,979	1,927	52.3	84.8
2023	14,660	14,660	14,660	14,660	43,979	58,639	31,098	14,660	1,941	23,356	4,185	53.0	159.3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예산을 교부받은 2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23년에 교부받은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0%인 지방자치단체가 13개에 달함. 특히 여성가족부는 사업을 포기한 부산 금정구[164]의 경우 2022년 교부받은 예산(320백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편성된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음.

【 2023년 가족선터 건립 예산 자치단체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시행주체(기관명)	예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본예산	추경(A)						예산현액	집행액(B)			
1	서울 금천구	750	750	750	750	550	1,300	-	750	-	1,300	-	0.0
2	부산 강서구	750	750	750	750	448	1,198	477	750	29	721	-	3.9
3	인천 중구	750	750	750	750	449	1,199	1	750	1	1,198	-	0.1
4	대전 서구	750	750	750	750	306	1,056	40	750	7	1,016	-	0.9
5	경기 안성시	750	750	750	750	433	1,183	466	750	214	717	-	28.5
6	강원 철원군	500	500	500	500	500	1,000	800	500	500	-	200	100.0
7	강원 양구군	750	750	750	750	331	1,081	239	750	235	842	-	31.3
8	충남 계룡시	750	750	750	750	680	1,430	238	750	-	1,192	-	0.0
9	전북 군산시	750	750	750	750	667	1,417	217	750	-	1,200	-	0.0
10	전남 순천시	750	750	750	750	450	1,200	-	750	-	1,200	-	0.0
11	전남 영암군	750	750	750	750	555	1,305	1,295	750	-	10	-	0.0

164) 부산 금정구는 기본형으로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이고, 총 지원액은 8억원이며, 교부액은 2022년 320백만원, 2023년 480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시행주체(기관명)	예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B)			
12	경북 문경시	750	750	750	750	715	1,465	998	750	520	467	-	69.3
13	경북 고령군	500	500	500	500	466	966	366	500	-	600	-	0.0
14	서울 송파구	550	550	550	550	150	700	139	550	-	561	-	0.0
15	부산 연제구	300	300	300	300	187	487	361	300	94	126	-	31.3
16	부산 영도구	450	450	450	450	300	750	-	450	-	750	-	0.0
17	부산 금정구	480	480	480	480	320	800	82	480	-	사업포기, '23.12.		
18	대전 동구	450	450	450	450	153	603	163	450	10	440	-	2.2
19	경기 고양시	450	450	450	450	300	750	-	450	-	750	-	0.0
20	경기 용인시	450	450	450	450	300	750	300	450	-	450	-	0.0
21	강원 인제군	450	450	450	450	300	750	188	450	-	562	-	0.0
22	충북 제천시	450	450	450	450	202	652	120	450	82	532	-	18.2
23	충북 보은군	480	480	480	480	272	752	264	480	50	488	-	11.1
24	경북 울진군	450	450	450	450	241	691	340	450	199	351	-	44.2
25	경남 고성군	450	450	450	450	266	716	33	450	-	416	267	0.0
계		14,660	14,660	14,660	14,660	8,991	22,901	7,127	13,910	1,941	14,612	467	13.2

주: 2023년 예산을 교부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제외됨.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공공건축사업의 경우 설계공모부터 설계완료까지 상당한 기간(10~15개월)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의 공사 착공 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첫해 예산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여성가족부가 사업 첫해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보조금 이월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월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매년 교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러한 실집행 부진 및 과다한 이월은 다른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한편 2015~2023년 가족센터 건립 준공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가족센터 건립사업 중 사업기간 내에 가족센터 준공비율은 5.9%(102개소 중 6개소)에 불과하여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임.

【 2015~2023년 가족센터 건립 준공 현황 】

(단위: 개소)

연도	계	사업기간 내 준공			사업기간 초과 준공		
		(2년)	(3년)	소계	1년 초과	2년 이상	소계
2015년	2	-	-	-	1	1	2
2017년	1	-	1	1	-	-	-
2019년	5	-	-	-	3	2	5
2020년	60	2	1	3	14	43	57
2021년	23	-		-	6	17	23
2022년	11	-	2	2	5	4	9
2023년	-	-	-	-	-	-	-
계	102	2	4	6	29	67	96

주: 계는 연도별 신규건립 추진 개소이고, 2023년은 신규건립 추진이 없고 계속사업만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특히 2023년 예산을 교부받은 25개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까지 가족센터를 준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를 준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무하고, 공사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14개소, 56%)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6개소(24%), 공사발주 3개소(12%), 설계용역 발주 1개소(4%), 건립포기 1개소(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도 가족센터 건립 진행현황(2023. 12. 31 기준) 】

(단위: 개소, %)

추진연도 (개소)	사업 기간	공간구성	설계용역 발주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공사 중	준공	건립 포기	계
2021년 (13개소) (3차연도)	'21~'23	확장형 3년 11개소	-	1	2	8	-	-	11
		기본형 3년 2개소	-	1	-	1	-	-	2
2022년 (12개소) (2차연도)	'22~'23	확장형 3년 9개소	1	3	1	4	-	-	9
		기본형 2년 3개소	-	1	-	1	-	1	3
계		개소	1	6	3	14	0	1	25
		비율	4.0	24.0	12.0	56.0	-	4.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가족센터 건립은 매년 실집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례적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예산을 교부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기간 내에 가족센터를 준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양성평등기금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①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전년도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고, ② 지자체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반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③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 환수비율이 저조하므로 여성가족부의 징수 독려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개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우편요금, 신고포상금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계획현액 4,959억원 중 4,452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506억 7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89.8%임.

【 2023년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95,900	495,900	-	495,900	445,293	50,607	535,595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495,857	495,857	-	495,857	445,265	50,592	535,552
· 우편요금	13	13	-	13	7	6	13
· 신고포상금	30	30	-	30	22	8	30

자료: 여성가족부

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적정 예산 편성, 보조금 반납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환수 노력 필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① 아동양육비, ② 추가 아동양육비, ③ 아동교육지원비, ④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여성가족부는 2023년 계획현액 4,958억 5,700만원 중 4,452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505억 9,200만원을 불용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89.8%임.

【 2023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95,900	495,900	495,900	445,293	50,607	535,595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495,857	495,857	495,857	445,265	50,592	535,552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의 경우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하였음.

【 2023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지원금액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023년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액 4,958억 5,700만원 중 4,452억 6,500만원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4,452억 6,500만원 중 4,169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계획액 대비 실집행

률은 84.1%이고,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93.6%임.

【 2023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B)	교부 현액	실집행액 (C)	불용액	실집행률 (C/A)	실집행률 (C/B)
당초	수정(A)							
495,857	495,857	445,265	445,265	445,265	416,950	28,315	84.1	93.6

자료: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지원대상 과다 산정으로 실집행률 저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기간 내에 미반납, 부정수급액 환수비율 저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첫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전년도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2023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전년도 아동양육비 지원실적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98.7%, 98.7%, 97.3%, 93.7%로 양호하였으나 2023년에는 84.1%로 감소하여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 최근 5년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현액(A)	254,507	261,406	306,599	421,205	495,857
집행액	254,507	261,406	306,599	421,205	445,265
실집행액(B)	251,140	257,996	298,432	394,852	416,950
실집행률(B/A)	98.7	98.7	97.3	93.7	84.1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52% 이하	52% 이하	52% 이하*	60% 이하

주: 2022년 10월 58% 이하로 변경
자료: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2023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목표인원)이 259,089명으로 지원인원(212,340명)보다 46,749명 많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목표인원)이 31,515명으로 지원인원(25,960명)보다 5,555명 많음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가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목표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별·연도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명, 가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계획현액(A)	252,172	259,071	297,393	405,174	475,264
		집행액	252,172	259,071	297,393	405,174	426,774
		실집행액(B)	249,539	256,566	287,594	378,541	399,447
		실집행률(B/A)	99.0	99.0	96.7	93.4	84.0
		목표인원(C)	138,876	142,464	204,274	221,475	259,089
		지원인원(D)	133,277	135,817	188,361	203,816	212,340
		D-C	△5,599	△6,647	△15,913	△17,659	△46,749
	추가 아동양육비	계획현액(A)	1,080	1,080	8,287	15,112	19,739
		집행액	1,080	1,080	8,287	15,112	17,725
		실집행액(B)	970	886	10,184	15,672	16,626
		실집행률(B/A)	89.8	82.0	122.9	103.7	84.2
		목표인원(C)	2,400	2,400	21,179	24,247	31,515
		지원인원(D)	2,076	1,821	22,247	24,374	25,960
		D-C	△324	△579	1,068	127	△5,555
	아동교육지원비	계획현액(A)	1123	1123	787	787	790
		집행액	1123	1123	787	787	816
		실집행액(B)	532	467	593	584	816
		실집행률(B/A)	47.4	41.6	75.3	74.2	103.3
		목표인원(C)	28,124	28,124	12,332	12,332	11,067
		지원인원(D)	12,086	10,831	9,176	9,291	11,414
		D-C	△16,038	△17,293	△3,156	△3,041	347
	생활보조금	계획현액(A)	132	132	132	132	64
		집행액	132	132	132	132	57
		실집행액(B)	99	75	61	55	61
		실집행률(B/A)	75.0	56.8	46.2	41.7	95.3
		목표가구(C)	290	290	290	290	139
		지원가구(D)	145	118	90	112	129
		D-C	△145	△172	△200	△178	△10

자료: 여성가족부

특히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이 전년 대비 8%p[165](기준 중위소득 52% 이하→60% 이하)가 상향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전년 지원대상(221,475명) 대비 17.0%(37,614명) 확대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전년 지원대상(24,247명) 대비 30.0%(7,267명) 확대하였음.

둘째, 지자체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66]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165)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은 1월 기준 중위소득 52%, 10월 중위소득 58%로 연도 중 변경이 있었음.

16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하고,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2022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2023년까지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고, 2021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2022년까지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

그런데 17개 지자체 중에서 2022년에 교부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2024년 초까지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가 4개(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고, 2021년에 교부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2022년까지 반납하지 않고 2023년에야 반납한 지자체가 5개(서울, 울산, 충남, 전북, 경북)이며, 특히 충남, 전북은 2021년과 2022년 2년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음.

【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피보조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 률(B/A)	정산 보고일	잔액 반납일	잔액 반납액
		당초	수정(A)									
1	서울	34,001	34,001	34,001	34,001	34,001	30,501	3,500	89.7	23.2.9	‘23.8.22.	3,500
2	부산	32,700	32,700	32,700	32,700	32,700	30,015	2,685	91.8	23.1.30	‘23.12.26.	2,685
3	대구	22,920	22,920	22,920	22,920	22,920	20,996	1,924	91.6	23.2.6	‘23.12.27.	1,924
4	인천	33,452	33,452	33,452	33,452	33,452	31,850	1,602	95.2	23.2.3	‘23.12.27.	1,602
5	광주	19,024	19,024	19,024	19,024	19,024	18,000	1,024	94.6	23.2.7	‘23.12.28.	1,024
6	대전	15,268	15,268	15,268	15,268	15,268	14,178	1,090	92.9	23.2.1	‘23.12.22.	1,090
7	울산	10,160	10,160	10,160	10,160	10,160	9,641	519	94.9	23.1.30	‘24.1.12.	519
8	경기	91,872	91,872	91,872	91,872	91,872	86,370	5,502	94.0	23.1.31	‘24.2.27.	5,502
9	강원	14,872	14,872	14,872	14,872	14,872	13,919	953	93.6	23.2.15	‘23.12.28.	953
10	충북	15,856	15,856	15,856	15,856	15,856	15,136	720	95.5	23.2.1	‘23.11.8.	720
11	충남	18,144	18,144	18,144	18,144	18,144	17,441	703	96.1	23.2.13	미납	-
12	전북	23,664	23,664	23,664	23,664	23,664	22,306	1,358	94.3	23.2.10	미납	-
13	전남	18,168	18,168	18,168	18,168	18,168	16,995	1,173	93.5	23.2.17	미납	-
14	경북	25,518	25,518	25,518	25,518	25,518	24,008	1,510	94.1	23.3.20	‘24.1.12.	1,510
15	경남	35,142	35,142	35,142	35,142	35,142	33,709	1,433	95.9	23.2.6	미납	-
16	제주	8,352	8,352	8,352	8,352	8,352	7,796	556	93.3	23.2.8	‘23.12.11.	556
17	세종	2,092	2,092	2,092	2,092	2,092	1,991	101	95.2	23.1.31	‘23.9.1.	101
	계	421,205	421,205	421,205	421,205	421,205	394,852	26,353	93.7	-	-	21,686

자료: 여성가족부

【 2021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피보조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계획현액	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정산보고일	잔액반납일	잔액반납액
		당초	수정(A)									
1	서울	25,827	24,145	24,145	24,145	24,145	23,551	594	97.5	'22.2.14	'23.8.22.	594
2	부산	22,708	22,136	22,136	22,136	22,136	21,475	661	97.0	'22.1.28	'22.12.2.	661
3	대구	14,268	15,176	15,176	15,176	15,176	14,740	436	97.1	'22.2.4	'22.12.21.	436
4	인천	23,800	23,784	23,784	23,784	23,784	23,230	554	97.7	'22.2.8	'22.11.15.	554
5	광주	13,256	12,904	12,904	12,904	12,904	12,455	449	96.5	'22.2.7	'22.11.25.	449
6	대전	10,944	10,688	10,688	10,688	10,688	10,415	273	97.4	'22.1.27	'22.12.29.	273
7	울산	7,976	8,252	8,252	8,252	8,252	7,897	355	95.7	'22.3.11	'23.1.4.	355
8	경기	71,136	70,944	70,944	70,944	70,944	68,883	2,061	97.1	'22.3.17	'22.12.29.	2,061
9	강원	11,416	11,104	11,104	11,104	11,104	10,873	231	97.9	'22.2.11	'22.12.22.	231
10	충북	11,760	11,888	11,888	11,888	11,888	11,564	324	97.3	'22.3.29	'22.11.22.	324
11	충남	13,640	13,640	13,640	13,640	13,640	13,434	206	98.5	'22.2.15	'23.1.18.	206
12	전북	16,288	16,256	16,256	16,256	16,256	15,887	369	97.7	'22.2.14	'23.1.11.	369
13	전남	13,464	13,272	13,272	13,272	13,272	12,999	273	97.9	'22.3.17	'22.12.30.	273
14	경북	17,192	18,216	18,216	18,216	18,216	17,838	378	97.9	'22.3.25	'23.6.16.	378
15	경남	25,168	26,440	26,440	26,440	26,440	25,618	822	96.9	'22.2.3	'22.11.22.	822
16	제주	6,048	6,112	6,112	6,112	6,112	5,965	147	97.6	'22.1.28	'22.9.7.	147
17	세종	1,708	1,642	1,642	1,642	1,642	1,607	35	97.9	'22.2.28	'22.12.13.	35
	계	306,599	306,599	306,599	306,599	306,599	298,431	8,168	97.3	-	-	8,168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자체가 추경예산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하지 못하여 지자체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반납기간 내에 반납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반납 지자체에 대

해 반납 계획 조사, 추경예산 확보 요청 등 조속한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2024년 4월 기준으로 2022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집행잔액 미반납액은 46억 6,700만원이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집행잔액 반납액은 양성평등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167]에 편성되는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집행잔액이 반납기간 내에 반납되지 못하면 양성평등기금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

【 2022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불용액(집행잔액)	미반납액
충남	703	703
전북	1,358	1,358
전남	1,173	1,173
경남	1,433	1,433
계	4,667	4,667

주: 2024. 2.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셋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액 환수비율이 저조하고 지자체별로 환수비율의 격차가 크므로 여성가족부의 징수 독려 및 지자체의 계속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7) 여성가족부는 당해연도 양성평등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예산 편성 당시의 직전 3년간 기타경상이전 수납액의 평균치 등을 고려하여 수입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음.
* (편성 예시) '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은 '23년도의 직전 3년간(20~22년) 기타경상이전 수납액의 평균치 등을 고려하여 수입예산안 요구

연도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 건수는 2022년과 2023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23년 여전히 666건에 달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환수비율은 2020년 56.3%, 2023년 42.8%로 매우 저조함.

【 연도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환수 결정 사유	소득재산증가	118	540	576	676	485	370
	인적변동	14	35	79	104	155	201
	기타	89	146	114	186	130	95
	계	221	721	769	966	770	666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A)		77	369	399	559	442	503
환수금액(국고+지방비)(B)		58	260	224	389	287	215
환수비율(B/A)		**75.2**	**70.4**	**56.3**	**69.6**	**65.0**	**42.8**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의 경우 광주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비율이 86.4%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전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환수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나 지자체별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비율의 격차가 큼.

【 2023년 지방자치단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지방자치단체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A)	환수금액(B)	환수비율
1	서울	64.9	12.0	18.4
2	부산	68.1	37.8	55.4
3	대구	21.2	6.6	30.9
4	인천	55.2	10.4	18.8
5	광주	19.8	17.1	86.4
6	대전	10.7	7.4	69.2
7	울산	6.8	5.6	82.4
8	경기	127.8	41.7	32.6
9	강원	20.0	2.3	11.3
10	충북	12.9	2.8	21.7
11	충남	53.8	32.4	60.2
12	전북	3.6	2.6	72.2
13	전남	4.0	0.8	20.0
14	경북	10.5	4.9	46.4
15	경남	18.9	8.9	46.8
16	제주	5.3	2.5	46.7
17	세종	0	0	0
	계	503	215	42.8

주: 2024. 2.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예산편성시 지원인원이 과다 산정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인원, 지원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는 사업대상이 한부모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편성되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계획현액 52억 500만원 중 50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6.1%임.

【 2023년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5,205	5,205	-	5,205	5,002	203	3,303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3,786	3,786	-	3,786	3,786	-	2,852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1,318	1,318	-	1,318	1,121	197	-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101	101	-	101	95	6	451

자료: 여성가족부

나)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청소년[168]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37억 8,600만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음.

【 2023년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5,205	5,205	-	5,205	5,002	203	3,303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3,786	3,786	-	3,786	3,786	-	2,852

자료: 여성가족부

16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8. (생략)

2023년 지방자치단체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35만원[169],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였음.

먼저 2021년~2023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률은 67.0%(2021년) → 68.2%(2022년) → 76.5%(2023년)로 예산집행실적이 매년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조함. 2023년의 경우 예산액이 전년 대비 11억 2,700만원 감액 편성 〔49억 1,300만원(2022년) → 37억 8,600만원(2023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 9,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1년~2023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1년	5,006	5,006	5,006	5,006	5,006	3,354	-	1,652	67.0
2022년	4,913	4,913	4,765	4,765	4,765	3,351	-	1,414	68.2
2023년	3,786	3,786	3,786	3,786	3,786	2,895	-	891	76.5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주요 원인은 아동양육비 목표인원과 자립촉진수당 목표가구가 매년 과다하게 산정되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임.

169)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예산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에 아동 1인당 월 15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1년~2023년 아동양육비의 경우 과다산정된 목표인원이 1,091명(34.1%) → 1,086명(37.8%) → 983명(37.5%)으로 매년 목표인원의 35% 정도가 과다 편성되었고,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과다산정된 목표가구가 198가구(55.5%)→297가구(83.2%)→86가구(54.8%)로 매년 목표가구의 절반 이상이 과다 편성되었음.

【 2021년~2023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지원내역 】

(단위: 명, 가구, %)

사업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청소년 한부모 복지 급여	아동 양육비	목표인원(A)	3,199	2,871	2,622
		지원인원(B)	2,108	1,785	1,639
		과다 편성인원(A-B)	1,091	1,086	983
		과다 편성율(A-B/A)	34.1	37.8	37.5
	자립 촉진 수당 등	목표가구(C)	357	357	157
		지원가구(D)	159	60	71
		과다 편성가구(C-D)	198	297	86
		과다 편성율(C-D/C)	55.5	83.2	54.8

자료: 여성가족부

다음, 2021년~2023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비의 경우 실제 지원액 및 지원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되었고,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지원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바, 지원대상(수요)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임.

【 2021년~2023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가구, %)

사업	구분		2021년	2022년(A)	2023년(B)	증감 (B-A)	증감율 B-A/A
청소년 한부모 복지 급여	아동 양육 비	지원액	3,149	3,214	2,810	△404	△12.6
		지원인원	2,108	1,785	1,639	△146	△8.2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지원단가	월 350,000원	월 350,000원	월 350,000원	-	-
	자립 촉진 수당 등	지원액	205	137	113	△24	△17.5
		지원가구	159	60	71	△11	△18.3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지원단가	월 100,000원	월 100,000원	월 100,000원	-	-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예산편성시 지원인원이 과다 산정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인원, 지원액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를 다른 사업으로 이관 검토 필요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는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침 제작, 회의 및 사업추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음[170].

2023년 계획현액 1억 100만원 중 9,5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4.1%임.

【 2023년도 한부모가족 정책 연구 및 홍보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5,205	5,205	5,205	5,002	-	203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101	101	101	95	-	6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제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 사례비, 한부모가족 연구용역비 등 한부모가족

170) 2023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101백만원)
- (내용) 한부모 연구용역 50백만원, 사업홍보 비용 51백만원
- (산출) 일반수용비: 지침 제작 1건 41백만원, 회의비 등 25건 250천원=47백만원
사업추진비: 자문회의비 164명×25천원=4백만원
일반연구비: 1건×50백만원=50백만원

과 관련된 비용으로 집행되었고 청소년한부모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일부 집행되었음.

【 2023년도 한부모가족 정책 연구 및 홍보 집행내역 】

(단위 : 원)

예산비목	집행일	집행액	집행내역
일반수용비 (210-01)	2023-03-10	36,520,000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제작 계약 대금지급
	2023-02-03	900,000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사전 행정행위 관련 법률 자문 사례비 지급 요청
	2023-02-22	400,000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관련 사례비 지급
	2023-03-08	400,000	여성가족부 공개청원 공개여부 심의 관련 사례비 지급
	2023-04-12	600,000	법률자문료 지출 요청
	2023-04-19	500,000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관련 사례비 지급
	2023-04-19	600,000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사전 행정행위 관련 양육비이행법령 개정안 마련 자문료 지급
	2023-04-20	300,000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비 지급
	2023-04-20	400,000	대지급 도입연구 간담회 사례금 지급
	2023-06-21	500,000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관련 사례비 지급
	2023-06-22	900,000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설치 필요성 법률자문 사례비 지급
	2023-07-24	300,000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심의 사례비 지급(한부모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체계 개선 연구)
	2023-09-11	500,000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관련 사례비 지급
	2023-09-27	900,000	양육비이행법 관련 법률자문 사례비 지급
	2023-10-19	500,000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관련 사례비 지급

(단위 : 원)

예산비목	집행일	집행액	집행내역
사업추진비 (240-01)	2023-01-25	1,000,0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관서운영경비 교부요청
	2023-04-19	1,000,0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관서운영경비 교부요청
	2023-06-12	2,109,0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관서운영경비 교부요청
	2023-13-10	-271,0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관서운영경비 교부요청
일반연구비 (260-01)	2023-09-11	14,000,000	한부모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체계 개선 연구 계약 선급금 지급
	2023-12-18	6,000,000	한부모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체계 개선 연구 계약 대금지급
	2023-12-20	26,909,090	대금지급 요청(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사전연구)
계		94,967,090	

자료: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출부 내용 중 일부

이와 같이 청소년한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에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 청소년한부모 지원 사업의 예산규모, 실집행내역, 성과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 사업에는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양성평등기금 2331-43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양성평등기금 2331-433)에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코드	세부사업명	예산(계획) 현액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 현황	사업대상
양성평등기금	2331-43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95,900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금융조회 우편요금, 신고포상금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한부모가족
	2331-43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5,205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청소년 한부모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는 사업대상이 한부모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편성되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가족센터 평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센터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적정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① 지원대상 과다산정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실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②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고, ③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정산 및 반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가족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사회복무요원배치지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계획현액 1,081억 3,200만원 중 1,074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7,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4억 7,3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4%임.

【 2023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07,953	107,953	179	108,132	107,480	179	473	146,131
· 가족센터 운영	52,637	52,637	-	52,637	52,389	-	248	91,523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0,437	10,437	-	10,437	10,327	-	110	11,813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7,630	37,630	-	37,630	37,619	-	11	33,873
·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127	127	-	127	127	-	-	247
·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5,532	5,532	-	5,532	5,532	-	-	5,644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903	903	-	1,082	856	179	47	703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687	687	-	687	630	-	57	2,328

주: 다음연도이월액 179백만원은 다문화사회통합전력 연구의 연구기간 연장으로 이월된 금액임.
자료: 여성가족부

나) 가족센터 평가 적정 비목 편성 필요

‘가족센터 평가’는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4억원 중 3억 3,600만원이 집행되고 6,400만원이 불용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84.0%임.

【 2023년도 가족센터 운영의 가족센터 평가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가족센터 운영	52,637	52,637	52,389	49,468	-	2,921
-가족센터 평가	400	400	336	336	-	64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가족센터의 개별 사업을 매년 평가하였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가족센터의 운영 및 사업을 3년마다 평가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평가 업무를 위탁하였음.

【 가족센터 평가 사업 개요 】

○ (목적)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사전평정(서면) 및 현장평가

○ (예산) 400백만원(2023)

○ (연혁)

- 2004 ~ 2010년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각 개별 사업에 대해 매년 연도별 평가 실시
- 2014년 : 3개년('11년~'13년) 평가 실시(서면, 현장)
- 2017년 : 3개년('14년~'16년) 평가 실시(서면, 현장)
- 2020년 : 3개년('17년~'19년) 평가 실시(서면, 현장)
- 2023년 : 3개년('20년~'22년) 평가 실시(서면, 현장)

○ (평가주기) 3년 주기

○ (평가결과 활용) 가족센터 우수사례 공유, 온·오프라인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센터의 역량 강화 제고 노력

- 평가 결과 우수한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 미흡한 가족센터는 차년도에 컨설팅 실시

○ 사업방식 : 민간위탁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도록 하고,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연구비(260-01)·민간위탁사업비(320-02) 집행지침 】

구분	일반연구비(260-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세목 (내역)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비목별 지침	6-1. 일반연구비(260-01목) 가. 적용범위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10-1. 적용범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소관)」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 10-2. 일반지침 ○ 민간위탁의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지휘·감독, 사무편람, 처리 상황의 감사 등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3. 세부지침 가. 사업자 선정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한다.

즉, 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이어야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소관)」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가 있어야 함.

그런데 가족센터 평가는 법률에 규정된 사무가 아니고, 개별 법령[171]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센터 평가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보임.

가족센터 평가는 여가부장관이 가족센터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민간위탁사업비(320-02)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향후 가족센터 평가 및 그 업무 위탁의 근거 유무에 따라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171) 평가 관련 유사입법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보조금 정산·반납 관리·감독 필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방문교육, 언어발달 및 통·번역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학습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등 6개의 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 여성가족부는 계획현액 376억 3,000만원 중 376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여 여성가족부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7%임.

【 2023년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07,953	107,953	179	108,132	107,480	179	473	146,131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7,630	37,630	-	37,630	37,619	-	11	33,873

자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지원대상 과다 산정 등으로 실집행률 저조, 보조금 과다 교부,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의 기한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지원대상 과다 산정, 수요 부족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므로 여성가족부는 향후 실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1년~2023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계획액(교부액,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92.2%(2021년) → 86.4%(2022년) → 82.1%(2023년)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376억 1,900만원 중 308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67억 3,300만원을 불용하여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임.

【 2021년~2023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당초	수정(A)						
2021	33,033	33,033	33,018	33,018	33,018	30,455	2,563	92.2
2022	35,042	35,042	35,028	35,028	35,028	30,281	4,747	86.4
2023	37,630	37,630	37,619	37,619	37,619	30,886	6,733	82.1

자료: 여성가족부

2022·2023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예산이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는데 실제 지원액은 전년 대비 2.0%만 증가하였고, 계획인원은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는데, 실제 지원인원은 3.4% 증가하였음.

사업별 실적을 보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학습지원은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한 반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등 다른 사업은 지원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적어 사업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한 편으로 보임.

【 2022·2023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가구)

구분		수정계획액(A)	지원액 (B)	계획인원 C)	지원인원 (D)	B-A	D-C
2022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6,196	12,795	15,687	13,190	△3,401	△2,497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5,444	4,642	7,427	7,367	△802	△60
	다문화가족사례관리지원(가구)	3,542	3,367	4,162	4,038	△175	△12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757	4,595	497,585	512,814	△162	15,229
	이중언어 학습지원	2,892	2,725	15,743	17,921	△167	2,178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211	2,157	21,596	20,531	△54	△1,065
	계(A)	35,042	30,281	562,200	575,861	△4,761	13,661
2023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16,471	12,272	13,585	12,289	△4,199	△1,296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6,201	4,759	7,588	6,626	△1,442	△962
	다문화가족사례관리지원(가구)	3,903	3,585	4,159	4,106	△318	△53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5,383	4,976	528,198	533,267	△407	5,069
	이중언어 학습지원	3,461	3,139	18,458	21,246	△322	2,788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211	2,155	21,146	17,959	△56	△3,187
	계(B)	37,630	30,886	593,134	595,493	△6,744	2,359
증감(B-A)		2,588	605	30,934	19,632	△1,983	△11,302
증감률(B-A/A)		7.4	2.0	5.5	3.4	△5	△2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결혼 감소 등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이 감소하였고, 언어발달 지연 아동 증가로

언어발달지도사의 민간 치료기관으로의 이직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이 감소하여 실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둘째, 여성가족부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72]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교부·집행 현황을 보면,

---

17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여성가족부는 보조금의 최종(4차)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교부한 결과, 최종(4차) 교부액 전액을 불용한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14개(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2년 11개(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달함.

【 2023년도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교부·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시·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당초	수정(A)		1차	2차	3차	4차	계				
서울	2,724	2,724	2,724	0	1,907	544	273	2,724	2,724	1,928	796	70.8
부산	1,877	1,877	1,877	563	750	376	188	1,877	1,877	1,605	272	85.5
대구	1,564	1,564	1,564	469	626	312	157	1,564	1,564	1,507	57	96.4
인천	2,046	2,046	2,046	614	818	410	204	2,046	2,046	1,657	389	81
광주	1,040	1,040	1,040	312	416	208	104	1,040	1,040	978	62	94
대전	1,035	1,035	1,035	310	414	208	103	1,035	1,035	934	101	90.2
울산	1,053	1,053	1,053	316	422	210	105	1,053	1,053	894	159	84.9
세종	249	249	249	75	100	50	24	249	249	220	29	88.4
경기	6,024	6,024	6,024	1,807	2,410	1,204	603	6,024	6,024	4,936	1,088	81.9
강원	2,151	2,151	2,151	645	860	430	215	2,150	2,151	1,671	480	77.7
충북	1,873	1,873	1,873	562	750	374	187	1,873	1,873	1,505	368	80.4
충남	2,495	2,495	2,495	748	998	498	251	2,495	2,495	1,805	690	72.3
전북	2,679	2,679	2,679	804	1,072	536	267	2,679	2,679	2,209	470	82.5
전남	3,686	3,686	3,685	1,106	1,474	738	368	3,686	3,685	3,269	416	88.7
경북	3,305	3,305	3,305	992	1,322	662	329	3,305	3,305	2,659	646	80.5
경남	3,217	3,217	3,217	965	1,286	644	322	3,217	3,217	2,574	643	80
제주	602	602	602	180	240	120	62	602	602	535	67	88.9
유보액	10	10										
계	37,630	37,630	37,619	10,468	15,865	7,524	3,762	37,619	37,619	30,886	6,733	82.1

자료: 여성가족부

【 2022년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교부·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시·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당초	수정(A)		1차	2차	3차	4차	계				
서울	2,528	2,528	2,528	1,011	506	758	253	2,528	2,528	1,950	578	77.1
부산	1,788	1,788	1,788	715	358	536	179	1,788	1,788	1,600	188	89.5
대구	1,478	1,478	1,478	591	296	443	148	1,478	1,478	1,413	65	95.6
인천	1,877	1,877	1,877	751	375	563	188	1,877	1,877	1,575	302	83.9
광주	990	990	990	396	198	297	99	990	990	951	39	96.1
대전	963	963	963	385	192	289	97	963	963	908	55	94.3
울산	998	998	998	399	200	299	100	998	998	922	76	92.4
세종	192	192	192	77	38	58	19	192	192	183	9	95.3
경기	5,709	5,709	5,709	2,283	1,142	1,713	571	5,709	5,709	4,855	854	85.0
강원	2,046	2,046	2,046	818	409	614	205	2,046	2,046	1,802	244	88.1
충북	1,814	1,814	1,814	726	363	544	181	1,814	1,814	1,467	347	80.9
충남	2,300	2,300	2,300	920	460	690	230	2,300	2,300	1,856	444	80.7
전북	2,476	2,476	2,476	990	495	743	248	2,476	2,476	2,135	341	86.2
전남	3,363	3,363	3,363	1,345	673	1,009	336	3,363	3,363	3,162	201	94.0
경북	3,118	3,118	3,118	1,247	624	935	312	3,118	3,118	2,587	531	83.0
경남	2,868	2,868	2,868	1,147	574	860	287	2,868	2,868	2,483	385	86.6
제주	520	520	520	208	104	156	52	520	520	432	88	83.1
유보액	14	14										
계	35,042	35,042	35,028	14,009	7,007	10,507	3,505	35,028	35,028	30,281	4,747	86.4

자료: 여성가족부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에는 교부액(376억 1,900만원)의 17.9%(67억 3,300만원), 2022년에는 교부액(350억 2,800만원)의 13.6%(47억 4,700만원)를 불용하였음.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이 관

련 법령에 따라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17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첨부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74] 제2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보고 및 잔액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정산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5개(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2022년 3개(서울, 충북, 충남), 2023년 2개(서울, 경북)로 나타났음.

---

1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17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9개, 2022년 사업 12개에 달함.

특히 2021년 사업의 집행잔액은 2022년까지 반납되어야 함에도 2024년 5월말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2개(충남, 전남)이고, 2022년 사업의 집행잔액은 2023년까지 반납되어야 함에도 2024년 5월말까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8개(서울, 부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달함.

【최근 3년간 시·도별 정산보고·잔액반납 현황(2024. 5.31.기준)】

피보조 기관명	2021년 사업		2022년 사업		2023년 사업	
	정산보고기한 (2022.3.31.)	집행잔액반납기한 (2022.12.31.)	정산보고기한 (2023.3.31.)	집행잔액반납기한 (2023.12.31.)	정산보고기한 (2024.3.31.)	집행잔액반납기한 (2024.12.31.)
서울	**2022.05.20.**	2022.11.18.	**2023.06.20.**	**징수중**	**2024.06.12.**	-
부산	2022.02.04.	2022.12.16.	2023.03.10.	**징수중**	2024.02.29.	-
대구	2022.02.07.	2022.11.16.	2023.02.13.	**2024.01.05.**	2024.03.14.	-
인천	2022.03.04.	2022.12.09.	2023.02.15.	2023.12.27.	2024.03.25.	-
광주	2022.02.08.	2022.12.26.	2023.02.09.	2023.12.27.	2024.02.05.	-
대전	2022.02.11.	**2023.01.04.**	2023.02.27.	2023.12.28.	2024.03.06.	-
울산	2022.02.23.	2022.12.29.	2023.02.10.	2023.12.28.	2024.02.21.	-
세종	2022.03.11.	**2023.08.23.**	2023.03.24.	**징수중**	2024.02.28.	-
경기	**2022.04.08.**	**2023.01.06.**	2023.03.29.	**2024.04.02.**	2024.03.28.	-
강원	2022.03.14.	**2023.01.10.**	2023.03.06.	**징수중**	2024.03.27.	-
충북	2022.03.31.	**2023.05.03.**	**2023.04.03.**	**2024.04.05.**	2024.03.14.	-
충남	**2022.04.13.**	**징수중**	**2023.04.18.**	**징수중**	2024.03.20.	-
전북	**2022.05.03.**	**2024.05.08.**	2023.03.06.	**징수중**	2024.02.29.	-
전남	**2022.04.18.**	**징수중**	2023.03.28.	**징수중**	2024.03.29.	-
경북	2022.02.25.	2022.12.28.	2023.02.24.	**2024.02.05.**	**2024.04.08.**	-
경남	2022.02.21.	**2023.11.24.**	2023.02.23.	**징수중**	2024.02.29.	-
제주	2022.03.17.	2022.10.19.	2023.03.24.	2023.10.31.	2024.03.29.	-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미반납의 주요 원인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반납을 위한 추경예산[175] 확보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2021년·2022년 보조금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4. 5. 31. 기준 2021년과 2022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액은 28억 5,000만원에 달하고, 이 중 충남 26.9%, 서울 20.3%, 경남 13.5%, 전북 12.0%, 전남 11.7%이므로,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음.

【 2021년·2022년 보조금 반납 현황(2024. 5.31.기준) 】

(단위: 천원, %)

시·도	2021년		2022년		미반납액	
	반납액(이자 등 포함)	미반납액 (A)	반납액(이자 등 포함)	미반납액 (B)	(A+B)	비중
서울	281,564	-	-	578,459	578,459	20.3
부산	34,143	-	-	190,498	190,498	6.7
대구	28,875	-	64,788	-	-	-
인천	193,371	-	302,693	-	-	-
광주	28,080	-	42,514	-	-	-
대전	60,231	-	56,385	-	-	-
울산	86,576	-	76,768	-	-	-
세종	9,235	-	-	9,102	9,102	0.3
경기	315,660	-	854,803	-	-	-
강원	204,973	-	-	244,666	244,666	8.6
충북	175,918	-	352,527	-	-	-
충남	-	320,843	-	446,861	767,704	26.9
전북	172,142	-	-	342,373	342,373	12.0
전남	-	131,120	-	201,968	333,088	11.7
경북	247,596	-	532,533	-	-	-
경남	239,055	-	-	385,049	385,049	13.5
제주	41,085	-	90,883	-	-	-
계	2,118,504	451,963	2,373,894	2,398,976	2,850,939	100.0

자료: 여성가족부

175)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수령 계정과 반납 계정이 서로 다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불용액만큼 차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차년도 3월까지 정산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납하므로 추경편성 이전에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다음해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임.

Ⅳ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Ⅳ.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개요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일부를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22조[176]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의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음.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목적예비비)는 이와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특별회계의 경우,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법률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국가재정법」제51조제4항[177]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예비비를 전입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51조·제52조[178]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176)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77)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178)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장은 예비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함.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비비 지출 현황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에 총 151억 7,700만원이 배정되어 청소년국제교류지원에 151억 4,000만원(99.7%)을 집행하였음.

여성가족부는 일반예비비를 총 2차에 걸쳐 배정하였으며,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내역사업인 '2023 세계잼버리 지원'사업의 폭염 대비 물품·의료 물자 지원 등에 1차 예비비 6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태풍 카눈으로 인한 잼버리 참가자 비상대피 후 지자체 체류 및 프로그램 비용 보전을 위하여 2차 예비비 8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예비비 사용 명세 】

(단위: 백만원)

유형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내역사업명)	지출사유	지출 결정액	지출액	자금 배정일	이월 액	불용 액
일반 예비비	청소년국제교류지원 (2254-542) (2023세계잼버리지원)	잼버리 행사의 안전한 운영과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지원	6,901	6,901	2023. 8.4	-	-
	청소년국제교류지원 (2254-542) (2023세계잼버리지원)	태풍 카눈으로 인한 잼버리 참가자 비상대피 후 지자체 체류 및 프로그램 비용 보전	8,277	8,239	2023.9.22	-	37
	소계		15,177	15,140		-	37
	< 일반회계>		15,177	15,140		-	37

주: 백만원 단위 반올림에 따라 예비비 총액과 예비비 각 내역의 합계 수치에 차이가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자인 사업수행기관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1차 예비비 지출액 69억 100만원을 교부받아 22억 9,400만원(실집행률 33.2%)을 집행하였고, 8개 시·도[179]에서 2차 예비비 지출액 82억 3,900만원을 교부받아 81억 700만원(실집행률 98.4%)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사업수행기관별 예비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비목	배정일자	배정액	집행액 (A)	사업수행기관 실집행내역		
				수행기관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100)
민간경상보조 (320-01)	8. 4.	6,901	6,901	조직위원회	2,294	33.2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9. 22.	8,277	8,239	8개 시도	8,107	98.4
소 계		15,177	15,140		10,401	68.7

자료: 여성가족부

179) 8개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V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Ⅴ.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요약

□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18건)

(2024년 6월말 기준)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 기타 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 제고방안 강구	주의	조치완료
(2)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총사업비 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3) 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의 체계적 관리 필요	주의	조치중
(4) 신청률 제고 및 연초 조기 신청 유도 위한 홍보 강화	제도개선	조치중
(5) 철저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유지 관리 필요	주의	조치중
(6) 실집행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 예산투명성 확보 및 아이돌보미의 체계적 관리·감독 필요	주의	조치중
(8)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안정적 운영 위한 인력·예산 관리체계 구축	제도개선	조치완료
(9)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정보역량 강화	주의	조치완료
(10) 사업 진행 상황 상시 모니터링 필요	주의	조치완료
(11)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율 제고	제도개선	조치완료
(12)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처우 문제 등 제도개선	제도개선	조치완료
(13) 성평등 문화추진단 사업 실효성 제고	시정	조치완료
(14) 잼버리 파행 원인규명,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 방안마련	제도개선	조치중
(15) 지자체와 중복지급된 국고보조금 반납(회수)	시정	조치완료
(16) 사업의 낮은 실효성에 따른 사업의 원점 재검토 필요	시정	조치완료
(17) 국고보조금 이월 관리 체계화	제도개선	조치완료
(18)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의 통합 편성	제도개선	조치완료

□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조치결과

□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18건)

(2024년 6월말 기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 기타 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 제고방안 강구	ㅇ [지적사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이 저조하고, 미수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ㅇ 국고보조금 미수납 현재액 현황 등을 연중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에 반납 계획서 징구(2023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채권 회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연체채권을 위탁(2023년 7월 ,9월), 재산조회 실시 등 미수납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음 - 특히, 2023년부터 관계 부서장의 성과평가 시 '국가채권 회수율'을 지표로 반영하는 등 수납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시행하였음(2023년 1월) ㅇ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조치완료
(2)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총사업비 관리 필요	ㅇ [지적사항] 여성사전시관 건립사업은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비의 증액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	제도개선	ㅇ 중간설계에 대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2023.12.~) - 재검토 종료 시 기재부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재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ㅇ 향후, 사업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사업비 관리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4년 12월	조치중
(3) 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의 체계적 관리 필요	ㅇ [지적사항]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과정 중 일부 과정에서 취업성과가 저조함, 지역별 고부가가치 직종 교육훈련과정은 서울·경기에 편중되어 있음	주의	ㅇ 여성·기업의 수요와 선호도, 미래유망직종 등을 고려한 전문기술·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운영을 통해 취업 인원은 매년 증가 * 취업인원 : (2021) 8,800명 →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ㅇ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취업률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하고, 지방에서의 고부가가치 직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지역기업의 수요에 맞는 과정을 개발할 것		(2022) 8,892명 → (2023) 9,338명 ㅇ 2024년에는 2023년 실시한 '지역별 경력단절여성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발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산업 기반 유망직종 과정' 개발·운영 - 10개 과정 선정(2024.4월) 및 개발 완료(2024.7월) ㅇ 조치완료일 : 2024년 7월	
(4) 신청률 제고 및 연초 조기 신청 유도 위한 홍보 강화	ㅇ [지적사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인원이 취약계층 만 11~18세에서 취약계층 만 9~24세로 확대되었음에도 신청률이 71.2%로 저조함, 동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것이나, 신청률 저조로 수혜층 혜택 축소가 우려됨. 또한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생리용품 가격이 높은 편이고, 지역별 신청률 편차가 있어 수혜층의 균등하고 충분한 혜택이 저해될 수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70%대에 머물고 있어 여성청소년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률 제고, 연초 조기 신청을 유도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생리용품의 지급 방식과 지원금의 보완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제도 개선	ㅇ 2023년도 지원 대상자의 신청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 신청률이 전년(71.2%) 대비 약 9%p 상승한 80.1%를 달성하였음 ㅇ 2024년에도 조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교, 청소년시설 등 연령별 맞춤형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였으며(지자체에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홍보물 배포 등) -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함에 따라, 2023년 대비 신청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ㅇ 조치예정일 : 2024년 12월	조치중
(5) 철저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유지 관리 필요	ㅇ [지적사항] ①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2019년 완공을 계획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22년, 2023년으로 완공연도를 연장하였음 - 향후 유사한 건립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주의	ㅇ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사업은 2023.6월 준공으로 완료되었으며(2024.7월 개원), - 신규 건립사업인 '국립청소년진로체험수련원' 추진 시 설계, 공사 등 소요기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 공정관리, 총사업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②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사업은 지연이 지속되고 있음 - 사업기간 순연에 따른 자의적인 예산 비목 변경,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및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이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히 관리 및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7년	
(6) 실집행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은 극히 저조함, 2022년도 17개 광역시·도 평균 실집행률은 38.7%에 불과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향후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감액조정하고,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교부액을 조정하는 등 집행관리에 주의할 것	제도 개선	○ 청소년부모 가구수 감소추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2023년에 교부액을 50% 감조정 하였으며, - 지원 물량을 1,500명 감축한 금액으로 2024년 예산을 편성함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7) 예산투명성 확보 및 아이돌보미의 체계적 관리·감독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의 이용요금 유형 '나'형의 경우, 취학 전·후 정부지원 비율의 편차가 다른 유형에 비해 크고, 아이돌봄 신청가구와 지원가구 간 매칭비율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매년 돌봄수당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의 경우, 매년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유형'나'형의 정부지원 비율 차이를 줄이도록 이용요금을 재설계하고 신청가구와 지원가구 간 매칭비율을 높여 돌봄수당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연례적인 돌봄수당에서의 충당을 지양할 것	주의	○ '나'형 취학아동의 정부지원 비율이 낮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나'형 지원비율을 '23년 20%에서 '24년 30%로 10% 상향 ○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4년부터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선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아이돌보미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을 인상(2023년 9,630원 → 2024년 10,110원) - 또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AI·위치정보 기술을 활용한 자동매칭을 제공하고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연계율 제고를 위해 고도화 추진 예정 ○ 그동안 서비스 이용가구 확대에 비해 서비스기관 운영비는 증가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운영비 부족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에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제공기관의 예산집행한도 준수 등 관리감독을 강화 * 세부사업 예산 : (2016~2024년 평균증가율)24.8%, (2024년 전년 대비 증가율)31.9% 서비스제공기관운영예산 : (2016~2024년 평균증가율)13.7%, (2024년 전년 대비 증가율) 4.8%	
(8)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안정적 운영 위한 인력·예산 관리체계 구축	○ [지적사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채권 회수율이 2022년 말 누계기준 12.72%에 불과함 - 구상권 청구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6. 9. 개정)에 근거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채권 회수 제고를 위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배치를 점검하고 동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인력·예산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제도 개선	○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23.2월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양육비이행지원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추가배치 하였음 -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2020.6.9개정, 2021.6.10.시행)을 통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회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회수율 : (2020) 5.05% → (2021) 9.29% → (2022) 12.72% → (2023) 15.36%..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조치완료
(9)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정보역량 강화	○ [지적사항] 위기청소년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추진기간 지연 및 과다한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	주의	○ 동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2차연도 계약기간(2022.12월~ 2023.12월)이 경과되지 않아 예산이 이월됨 - 2022.6월까지인 1차사업이 사업수행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문제*로 연장(2022.12월)되었고, 이에 따라 2차사업 기간도 순연(2022.12월~2023.12월)되어 예산이월이 발생한 것임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 코로나19로 비대면업무 증가에 따라 다른 IT기업의 급격한 인력 확충, 타 부처 차세대사업 다수 동시발주 등 ○ 순연된 2차 사업, 3차 사업은 일정 계획대로 정상추진되어 예정된 시기에 구축사업을 완료함 * (사업완료) 2차 : 2023.12월, 3차 : 2024.6월 ○ 조치완료일 : 2024년 6월 3일	
(10) 사업 진행 상황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지적사항] ① 내역사업인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나, 지원 대상의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원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율 또한 저조하여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임 - 여성가족부는 민간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으로 이월된 예산의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②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73억 9,100백만원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교부하였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66억 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9.4%에 불과함 ③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보조금을 수령한 청소년 동아리 중 증빙자료 누락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동아리에 대해 보조금 747만원(국비 299만원)을 환수한 바 있음 ④ 청소년 꿈누리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은 국고보조를 할 수 없는 지방이양사업인 점을 파악하	주의	○ (수련시설 지원 등) 2023년 사업추진 시 수련시설 및 일선학교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하여 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참여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기간을 단축(15일→7일)하는 등 사업방식을 개선하였음 - 또한, 각급 학교에 직접 사업을 안내하고 교육청 및 청소년 관계기관에 카드뉴스, 배너 및 웹포스터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를 통해 민간수련시설의 참여를 독려하였음 * (2022) 391개 학교, 50,651명→(2023) 1,248개 학교, 178,262명 ○ (동아리 지원)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발생과 관련, 지자체 청소년 동아리활동 보조사업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2023.2월~3월), 부정사용 적발 환수 조치 완료(2023.6월)하였으며 2024년 예산 편성시 사업재검토를 실시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지 못하고 77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2023년으로 이월된 예산에 대해 민간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부 피보조 단체에서 부정 사용 문제가 발생한 점, 보조금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사업개편방안을 검토할 것			
(11)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율 제고	○ [지적사항] 우편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모바일 고지 비율이 31.2%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홍보강화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율을 제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비용 절감 및 수신자 편의를 확대할 것	제도 개선	○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송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성범죄자 알림e 홍보부스 운영(2023.9월) 등 모바일 고지 열람률 제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열람률이 개선되었으며(모바일 열람률 2022년 31.2% → 2023년 35.8%),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비용 절감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음(2023년 예산 4,377백만원 -> 2024년 예산 3,934백만원, △443백만원)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조치완료
(12)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처우 문제 등 제도개선	○ [지적사항]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의 잦은 이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상담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에 대한 처우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 개선	○ 전담상담사 기본급을 전년대비 2.5% 인상하고, 기타 지급 가능 수당에 자격수당을 추가하는 등 처우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추후에도 전담상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조치완료
(13) 성평등	○ [지적사항] 여성정책전략기반구	시정	○ 청년층 남녀의 상호 이해와 공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문화추진단 사업 실효성 제고	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은 정부여당의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에 따라 사업 중단 사태가 발생함, 국회 예산 심의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업 예산이 국회 보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사태에 대해 정부편향 및 중립성 훼손 의혹이 있으며 절차를 무시한 점이 심각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일방적 중단 사태에 대한 경위와 절차를 국회에 보고하고, 2024년 예산안에 청년들의 성평등 문화추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포함할 것		감대를 높이기 위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양성평등센터(6개소)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조직문화, 일자리, 맞돌봄 문화 등 지역별 청년 정책에 대해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2023년~)하였으며, 2024년 예산안에도 해당 내용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14) 잼버리 파행 원인규명,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 방안마련	○ [지적사항]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기본적 생활 지원 시설의 부실 문제로 영국·미국·싱가포르 참가자들의 퇴영과 파행을 초래했음, 국제행사에서 사전점검 행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잼버리 대회의 사전점검 행사(프레젬버리)는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완공(계획: 2022년 5월)이 지연되어 개최되지 못함(부지조성 완료: 2022년 12월), 총 예산 1,171억원의 74%인 870억원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시설비 예산은 130억원에 불과하고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은 2023년 2월까지 설치율이 5%에 불과했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백서 발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조치예정일 : 2024년 12월 ※ 감사원 감사 완료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조치중
(15) 지자체와 중복지급된 국고보조금 반납(회수)	○ [지적사항] 여성가족부 민간단체 보조사업인 2022년 가족소통참여 사업의 피보조기관인 "케이아트팩토리"라는 단체는 보조강사비 260만원을 지원받아 컨소시엄을 맺은	시정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절차 진행(2023.5.~2024.4.)하며 경찰 수사 진행하였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통보(2024.4.3.) 등에 따라 반환명령 취소함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업체 직원에게 지급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자체 보조 외에 별도의 국고보조금 825만원을 이중으로 수령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보조금의 환수 및 후속조치 등을 시행할 것		○ 조치완료일 : 2024년 4월 22일	
(16) 사업의 낮은 실효성에 따른 사업의 원점 재검토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대외협력 강화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계와의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미흡, 수혜자 협소, 국가지원 근거미흡이라는 외부기관 지적이 발생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외부기관 지적,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원점 재검토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시정	○ 해당 사업의 효과성·실효성에 대한 외부기관 지적,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조치완료
(17) 국고보조금 이월 관리 체계화	○ [지적사항] 가족센터건립사업은 최근 4년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실집행률 또한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시 집행가능한 금액만 교부하여 이월액이 누적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제도 개선	○ 예산편성과 지원방식을 개선, 2020년 연차별 균등배분하던 것을, 2021년부터 연차별(2~3년간) 차등배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사업기간을 3년으로 일괄 적용(리모델링은 기존대로 2년) 중에 있음 * 2020년)균등배분→2021년 이후) 차등배분(2년간 4:6, 3년간 2:3:5) ○ 분기별 공정률 점검 및 매월 실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예상되는 지자체 중심으로 예산 교부(매월)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또한 2024년도 각 시·도별 “가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족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월별 사용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지자체의 사용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18)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의 통합 편성	○ [지적사항]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은 일반회계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과 정책목표, 사업수행방식, 사업주체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함 ○ [시정요구사항]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은 일반회계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할 것	제도 개선	○ 2024년 예산안에 청육기금의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과 일반회계의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일반회계)으로 통합 편성함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조치완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여성가족부 2023회계연도 성과관리목표 및 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개)	4	5	33	51

성과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전략목표Ⅰ: 성평등 의식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및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강화	(1) 정책협의 및 평가	①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②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2)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3)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국내협력네트워크 강화	① 여성사전시관
		② 양성평등문화확산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예산)	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5)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예산)	①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프로그램목표Ⅰ-2: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행정지원 강화	(1) 국제네트워크 활성화추진 (예산)	①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②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③ 국제개발협력(ODA)
	(2) 여성·가족정책 의식 확산	① 여성·가족정책 의식 확산
	(3) 정보화추진(정보화)	①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전략목표Ⅱ: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여 여성·아동인권의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1) 아동·여성안전정책 지원	①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④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성과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3)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 기념사업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금)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5)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①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②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③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④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6)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7)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 지원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략목표Ⅲ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목표Ⅲ-1 :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 가족정책 기반구축	① 가족역량강화 지원
		②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아이돌봄지원	① 아이돌봄지원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4) 한부모가족지원(기금)	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 가족서비스지원	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6) 가족친화환경조성	① 가족센터 건립_지역지원계정
		② 가족센터 건립_제주계정
전략목표Ⅳ :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참여·활동 역량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Ⅳ-1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참여·활동 역량 강화	(1)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①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②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 청소년 보호지원	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②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성과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3)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①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4)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등 지원	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②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5) 청소년 체험활동기회확대	① 청소년활동 지원
		②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6) 청소년참여 및 활동 지원	①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②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7)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8)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①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②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③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9) 청소년 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①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2. 2022 ~ 2023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결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부처	2022년				2023년			
	대상 사업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대상 사업수	예산현액 (C)	지출액 (D)	집행률 (D/C)
전체	341	271,565	259,626	95.6	302	327,340	315,375	96.3
고용노동부	61	101,418	90,516	89.3	44	68,599	63,600	92.7
여성가족부	36	11,279	11,130	98.7	35	12,658	12,076	95.4
보건복지부	37	45,863	45,562	99.3	34	45,558	45,362	99.6
중소벤처기업부	23	91,580	91,573	100	23	82,946	82,376	99.3
문화체육관광부	23	3,565	3,522	98.8	23	4,758	4,714	9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3,448	3,448	100	14	2,449	2,449	100.0
농림축산식품부	12	3,738	3,733	99.9	13	4,360	4,345	99.7
해양수산부	13	209	208	99.5	11	167	167	100.0
법무부	10	1,171	1,153	98.5	9	1,236	1,204	97.4
국토교통부	3	288	288	100	8	97,053	91,825	94.6
경찰청	11	1,282	1,216	94.9	8	557	519	93.2
교육부	8	2,024	1,898	93.8	7	2,127	2,125	99.9
외교부	8	598	573	95.8	6	482	471	97.7
농촌진흥청	6	141	140	99.3	6	141	139	98.6
통일부	5	515	502	97.5	5	508	493	97.0
산업통상자원부	6	526	526	100	5	280	280	100.0
문화재청	7	338	322	95.3	5	262	262	100.0
기획재정부	5	182	175	96.2	5	138	116	84.1
행정안전부	9	269	262	97.4	5	134	132	98.5
국방부	4	705	687	97.4	4	826	801	97.0
특허청	5	161	161	100	4	162	162	100.0
국가보훈부	3	516	425	82.4	3	514	432	84.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241	213	88.4	3	276	185	67.0
국민권익위원회	3	1	0	0.0	3	1	0	0.0

부처	2022년				2023년			
	대상 사업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대상 사업수	예산현액 (C)	지출액 (D)	집행률 (D/C)
방위사업청	2	584	580	99.3	2	534	532	99.6
인사혁신처	2	347	344	99.1	2	378	378	100.0
환경부	2	265	195	73.6	2	22	20	90.9
소방청	2	9	9	100	2	11	11	100.0
국가인권위원회	2	2	2	100	2	2	2	100.0
대법원	-	-	-	-	1	76	76	100.0
산림청	1	36	34	94.4	1	53	52	98.1
해양경찰청	1	17	17	100	1	29	28	96.6
질병관리청	1	21	20	95.2	1	17	16	94.1
방송통신위원회	1	16	16	100	1	15	15	100.0
국세청	1	4	4	100	1	4	4	100.0
조달청	1	3	2	66.7	1	3	3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	0	0.0	1	2	1	50.0
국회	1	1	1	100	1	1	1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3	58	57	98.3	-	-	-	-
새만금개발청	1	143	111	77.6	-	-	-	-

자료 :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참고자료] 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 [기획재정부훈령 제518호] 2020. 10. 22., 제정, 2021.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전문평가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①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518호, 2020. 10.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4. 2023년도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목적	2023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목표수	성과 목표 달성수 (달성률)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예산	간접	952	931	97.8%	1	1(10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	간접	28,936	28,936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예산	간접	429,586	330,919	77.0%	1	0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예산	간접	46,786	46,750	99.9%	1	1(100%)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	간접	31,500	31,444	99.8%	1	1(100%)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예산	간접	11,654	11,389	97.7%	1	0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예산	직접	12,030	11,578	96.2%	1	1(100%)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예산	간접	519,043	460,033	88.6%	2	2(1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직접	15,572	15,560	99.9%	1	1(100%)
고용노동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내일센터)	예산	간접	14,154	14,154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균특)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간접	91,694	91,176	99.4%	1	1(10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예산	간접	147,504	146,297	99.2%	1	0
고용노동부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산	간접	25,696	25,684	100.0%	1	1(100%)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다기능기술자)	예산	간접	19,089	19,089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금	간접	324,747	324,272	99.9%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기금	간접	227,025	227,025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	기금	간접	33,488	32,859	98.1%	1	0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기금	간접	21,018	20,600	98.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목적	2023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목표수	성과 목표 달성수 (달성률)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기금	간접	2,301	1,815	78.9%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기금	간접	44,883	41,583	92.6%	1	0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훈련기관지원)	기금	간접	6,845	6,845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기금	간접	64,771	43,448	67.1%	1	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기금	간접	10,021	4,215	42.1%	1	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기금	간접	3,664	3,441	93.9%	1	1(10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지원)	기금	간접	31,001	28,250	91.1%	1	1(100%)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기금	간접	7,100	7,098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기능향상및취업지원(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기금	간접	3,400	3,400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기금	간접	210,693	172,781	82.0%	1	0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보)	기금	간접	887,388	655,434	73.9%	2	2(100%)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기금	간접	401,405	398,366	99.2%	1	0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 사업지원	기금	간접	144,521	144,287	99.8%	1	0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기금	간접	299,232	294,608	98.5%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전문기술과정)	기금	간접	9,239	9,217	99.8%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여성재취업훈련)	기금	직접	4,756	4,756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소규모사업장련)	기금	간접	1,113	1,113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하이테크과정)	기금	간접	7,650	7,650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신중년특화과정)	기금	간접	4,798	4,798	100.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목적	2023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목표수	성과 목표 달성수 (달성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기금	간접	95,559	78,953	82.6%	1	1(10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기금	간접	10,307	9,314	90.4%	1	1(10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기금	직접	11,616	11,179	96.2%	1	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기금	직접	172,567	172,075	99.7%	1	0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기금	직접	12,165	12,165	100.0%	1	1(100%)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기금	직접	2,288,682	2,261,495	99.7%	2	1(50%)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기금	간접	19,295	19,101	99.0%	1	0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지원	기금	간접	28,004	27,948	99.8%	1	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예산	간접	37,061	37,061	100.0%	1	1(10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취업장려금 지급)	예산	간접	5,907	4,733	80.1%	1	1(100%)
국가보훈부	취업지원	예산	간접	2,908	2,800	96.3%	1	0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	예산	간접	10,017	8,935	89.2%	1	0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복지일자리)	예산	간접	3,776	3,719	98.5%	1	1(100%)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예산	간접	1,520	1,519	99.9%	1	1(100%)
특허청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IP 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나래 프로그램)	예산	간접	12,470	12,459	99.9%	1	1(100%)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예산	간접	1,994	1,842	92.4%	1	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육성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	간접	4,958	4,958	100.0%	1	1(100%)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예산	간접	16,247	16,247	100.0%	1	1(100%)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립박물관 전문인력지원)	예산	간접	3,878	3,878	100.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목적	2023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목표수	성과 목표 달성수 (달성률)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예산	간접	4,000	4,000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예산	간접	500	500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기금	간접	11,814	11,533	97.6%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MICE산업육성지원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금	간접	355	355	100.0%	1	1(100%)
문화체육 관광부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은퇴선수(선수진로)지원)	기금	간접	1,548	1,548	100.0%	1	0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력 육성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기금	간접	9,833	9,772	99.4%	1	1(100%)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예산	간접	620,055	620,055	100.0%	1	1(100%)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	간접	207,299	199,304	96.1%	1	1(100%)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예산	간접	19,551	18,734	95.8%	1	0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자율)	예산	간접	208,992	208,992	100.0%	1	0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	간접	497,354	493,911	99.3%	1	1(100%)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기금	간접	34,734	32,813	94.5%	1	0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	직접	74,355	74,196	99.8%	2	2(100%)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기금	간접	12,865	12,846	99.9%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예산	간접	34,518	34,518	100.0%	1	0
농림축산 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예산	간접	8,000	8,000	100.0%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예산	간접	12,722	12,722	100.0%	1	1(100%)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예산	간접	2,896	2,896	100.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목적	2023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목표수	성과 목표 달성수 (달성률)
산업통상 자원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예산	간접	1,998	1,998	100.0%	1	1(100%)
산업통상 자원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 마련(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예산	간접	18,091	18,091	100.0%	1	0
산업통상 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 태계조성촉진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예산	간접	1,020	1,020	100.0%	1	1(100%)
산업통상 자원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 태계조성촉진사업 (바이오인력양성)	예산	간접	2,021	2,021	100.0%	1	1(100%)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R&D)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 여확산기반구축(R&D))	기금	직접	1,995	1,995	100.0%	3	3(100%)
해양수산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예산	간접	5,250	5,250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예산	간접	305	305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 강화(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예산	간접	190	190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 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 급기반 강화)	예산	간접	360	360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 원(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간접	417	417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여성기업육성	예산	직접	10,105	10,105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예산	간접	10,347	10,347	100.0%	1	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예산	간접	388,910	388,910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재기지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	간접	16,846	16,846	100.0%	1	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예산	간접	3,686	3,686	100.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목적	2023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목표수	성과 목표 달성수 (달성률)
중소벤처 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예산	간접	6,796	6,796	100.0%	2	2(100%)
중소벤처 기업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	예산	간접	30,750	30,750	100.0%	1	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지원))	예산	간접	9,563	9,563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기금	간접	25,625	25,625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금	간접	5,000	4,487	89.7%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기금	간접	2,330,000	2,330,000	100.0%	2	2(100%)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기금	간접	98,075	97,099	99.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	기금	간접	423,000	423,000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연수사업	기금	간접	42,729	42,542	99.6%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기금	간접	8,916	8,765	98.3%	1	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DB산업 육성(정보화) (데이터청년인재양성)	예산	간접	2,091	2,091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재활용확산지원(R&D)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예산	간접	14,985	14,985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미래앞장감양성 (중소벤처기업 재직 전문가 양성 지원)	예산	간접	700	700	100.0%	1	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ICT 창의기업 육성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금	간접	2,904	2,904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정보화)(개발자기술교육)	기금	간접	1,058	1,058	100.0%	1	1(100%)

[참고자료] 5. 2023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부 처	성과목표 수(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합 계	383	304	79	79.4
고용노동부	60	41	19	68.3
여성가족부	51	47	4	92.2
보건복지부	39	26	13	66.7
문화체육관광부	30	27	3	90.0
중소벤처기업부	26	20	6	7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13	3	81.3
경찰청	13	10	3	76.9
해양수산부	13	11	2	84.6
농림축산식품부	13	9	4	69.2
법무부	11	9	2	81.8
기획재정부	10	9	1	90.0
국방부	9	7	2	77.8
농촌진흥청	8	5	3	62.5
교육부	8	7	1	87.5
국토교통부	8	7	1	87.5
산업통상자원부	8	7	1	87.5
외교부	6	5	1	83.3
행정안전부	5	5	-	100.0
통일부	5	5	-	100.0
문화재청	5	2	3	40.0
방위사업청	5	5	-	100.0
국가보훈부	4	2	2	50.0
국민권익위원회	4	1	3	25.0
특허청	4	4	-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2	1	66.7
산림청	2	2	-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2	-	100.0
환경부	2	1	1	50.0
인사혁신처	2	2	-	100.0
국가인권위원회	2	2	-	100.0
소방청	2	2	-	100.0
국회	1	1	-	100.0
방송통신위원회	1	1	-	100.0
국세청	1	1	-	100.0
조달청	1	1	-	100.0
해양경찰청	1	1	-	100.0
질병관리청	1	1	-	100.0
대법원	1	1	-	100.0

자료: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재구성

[참고자료] 6. 2023년도 성인지 성과목표 10개 이상 부처의 달성률

(단위: 개, %)

연번	부처	사업 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달성률
			예산	기금	계	
1	기획재정부	5	3/3	6/7	9/10	90.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5/6	8/10	13/16	81.3
3	법무부	9	6/6	3/5	9/11	81.8
4	문화체육관광부	23	17/18	10/12	27/30	90.0
5	농림축산식품부	13	7/11	2/2	9/13	69.2
6	보건복지부	34	21/33	5/6	26/39	66.7
7	고용노동부	44	17/23	24/37	41/60	68.3
8	여성가족부	35	27/29	20/22	47/51	92.2
9	해양수산부	11	11/13	0/0	11/13	84.6
10	중소벤처기업부	23	12/15	8/11	20/26	76.9
11	경찰청	8	10/13	-	10/13	76.9

자료 :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참고자료] 7. 2023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번호	‘매우 우수’ 사업			‘미흡(25개)’ 및 ‘매우 미흡(1개)’ 사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고용노동부 (매우 미흡)	고용창출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2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성고충전문 상담관 운영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3	국방부	보건복지지원	양성평등담당관 활동	기획재정부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4	국방부	일반지원시설	여군 근무여건 개선(편의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공감·국민 참여 R&SD 선도사업(R&D)	
5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출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 개발원수입대체경비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6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콘텐츠성평등센터 운영
7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정책지원	공정환경사업(한국영화성평등센터 운영지원)
9	여성가족부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보건복지부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10	여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11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 촉진	
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일반)	
1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14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고보)	
15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양육비이행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훈련 기관지원
16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1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예방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18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사혁신처	교육과정운영	
19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운영	청탁금지제도 운영지원(전문가 자문료 등)
20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 여성지원사업		국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국세청 가족교실 운영
21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경찰청	사회적약자보호활동	APO시스템유지보수

번호	‘매우 우수’ 사업			‘미흡(25개)’ 및 ‘매우 미흡(1개)’ 사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2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경찰청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이버범죄예방교육 강의 콘텐츠
2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활성화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 의제 확산
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2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위원회 운영
26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질병관리청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여성건강기반 기술개발연구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자료] 8.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세부사업명	목적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목표 (달성여부)	비고*
예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내역사업)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직접	275	251 (92.7)	100.0 (100.0)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달성)	
	(내역사업)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KGEF)	직접	325	312 (96.0)	49.8 (69.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참가자 수(명) (달성)	
예산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ODA)	직접	8,266	8,266 (100.0)	- (-)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 (달성)	
예산	국제개발협력(ODA)	직접	876	760 (86.8)	94.2 (74.5)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 (달성)	
예산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직접	1,930	1,811 (93.8)	50.2 (50.2)	여성가족정책 온라인 관심도(명) (달성)	
예산	여성정책전략 기반구축	직접	362	286 (79.0)	50.2 (50.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률(%) (달성)	
예산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직접	4,407	4,158 (94.3)	(성별영향평가 교육) 49.2 (72.5) (성인지예결산 교육) - (75.3)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 반영률(%) (달성)	
예산	양성평등문화확산						
	(내역사업) 양성평등주간	직접	93	86 (92.8)	49.8 (49.8)	양성평등주간 행사참여자 수(명) (달성)	
	(내역사업) 공모사업 단체지원 및 대외협력 강화	직접	342	306 (89.4)	49.8 (49.8)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확대 공모 사업 추진단체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달성)	

구분	세부사업명	목적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목표 (달성여부)	비고*
예산	여성사전시관	직접	4,345	567 (13.1)	49.8 (49.8)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명) (달성)	
예산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지원	직접	11,669	11,613 (99.5)	(성인지 정책과정) 48.8 (56.9)	교육인원(명) (달성)	
					(성별영향 평가과정) 48.8 (63.6)		
					(전문인력 양성과정) 48.8 (65.0)	교육 효과성 지수(점) (달성)	
					(사이버교육) 48.8 (54.0)		
예산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 참여 확대	직접	686	670 (97.7)	100.0 (100.0)	여성인재 DB 활용도(%) (달성)	
예산	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직접	4,147	3,885 (93.7)	(성인권 교육 운영) 50.0 (50.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인식개선 수준(점) (달성)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운영) 49.4 (58.7)		
예산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직접	784	765 (97.6)	-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건수(회) (달성)	
예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내역사업)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직접	1,001	822 (82.1)	58.5 (74.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건수) (달성)	

구분	세부사업명	목적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목표 (달성여부)	비고*
예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직접	6,116	5,769 (94.3)	- (-)	성범죄자 정보제공 효과성(점) (달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전·후 성의식 교육 효과성 향상도(%) (달성)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만족도(점) (달성)	
예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직접	12,817	12,817 (100.0)	100.0 (100.0)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미달성)	
예산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운영지원						
	(내역사업) 청소년지도사 양성사업	직접	351	351 (100.0)	71.3 (48.2)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이수자 수(명) (미달성)	
예산	청소년활동 지원	간접	3,825	3,775 (98.7)	48.2 (50.7)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특정 성 참여비(%) (달성)	
예산	가족역량강화 지원	직접	7,121	7,121 (100.0)	50.0 (50.0)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가족기능 향상률(%) (달성)	
예산	가족서비스 기반 구축						
	(내역사업)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	직접	2,070	2,070 (100.0)	50.0 (50.0)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 수(개) (달성)	
예산	아이돌봄지원	직접	354,613	354,509 (100.0)	48.7 (48.7)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가구) (달성)	
예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내역사업) 가족친화지원사업	직접	572	572 (100.0)	- (-)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 (달성)	
	(내역사업) 양육비이행지원사업	직접	4,247	4,247 (100.0)	68.7 (85.6)	양육비 이행률(%) (달성)	
예산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직접	74,355	74,196 (99.8)	100.0 (100.0)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달성)	중점

구분	세부사업명	목적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목표 (달성여부)	비고*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달성)	
기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내역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직접	4,839	4,834 (99.9)	48.6 (50.8)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달성)	
	(내역사업)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직접	1,217	1,200 (98.6)	57.6 (99.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만족도(점) (달성)	
기금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간접	31,729	31,446 (99.1)	48.6 (49.7)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성별만족도(여성)(점) (미달성)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성별만족도(남성)(점) (달성)	
기금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해소						
	(내역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간접	2,013	2,013 (100.0)	46.2 (48.5)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여자청소년 대상 운영 횟수(회) (달성)	
기금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내역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간접	12,865	12,846 (99.9)	50.5 (52.5)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도움정도(점) (달성)	중점
	(내역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간접	27,316	27,316 (100.0)	51.6 (57.1)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달성)	
	(내역사업) 내일이룸학교	간접	3,113	3,113 (100.0)	57.1 (69.2)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중도탈락률 (하향지표,%) (달성)	
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직접	18,156	18,114 (99.8)	100.0 (100.0)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달성)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달성)	

구분	세부사업명	목적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목표 (달성여부)	비고*
기금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직접	1,316	1,316 (100.0)	- (-)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수혜자(명) (달성)	
기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직접	39,199	38,458 (98.1)	(상담소 상담건수) 69.0 69.0)	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달성)	
					(입소자 지원건수) 98.4 (98.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천건) (달성)	
					(유관기관 연계건수) 100.0 (100.0)		
기금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직접	7,760	7,751 (99.9)	100.0 (100.0)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지원 실적(건) (달성)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점수) (달성)	
기금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직접	500	469 (93.8)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39.8 (39.8)	조직문화 개선 교육 만족도(점) (달성)	
					(대국민인식 개선홍보) 43.0 (43.0)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참여자수(명) (달성)	
						기관재발방지 교육 운영 횟수(회) (달성)	
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직접	495,900	445,293 (89.8)	(전체) -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점) (달성)	
					(모자가족) 100.0 (100.0)		
					(부자가족) - (-)		
					(조손가족)		

구분	세부사업명	목적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목표 (달성여부)	비고*
					- (-)		
기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간접	5,205	5,002 (96.1)	85.7 (92.1)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만족도(점) (달성)	
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내역사업) 시설 기능보강 지원	간접	983	962 (97.9)	75.1 (97.4)	부자가족복지시설 정원 대비 입소율(%) (미달성)	
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직접	108,132	107,488 (99.4)	50.2 (68.5)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효과성(점) (달성)	
계	예산 22개사업 기금 13개사업	-	1,265,838	1,207,610 (95.4)		성과목표 평균달성률 92.2%	

[참고자료] 9. 「여성가족부 관서운영경비 집행지침」(2019. 7.)

Ⅱ 관서운영경비 집행 범위

□ 여성가족부 관서운영경비 집행 범위

예산과목		용 도
210 (운영비)	01(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문구류 등) 구입비 - 신문 및 정기간행물 대금, 택배료, 퀵서비스 이용료 등의 경상경비 -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 건당 10만원 이하의 사무용품 등 구입비 ※ 카드사용 구매하는 200만원 미만 상품권 구입비 (200만원 이상 상품권구입은 일반지출로 요청하되 500만원 이상은 계약에 의함) ※ 각종 사례비, 인쇄비, DM발송료는 운영지원과로 일반지출 요청 ※ 토너, 복사용지는 운영지원과에서 구매·보급
	02(공공요금및제세)	- 우편요금, 전화(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 단, 우편요금은 금액 제한 없음
	05(특근매식비)	- 특근매식비(반드시 카드 사용) ※ 일자별 특근자 현황(초과근무대장) 증빙서류로 첨부
	07(임차료)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카드사용 가능한 경우)
	09(시설장비유지비)	- 건당 10만원 이하의 유지보수비
	10(차량・선박비)	-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용
	16(기타운영비)	- 소속직원 축・조의금
220 (여비)	01(국내여비)	- 국내여비(근무지내, 국내출장(근무지외) 여비) ※ 여비실비정산제 시행('08.1.1)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 적정한 정산 신청여부 및 증거서류 확인하여 출장종류 단가내 실제 소요비용 지급 ※ 근무지내 근거리 출장 실비정산제 시행('13.1.9)에 따라 왕복 2km미만의 출장 시 실제 소요비용 지급 ※ 교육훈련, 국외여비는 제외(단, 국외 항공권 구입은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관서에서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 의무화 및 출장전 사전신고제 도입(2015.1.1.시행)
240 (업무추진비)	01(사업추진비)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02(관서업무비)	-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250 (직무수행경비)	03(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경비 ※ 연간 개인별 월평균 지급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업무추진비 집행 : 여성가족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준수(2015.1.31. 보완시행)

Ⅲ 관서운영경비 자금 교부 및 지급 방법

□ 자금 교부

ㅇ 관서운영경비의 자금은 지출예정금액을 고려하여 **월 1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부할 수 있음. 단 최대 3월분의 지출액 범위 안에서 교부가능

ㅇ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기 교부된 자금의 지급액을 확인하여 **국고예금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급 방법

ㅇ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은 **정부구매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공공요금 자동이체 등)에 한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

ㅇ **현금지급은 제한적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여야 함.**

※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지급 가능 범위

예산과목		현금지급 가능 범위
210 (운영비)	01(일반수용비)	- 지로 납부 경비 등
	02(공공요금및제세)	- 제세공과금, 법정납부금 등 지로 납부 경비
	16(기타운영비)	- 소속직원 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220 (여비)	01(국내여비)	- 전체
240 (업무추진비)	02(관서업무비)	- 해외출장지원경비 중 정액경비
250 (직무수행경비)	03(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경비 ※ 가능하면 계좌이체 지급
기타		- 기타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위문금, 위로금 등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참고자료] 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 [여성가족부훈령 제142호] 2020. 4. 29., 제정, 2020. 4. 29. 시행

제1조(설치)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및 권익정책과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
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의 협의체 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제4호·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은 협의체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위원장 및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42호,2020.4.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1. 최근 3년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	일시	참석위원	심의안건	방법
양성평등 위원회	2021.2.19.	위원장 등 총 21명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2021~2023) 국가행동계획(안)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안) -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심의 권고 이행점검 결과	대면
	2021.9.27. ~ 9.29.	위원장 등 총 24명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서면
	2022.2.7. ~ 2.9.	위원장 등 총 25명	-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결과 및 개편(안) -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및 과제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2021년 이행점검 결과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 시행계획(안)	서면
	2023.1.16. ~ 1.18.	위원장 등 총 25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안) -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서면
	2023.6.19. ~ 6.21.	위원장 등 총 25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 시행계획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023~2027)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2022년 이행점검 결과 -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보완 계획	서면
	2024.5.9. ~ 5.16.	위원장 등 총 25명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안) -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 2023년 이행점검 결과	서면
실무 위원회	2021.2.1.	위원장 등 총 28명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2021~2023) 국가행동계획(안)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안) -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심의 권고 이행점검 결과	대면
	2021.2.16. ~ 2.18.	위원장 등 총 28명	- 2020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이행점검 결과	서면
	2021.7.19. ~ 7.22.	위원장 등 총 32명	- 2020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	서면
	2021.9.13. ~ 9.15.	위원장 등 총 48명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서면

회의	일시	참석위원	심의안건	방법
			- 2021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이행점검 결과	
	2021.12.1. ~ 12.3.	위원장 등 총 15명	- 양성평등정책 주요 성과 및 과제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도 시행계획(안) -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및 개편(안)	서면
	2022.1.26. ~ 1.27.	위원장 등 총 20명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1~2023) 2021년 이행점검 결과	서면
	2022.2.21. ~ 2.24.	위원장 등 총 44명	- 2021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서면
	2022.7.19. ~ 7.22.	위원장 등 총 32명	-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	서면
	2022.8.26. ~ 8.30.	위원장 등 총 44명	- 2022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서면
	2022.9.13. ~ 9.15.	위원장 등 총 46명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22년 상반기 이행 점검 결과	서면
	2023.1.9. ~ 11.	위원장 등 총 27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안) -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서면
	2023.3.29. ~ 30.	위원장 등 총 44명	- 2022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	서면
	2023.4.28. ~ 5.2.	위원장 등 총 29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년 시행계획(안)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023~2027)(안)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1~2023) 2022년 이행점검 결과 -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보완 계획	서면
	2023.7.26. ~ 7.28.	위원장 등 총 18명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서면
	2023.8.28. ~ 8.30.	위원장 등 총 32명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	서면
	2023.9.27. ~ 10.5.	위원장 등 총 44명	- 2023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점검결과	서면
성인지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분과위원회	2021.6.29.	위원장 등 총 11명	- 여성가족분야 사회경제적 활성화 방안	대면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 분과위원회	2021.11.22.	위원장 등 총 11명	-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대면

자료: 여성가족부